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97-01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 목 차 >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와 활용 방안

■ 공통프로그램

I. 다문화 사회와 인권	1
II. 한국 사회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	25
III. 이주노동자와 인권	51
IV.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77
V.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과 인권	107
VI.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139

■ 특성화 프로그램

VII. 다문화사회의 대민행정	163
VIII. 다문화사회의 복지	189
IX. 다문화사회의 교실	225
X. 이주노동자와 인권	253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와 활용 방안

1.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문화적 차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해소하며,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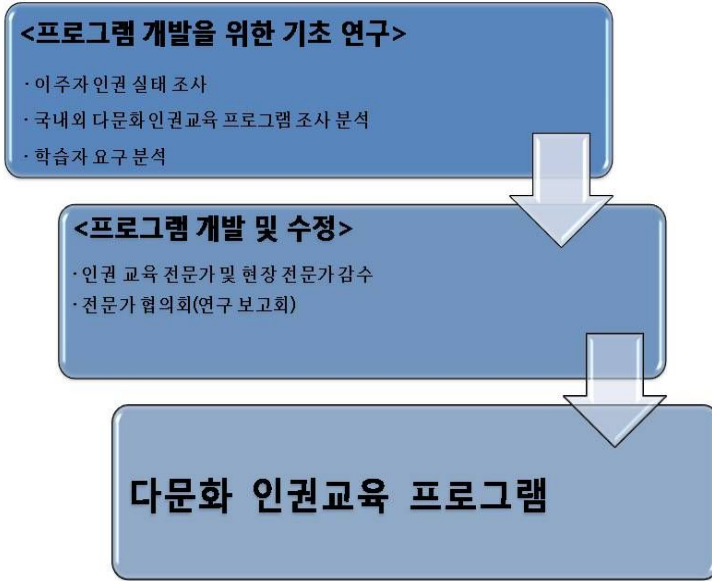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주민과의 만남이 잦은 교육계, 복지계, 사회사업계, 노동계 종사자를 교육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통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세분하여 일반 시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에서 인권 교육 전문가들의 현장 적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선정 및 조직 원리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자를 인권 혹은 다문화 전문가로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삶의 조건이 된 현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관용적이고 친인권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권 개념이나 이주민 권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이주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인권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학습자의 욕구와 선택을 우선시 하는 자발성의 원리와 개별성의 원리에 입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향유하는 일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실성과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영역과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선별하였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보여주는 사회현상의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여,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 이주민의 인권 실태 및 일반 시민의 인권의식을 점검하며, 일상적인 수준은 물론이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주민 차별과 편견에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였다.

3. 프로그램 개발 방법 및 과정



4.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및 운영 방안

본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문화 현상의 이해 및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론에서 출발하여 이주민 집단에 따라 각기 특수하게 야기되는 인권 문제를 개관하는 각론을 거쳐,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의 기원과 양상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종 출신의 이웃과 공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공통 프로그램이 이주민의 이주 배경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기준으로 각론화되어 있는 데 비해, 특성화 프로그램은 이주민과의 만남이 잦은 직무를 맡고 있는 교육계, 행정계, 사회복지계, 노동계 종사자들의 교육 수요 및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직업 활동의 특성상 다양한 인종의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반편견·반차별적 태도를 함양하고, 이주민의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 직업 분야별로 나타나는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 지도를 위한 스크립트 형식으로 개발하여 인권 교육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수-학습 모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 다문화 사회와 인권

차 례

1. 학습목표
2.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3.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달
4. 이주민의 인권
5. 한국의 다문화 가정
6. 탐구활동
7. 단원정리



1

학습 목표

- 1) 다문화사회로서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적 문제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 2)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의 비교를 통해 인권 문제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3)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상과 구체적 실천 사이의 간극을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20세기 중반 이후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다. 사실 그 출발점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국제 냉전 체제의 성립이라 볼 수 있다. 당시의 국제 관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구심점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구소련과 동유럽을 구심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립 구도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였으며 국가 간의 교류는 체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호 배타적이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동서 냉전체제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서서히 붕괴되었다. 특히 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교류, 80년대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 90년대 초 구소련의 체제 붕괴로 40년간의 대립 구도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 실패,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 핵보유국의 증대로 인한 미소 중심의 권력 균형 약화,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 강대국들의 부상 등이 있었다.

이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국제체제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WTO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을 강화하였고, 지역 차원의 경제블록 형성,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와 함께 시작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는 세계화라는 거대 아젠다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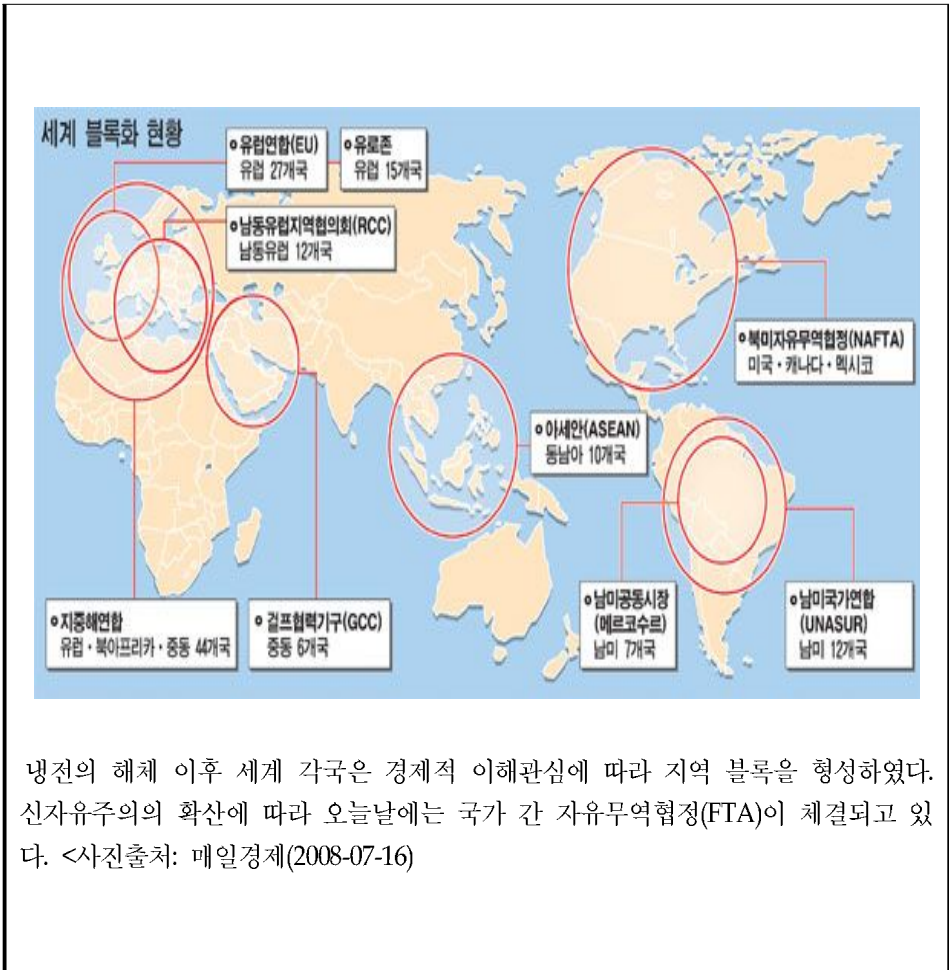
하였다. 세계화를 선도하는 서구 사회는 물론 후발 사회들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재화는 물론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 이동도 가져왔다. 이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만든 미국 제품을 아시아에서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세계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도 던져주었다. 한 때 지식인 사회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서구사회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에서 승리한 자유주의가 세계 각국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고,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기초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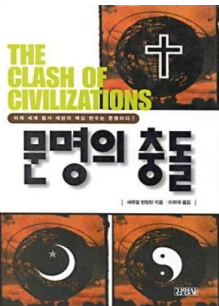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세계화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력과 물자의 국가간 교류는 단순히 경제적 재화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문화의 접촉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 문화의 접촉은 존중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종종 상호배타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바야흐로 세계화 이후에는 문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로 접어들었다.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알타에서 전후 각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냉전의 해체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적 이해관심에 따라 지역 블록을 형성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있다. <사진출처: 매일경제(2008-07-16)>



오늘날의 세계는 서구와 비서구, 기독교와 이슬람,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이 새로운 국제협력과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진: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왔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자유주의 우방국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시장경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산업을 양적으로 성장시켰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된 직후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의 핵심 과제로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본래 수출 중심 경제였던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다. 그러나 연수생 신분외 이주노동자들을 일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몇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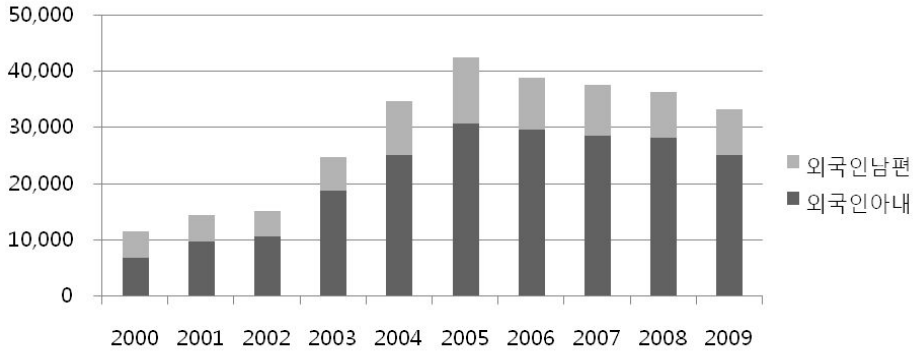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난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로의 유입은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 이후 매년 3만 건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의 외국 유학생들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종래에 잠시 체류하다 떠나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거주하거나, 완전히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살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변화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족들의 차별 문제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자주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사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종종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획득의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목적의 유학생들은 본연의 학업보다는 취업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비인권적 처우를 감내해야만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자료: 통계청(2009)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2010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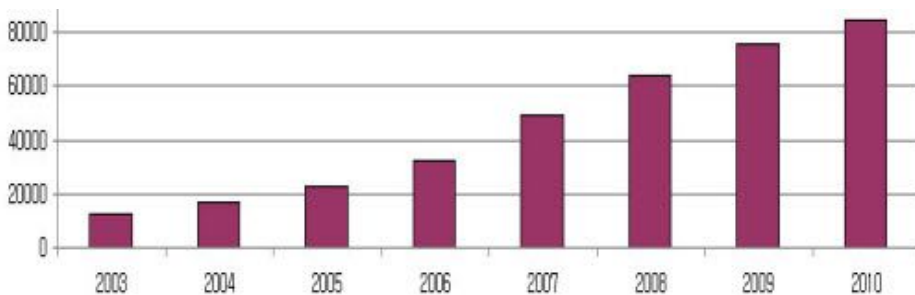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 학생 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자료: 통계청(2010)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바꾸는데서 출발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주민들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 주로 경제영역에서처럼 이들의 정체성은 사용가치에 따라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상이 다름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대하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현상들에 접근할 때에는 인권적 관점에서 출발할 때에 비로소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본 교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근본적 관점으로서 인권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3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달

인권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도로 추상화되고 축약된 사전적 의미로는 종종 그 경계가 어디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한국이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일반적 원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조와 2조에서 인권의 일반원칙인 자유·평등·박애와 반차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제2조)라고 명시한다.

이 두 가지의 일반원칙 토대 위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 법의 보호,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국적의 권리, 가족·재산의 권리, 사상·표현·집회·결사의 권리, 정치권,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 일할 권리, 쉼 권리,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¹⁾.

인권은 법률상의 개념인 권리와 다르다. 권리란 내가 이행한 의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의미하며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

1) 국가인권위원회(2010),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본 ‘세계’와 ‘인권’”, 인권교육자료집 참조



우 법적 소송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즉, 권리는 법률상의 규정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어떠한 조건' 다시 말해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권리로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 각 상황에 해당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인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규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 바로 인권의 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종종 현실에서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주민이 10만 명인 A도시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1명 살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장애인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관공서와 편의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이동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의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한 사람을 위해 편의장치가 불필요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부 극력한 반대자들은 장애인민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 당신이 이 도시의 시민이라면 어떤 입장을 지지하겠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것이다. 만약 편의장치의 설치에 반대한다면 그 근거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에 내가 피해(납세)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태도를 공리주의(功利主義)²⁾적 태도로 볼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의 행복을 위해 대다수의 불행을 감내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2) 공리주의는 인간의 쾌락이 수량화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며,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이 가져올 쾌락의 총합이 다른 선택이 가져올 쾌락의 총합보다 클 때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사상이다.



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면 될 것이다.

공리주의적 태도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큰지, 손해가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인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이익의 산술적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역사에서 인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공리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의 다름에서 후자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영국 권리장전(1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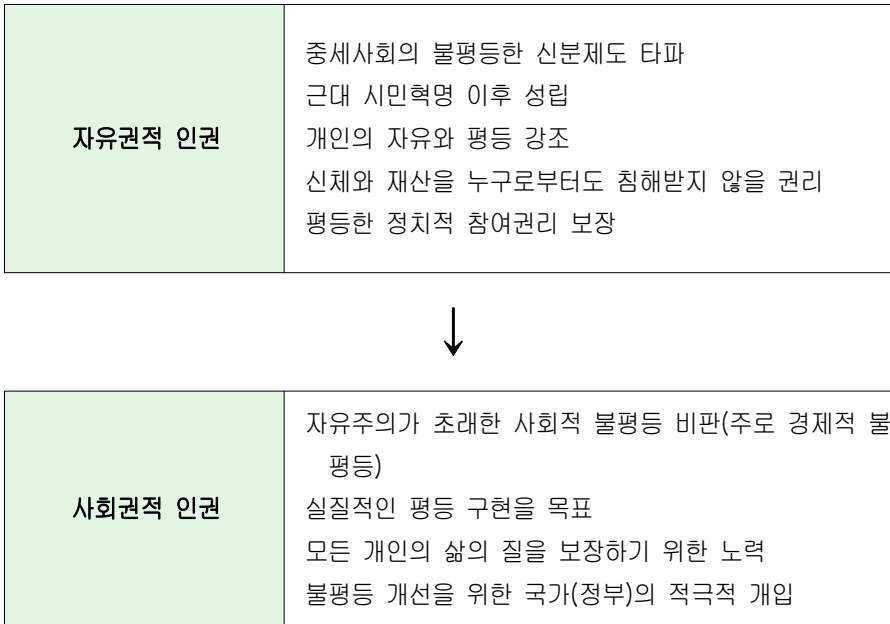
프랑스 인권선언(1789)

미국 권리장전(1791)

현대적 의미의 인권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근대 자유주의가 성립하면서부터이다. 근대 자유주의를 가능케 한 세력은 바로 시민들로서 군주국가 시대의 기본적 통치 구조인 왕과 신민(臣民)의 관계를 타파하고 왕에게 귀속되어 있던 자유와 평등을 스스로에게 귀속시켰다. 즉, 모든 개인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자연적 권리의 대척점에는 국가가 존재한다. 즉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인권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근대 입헌 국가들은 헌법에 이러한 기본권 조항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18-19세기가 자유주의의 역사라면, 20세기는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라 할 만큼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은 20세기의 성과이다. 사회권은 평등한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초래한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이념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이며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활동들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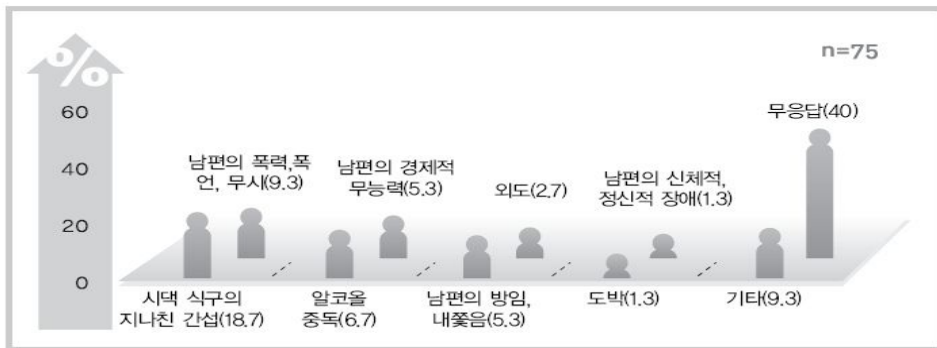
이주민의 인권

인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헌법상의 권리가 실정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이러한 문제를 대법원이 다루었으나 실제 다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헌법관련 판례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민의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들조차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 기간 3년 동안 최대 3차례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출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가족과 남편으로부터 비인권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종차별 관련 진정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권고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인 H씨(28)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경 경기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함께 탑승한 박씨(32)로부터 “더럽다” “냄새 난다”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박 씨는 H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한씨(30·여)에게도 “넌 외국놈이랑 사귀니까 기분이 어떠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항의하던 H씨 일행은 박 씨와 함께 부천 중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부천 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양측에 “웬만하면 합의하라”면서 피해자 H 씨에게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호송차량 안에서 박씨에게 “양복까지 입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는 말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성공회대 연구교수 신분이던 H씨에게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나”고 신분을 재차 추궁했음은 물론 박 씨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 H씨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을 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은 국적 등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경찰관의 언행이 고의적이지 않고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2010-07-15. “인종차별 조사 경찰이 인종차별 언행”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주민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다문화화되어가는 사회에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현실에서의 문제가 먼저 부각되기 마련이다. 사실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국제협약을 통한 포괄적 규정과 각 국가의 비준 또는 조인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받는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체결한 많은 인권협약들에 가입하고 있지만, 국내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부 협약들에는 아직 미가입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이 국가로 하여금 국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2009.2. 현재)³⁾

<가입협약>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 국수	한국가입 (발효)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Int'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66.12.16 (76.3.23)	162	90.4.10 (90.7.10)	가입 (81.9.14)	○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Int'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	66.12.16 (76.1.3)	159	90.4.10 (90.7.10)	가입 (81.9.14)	× (서명)	○	○
★인종차별철폐협약 ⁴⁾ Int'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12.21 (69.1.4)	173	78.12.5 (79.1.4)	미가입	○	○	○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12.18 (81.9.3)	185	84.12.27 (85.1.26)	가입 (01.2.27)	× (서명)	○	○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12.10 (87.6.26)	145	95.1.9 (95.2.8)	미가입	○	○	○
★아동권리협약 ⁵⁾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11.20 (90.9.2)	193	91.11.20 (91.12.20)	가입 (90.9.21)	× (서명)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12.18 (03.7.1)	37	미가입	×	×	×	×

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07.2.6 (서명식) 미발효	·	·	·	·	서명	·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7.3.30 (서명식)	·	09.1.10	·	·	서명	서명

<미가입협약>

협 약 명	미비준 사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송출국 중심의 가입, 국내법령 개정 선행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절차 진행 중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국내 합의 없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법무부 검토 중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추가 검토요
ILO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 유예 - 해고자(실업자)의 단결권 인정 - 필수공익사업 직원중재제도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인신매매의정서	모협약인 초국가범죄협약 미가입

4) 협약이 정의하는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일체의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의 부여로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주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본 협약은 당사국 정부에 의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차별대우까지도 금지하고, 이러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

5)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 존중 ▲생존과 발달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정보에 대한 접근권,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 난민·장애인·소수자·선주민·아동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 또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행정·사법적으로 취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고용자의 최대한도 까지 국제적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	- 제3자 지원 신고제도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 공익근무요원제도(순수한 의미의 군사적 성격의 근로로 보기 어렵고, 노무제공의 자발성 등 논란) - 재소자 근로 중 위탁 작업 및 통근 작업의 협약기준 위배 여부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 정치범 및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제노역이 포함되는 형사처벌
UNESCO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 협약	불법체류 이주민자녀 중등교육, 소규모 학교 운영, 고등학교 선택권 등 미충족

<유보협약>

협약명	유보 조항	유보 사유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22조 (결사의 자유)	공무원 노동3권 (현시점에서는 단체행동권 불인정)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1항(g) (가족성)	민법상 아버지 성(민법개정에서도 미충족)
아동권리협약	9조3항 (아동의 면접교섭권) 21(a) (입양의 허가제) 40.2(b)(5) (상소권 보장)	- 불인정 - 당사자 합의 및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 -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단심제 유지

이주민의 인권은 국내의 사회적 상황과 일반적 정서,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이다. 오로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가능한 모든 이주민들이 최대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제협약의 이상과 국내법의 현실간의 괴리는 접근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당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이 관련 법률의 제정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국민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사회가 국제인권협약의 취지를 옹골게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하며 설사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그것의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높다면 국내법도 점차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는 사업장과 같은 노동경제 영역,

그리고 출입국 관리와 같은 특수 영역에서 소수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이 증가하고 우리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면서 점차 일반의 인식에도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이 어떤 인권적 불평등을 경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어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취지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인 결혼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법적 지위와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불법체류자 자녀에 중학교 입학 허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였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 자녀들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칙에 따라 대부분 입학이 불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 체류 이주민 자녀들이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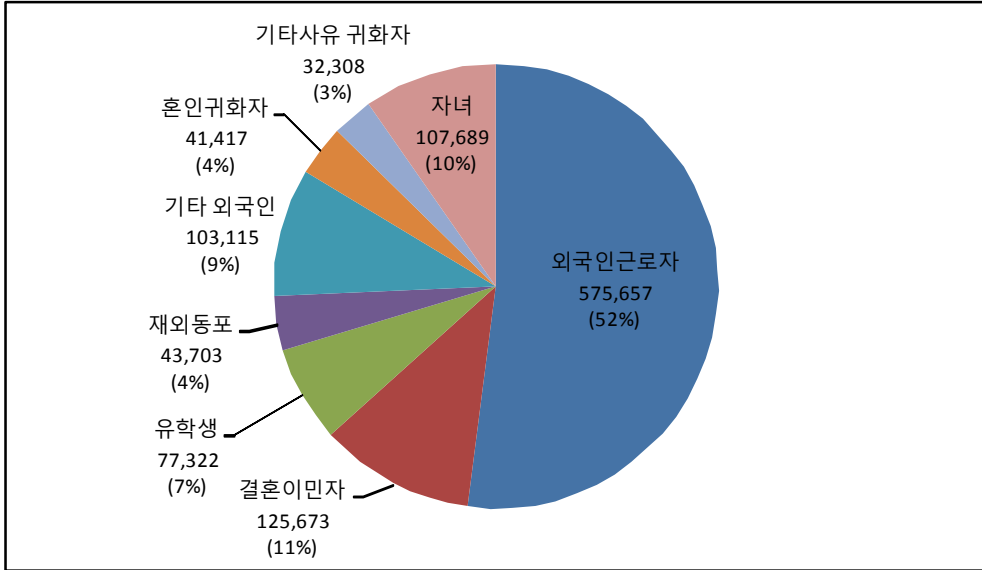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다. 공무원인 교사가 학생의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임을 아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법적 행위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10-08-17, “교과부, 불법체류자 자녀에 중학교 입학 허용”

● 이와 같이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충돌 상황에서 당신이 교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직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두 가지 입장에서의 선택이 같은가, 다른가?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5

한국의 다문화 가정



(행정안전부, 2009)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숫자는 2009년 기준으로 1,106,884명(불법체류자 포함)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에 해당한다. 이는 2008년 891,341명 대비 215,543명(24.2%) 증가한 내용이다. 1990년대 '세계 속의 한국'이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였다면 현재는 '한국 속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다문화의 범주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이주민 독신 가정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 상식 차원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또는 남성)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되므로 국민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6) 2004년 혼인에 의한 귀화요건을 완화하였다. 구(舊)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귀화하려면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실제 거주(주소등록)하거나, 혼인 상태로 3년 이상 그 중 1년 이상 실제 거주(주소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파탄난 경우와 미성년자를

종종 국제결혼 가정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문화적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07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M씨는 오후에 낮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자주 폄박을 받았다. 그러나 덥고 습한 캄보디아에서는 낮 12시~오후 2시에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고, M 씨는 습관대로 잠이 들었을 뿐이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기 어려웠던 M 씨는 고민 끝에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뭇사는 나라에서 온 주제에 게으르기까지 하다”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냈다.

새 삶을 찾아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한국에 온 결혼 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오해와 냉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결혼 이주여성 인권백서’에 따르면 다문화 부부의 갈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생활방식의 차이’가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격 차이(17.2%), 시댁 문제(8.9%), 경제 문제(8.2%) 등의 순서였다. 문화적 차이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출처: 동아일보, 2010-07-23, “아내 나라 문화 모르는 남편들”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 그 비율은 국제결혼 가정에 비해 적지만 더 많은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제결혼과 달리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사회도 이들과의 문화적 교류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거주 지역이 밀집되어 문화적 경계지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활 특성은 종종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지역은 대개 대도시의 전이지대(轉移地帶)에 형성되는데 전이지대는 주민들의 잦은 이동과 문화적 혼란으로 인하여 점차 슬럼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 슬럼은 일종의 사회계층으로 낮은 소득 수준, 높은 범죄율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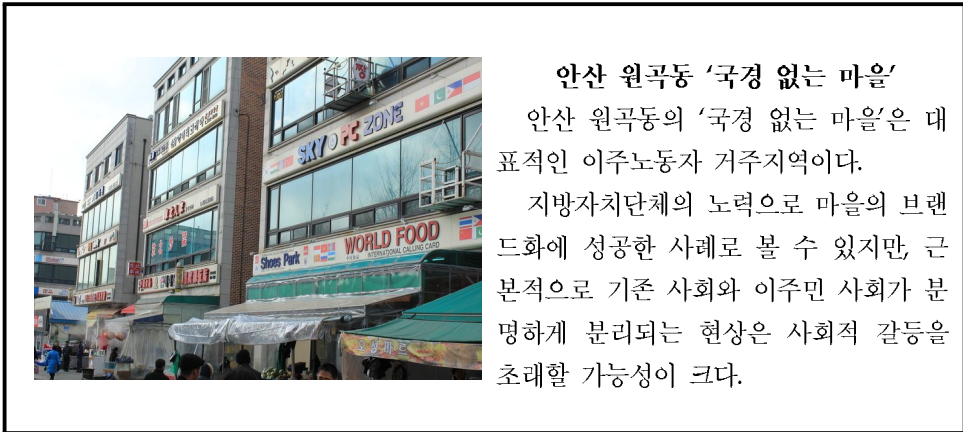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처한 문제의 근원에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낮은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 나라의 사회적 발전 정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귀화요건에 포함시켰다.



드러나는 이주민 차별의 문제를 보면 “어떠한 (문화적) 특징 때문에”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서구인,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 출신, 자유 민주주의 국가 출신에 비해 비서구인,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 현재 또는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 대해 더 많은 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외부적 조건들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을 인간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반인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의 ‘국경 없는 마을’은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마을의 브랜드화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사회와 이주민 사회가 분명하게 분리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속의 한국인들”

미국이 이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 수는 줄잡아 1백45만 명(91년 6월말 기준, 외무부 집계). 지금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오는 한국인들은 한 달 평균 2천5백 ~ 3천명에 이른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의 무려 40%가 세탁업, 비디오가게, 식품점, 식당 등의 분야에서 자기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인 교포들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 특히 짧은 기간에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소수민족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아 평균학력이 높는데다 특히 그 같은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분의 하향이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데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학력이나 이민 전 한국에서의 신분을 체쳐버린 채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가족들의 안전과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하루 2~3시간씩만 잠을 자며 소위 투잡, 쓰리잡을 뚝 덕분이며 대학졸업자가 빌딩의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극한 상황을 잘 견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억척근성으로 오늘의 경제적 지위를 이룩하긴 했으나 과연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그만큼의 지위에 올라 있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 내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의 공동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이 직면해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곳 LA의 코리아타운에서도 볼 수 있듯 고립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종로거리를 옮겨다놓은 것 같은, 무수한 한글간판이 난무하는 이곳 코리아타운에서는 사실 하루 종일 영어를 한마디 사용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 코리아타운의 이런 점은 이 땅을 찾는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는 당장 편할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점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만큼 미국사회로의 진출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출처: 매일경제, 1993-01-20)



● “한국 속의 이방인 이주민 노동자”

한국 속의 외국,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30여 개국 3만 5000여 명의 이주민노동자들이 모여 다문화공동체로 살아오고 있다. 저마다 오로지 돈을 벌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 지기 위해 ‘코리아 드림’을 안고 왔지만 한국생활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는 190개국 9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4%에 이르는 것으로, 이중 이주민근로자는 약 40만 명,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이주민노동자들은 이미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반에 이르는 약 20만여 명은 입국비자 없이 불법 입국했거나 법정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이들은 오직 돈을 벌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남겨 놓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냉대와 질시, 편견 등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두 참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주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하대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우리사회가 앞으로도 이들의 인권문제 등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방인으로 걸돌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포용을 거부한 채 배타적인 의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반감의 싹이 자라 우리에게 화로 돌아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사례는 이미 프랑스정부가 혼혈인들을 방치한 결과, 폭동이 발생해 큰 화를 입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출처: 뉴시스, 2007-03-06)

-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정책을 시행할 때, 그들을 주류 사회의 문화 속으로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두 개의 기사를 읽고 각자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자.

I. 다문화 사회와 인권

1. 세계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

● 냉전 체제

- 미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호배타적인 협력 관계 유지
-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원조와 군사협력

● 냉전 이후

- 이데올로기 지형의 해체 이후 경제적 이해관심에 따른 국가간 무한경쟁과 협력
- 주로 경제영역에서의 지역 블록화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 세계화 이후

- 경제 영역의 교류가 수반하는 문화의 교류
- 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화합과 발전 못지않게 충돌과 갈등 발생

● 한국사회의 변화

- 국제체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속한 대응과 발전 전략
- 세계화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2.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달

● 권리의 개념

- 법률상 자신이 이행한 의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

● 인권의 개념

-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권리로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는 권리
- 헌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

●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근대 시민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이 자연권으로서 인권을 선언
- 근대 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인권으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권으로서 사회권적 인권

3. 이주민의 인권

● 법적 지위상의 제약

- 헌법과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호
- 내국인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

● 국제협약의 효력

- 국제협약은 사실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국제협약의 경우 아직 미가입

● 보편적 인권의식 성장의 필요성

-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제협약의 준수와 제도의 개선
- 친인권적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평균적인 국민들의 인권 의식 함양

4. 한국의 다문화 가정

● 결혼이주민 가정

- 결혼 후 일정요건을 갖춘 후 귀화하면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 부여
- 종종 결혼이주민의 출신 문화적 배경이 한국의 가정문화와 충돌하여 갈등 발생

● 이주노동자 가정

- 체류 기간의 제한 등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문화교류에 곤란을 겪음
-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전이지대를 형성하는 경우 사회계층의 하부구조를 차지하여 사회문제화

● 이주민을 바라보는 낮은 인권 의식

- 인종, 출신국, 종교 등의 배경적 요인에 따라 이주민을 차별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강화하여 편견과 차별을 초래
- 편견, 차별과 같은 낮은 인권의식이 초래한 인류 역사의 비극을 반성

II. 한국 사회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

차 례

1. 학습목표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3.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
4. 다문화 사회와 우리의 인권 의식
5. 탐구활동
6. 단원정리



1

학습 목표

- 1)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이해한다.
- 2)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의 기본가치를 내면화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3)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도록 행동할 수 있다.

한강에 달랑 다리 세 개가 걸려 있을 때, 이 땅의 건강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갔다. 광부들은 1963년에, 간호사들은 1966년에 독일 땅을 밟았다. 광부 지원자 중에는 대학생,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룩했다. 동방에서 온 키 작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다. 독일인들이 하기 싫은, 하기 힘든 일들을 도맡았다. 지하 1000~1500m 막장에서 탄가루를 마셨고, 간호사들은 이방인들의 시신을 닦아주기도 했다. 고향 하늘이 어디 있는지 몰라 동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받은 월급은 모두 고향으로 보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은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는 밭뚝기를 사거나 토담집을 수리했다.⁷⁾

1966년 11월에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된 최영숙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 사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이라서 월급을 낮게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약 어떤 환자가 내게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쓴다든가 하면 그 환자에게 저를 보내지 않지요. 그만큼 저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이하 생략)⁸⁾

1960년대에 해외 이주노동자로 정착했던 우리 국민들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주민의 인권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권의식을 되돌아보자.

7) 경향신문 2010.12.22. 김택근 논설위원 [여적]과독 광부와 간호사.

8) 프레시안 2010.7.9. 독일로 간 '아몬드 눈빛의 천사들', 지금 그들은… [권은정의 '아우토반 코리아'] 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 대표 인터뷰.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이주노동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이주라는 말은 '집을 옮겨 삶' 혹은 '다른 나라로 옮겨서 삶'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서 취업한 국내이주노동자와 국제이주노동자를 통칭한다. 이중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외국인'이라는 배타적 어감을 고려할 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사용하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은 '이주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외국인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⁹⁾.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아래 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 ×로 표시해 보자.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 ×
1	이주노동자는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있다.	
3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국내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9) 다만, 같은 법 제 2조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 활동(E-7), 25의3. 비전문 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아래는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법적지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법적지위를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회보장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법

	관련법	조문
이주노동자의 개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관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관련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p>제14조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p> <p>제23조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	-------------------------------	--

1)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지위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규 가운데 가장 상위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 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우리나라 헌법 6조 2항에서는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¹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의 권리와 함께 외국인에게 평등권 또한 보장 된다¹¹⁾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¹²⁾는 판례도 있다.

이주노동자도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근로의 권리	<p>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p> <p>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p>

10)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

11)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12) 헌법재판소 2007.0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판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 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07.0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2)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 A씨는 플라스틱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2년간 근무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16시간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월급봉투를 만져보지 못했다. 고용주가 숙식과 최소 생활비만 주고 급여 지급을 미루다보니 받아야 할 돈은 어느새 2천만 원이나 되었다.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법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주노동자는 어떠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관계 상의 근로자에 대한 대우 일체를 의미하므로 임금과 근로시간, 재해의 보상·안전과 위생·복리 후생에 관한 조건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근로의 계약기간, 취업 장소, 업무내용, 휴일, 임금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22조에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뿐인 단순한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청에 체불금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관련하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이주노동자 역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특히 미등록된 이주노동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인권 침해가 심해지면서 이들의 ‘노조 설립 대상 해당 여부’를 심리중인 대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허용’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3년 6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4년 가까이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불법체류노조 관련 법원 판단 >>

- 서울행정법원(2006년 2월)
“이주노조 구성원 일부는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법(2007년 2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 제공하며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 노조 설립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난 2005년 이주노동자 91명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2005년 4월 24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나머지 사항을 모두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였으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6. 2.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지난 2007년 2월 고등법원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결성 및 가입 허용 대상”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주노조 구성원 일부는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 설립 자격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판결은 미뤄졌고 당시 위원장 등 지도부들은 그 사이 강제 출국 당했다. (한겨레신문 2010.08.04. 및 『이주법률교육자료집』)

4)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관련 지위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 및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하여 건강 보험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지위와 관련된 법

	관련법	조문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 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 험	고용 보험법 시행령	<p>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7.12></p> <p>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p> <p>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p> <p>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p> <p>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p>

헌법재판소에 간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례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주노동자 A씨는 작물재배업에 종사했지만, 3개월 만에 일감이 떨어져 회사를 그만뒀다. 같은 이유로 3번의 사업장을 옮긴 A씨는 네 번째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중 임신하게 돼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업장 변경횟수를 채운 A씨는 체류기간을 1년 남기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헌법상 제시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과 이민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의 소속 변호사들과 참고인 H교수,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대리인 변호사들과 참고인 S교수가 참여한 변론을 진행하였다.

참세상사회 2010.1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806>)

한겨레신문 2010.10.15.

5)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법적 지위

이주노동자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국내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는 가족동반이 가능한 전문직종 근로자의 자녀이며, 없는 경우는 미등록된 이주노동자나 비전



문취업 근로자의 자녀로서 밀입국한 경우, 혹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미등록된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법

	관련법	조문
이주노동자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법	<p>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p> <p>제4조(책임)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p>제19조(제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인권 보장 실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체감 정도는 어떠한지 다문화 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자, 현장에서 직접 이주아동을 만나고 상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의 활동가 등 7명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난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 체감 인권 지수>>

항목	점수 (5점 만점)
자국 관할 '모든 어린이'가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1.7
아동이 출생 후 성명권, 국적 취득권을 갖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1.7
아동의 신분요소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회복하기 위한 보호	2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권리	1.4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정기적인 직접 면접 교섭권을 가질 권리	1.3
폭력,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1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0.9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1
소수자인 경우 고유의 언어, 종교, 문화를 유지할 권리	1.1
적절한 휴식과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1.9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
약물로부터의 보호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와 거래 방지	3.3
종합점수	1.7
*설문 참여기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어울림학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등	



실문 문항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중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명시가 구체적인 14개의 항목을 추려 작성하였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 5점,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우선 약물이나 매매, 폭력 등 후진국에서 벌어질 것 같은 학대로부터의 보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약물이나 매매의 항목에 비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와 적절한 휴식에 대한 권리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이행도가 높았다.

한편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이행도가 낮았다.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상황에서 그 자녀도 불법 체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동이라는 사회적 신분보다는 불법체류자라는 법적인 신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력 개발과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생활수준을 받을 권리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생존권과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0.05.18. [더 나은 미래]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 조사)

3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쟁점

2년 전 베트남에서 경북의 한 시골마을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 B씨(23세)는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혼 전에 소개업체로부터 들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아들까지 있는 재혼남이었고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기 일쑤였다. 견디다 못한 B씨는 급기야 집을 뛰쳐나왔지만 시집 올 때 쓴 빚 200만 원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현재 B씨는 고향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미

등록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지역의 한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B씨와 같은 이주민들은 귀화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혼인성립과정에 대한 결혼중개업법, 국적취득에 대한 국적법, 체류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및 교육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여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민의 국적 취득과 관련된 국적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두 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 이주민의 지위와 사회보장 내용을 알고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1) 국적법과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지위

국제결혼이주민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법적으로 '귀화'라고 한다. 국적법 4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귀화 절차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민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적법에서는 일반귀화 요건 이외에도 간이귀화 요건을 제시하여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적법에서 간이귀화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간이귀화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민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이귀화 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민의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1)

- 이주여성의 거주권 -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최종권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귀화신청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자녀를 가진 이주여성은 그 결혼 상태와 무관하게 거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R para. 62). 한국은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이들의 법적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CERD para. 17).”

소라미(2009), 이주 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샵(안)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2)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이주민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에 따라 국제결혼이주민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호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민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내용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p> <p>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p> <p>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p>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지위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세 법의 경우 모두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이주민이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법의 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시에 범죄경력증명서, 개인신상정보확인서, 건강진단서 등을 포함시켜 이주민의 국제결혼의 단계에서부터 그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결혼이주민의 지위 강화를 위한 노력(2) - 국제결혼 준비 내국인의 사전 소양교육 의무화-

앞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결혼중개업 관련법의 인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선을 보러 출국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심사 때도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정신병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경력자와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공감코리아 2010.7.27.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97280&category_id=subject§ion_id=EDS0201010&call_from=extlink)



4

다문화 사회와 우리의 인권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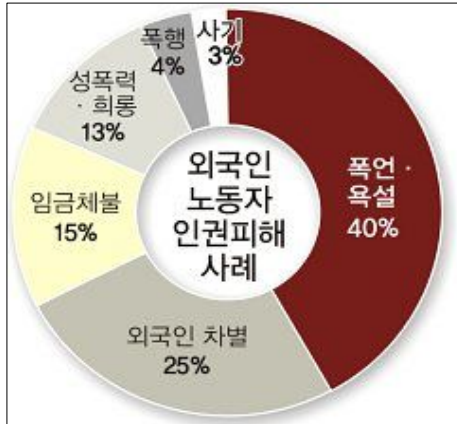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가지는 법적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알고 보장하려는 노력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를 경외시한 채 여러 가지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구타, 협박, 감금 등), 경제적 폭력(노동활동의 강요와 임금 갈취), 거짓 정보를 이용한 위장결혼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중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등의 차별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거나 임금체불,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이주민의 인권보호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의 법 규범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민 등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다각도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인권 침해 실태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지난 9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채 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미등록 노동자 신분인 적발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된 것. A씨는 김스만 한 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방치됐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강제출국 처지에 놓였던 A씨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주노동자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8월 충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지역 외국인 노동자 118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인권피해'(18%)와 '장시간 근무'(14%)를 꼽았다. 인권피해 사례로는 폭언과 욕설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차별 25%, 임금체불 15%, 성폭력·희롱 13%, 폭행 4%, 사기 3% 순이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작업 일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모두 불일치'와 '부분 불일치'가 절반을 넘었다.

2010.10.20. 세계일보 [글로벌 시민사회로 가는 길] <4>외국인 동등하게 바라보자



5

탐구활동

영화 속에서 살펴본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 영화 '세리와 하르'



무표정한 얼굴에 내성적인 세리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엄마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언젠가 박세리 선수처럼 유명한 골퍼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것이 세리의 꿈이다. 한편, 겉으로 밝고 당당한 하르는 필리핀 불법체류자의 딸로 언제 단속에 잡혀 추방당할지 몰라 불안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을 갖고 합법적으로 사는 것이 하르의 꿈이다.

그러나, 최근 더욱 심해진 강압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때문에 하르의 가족과 이주민들의 불안감은 심해져만 가고, 인권을 무시한 절차에 한국 사람들의 불안까지 높아져 공단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그래서, 공단 해결사인 목사님은 단속을 막고 영세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방송국 김PD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얼마 후, 김PD가 방송에 이주민들을 대표해 불법체류자인 아빠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르의 이야기를 내보내자 많은 사람들이 하르에 대한 지지와 후원금을 보내온다. 반면, 세리는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하르가 밋고 자신도 왕따에서 벗어나고 싶어 더 골프 연습에 매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세리 부모님이 예고 없이 닥친 불행으로 힘들어 하며 세리를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자 세리의 불만은 더 커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세리에게 다가와 하르에 대해 묻는데 그 남자는 바로 불

법체류자 단속반 강철우. 세리는 별 생각 없이 하르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는데, 이로 인해 하르의 가족은 더 큰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하르는 뒤늦게 세리가 강철우에게 정보를 제공했음을 알고 복수를 계획하지만 하르의 아빠 역시 이 사실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네이버 영화정보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0511>

- 영화 속의 주인공인 세리와 하르는 어떤 아이들인가요? 이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 세리와 하르가 가지는 법적 지위 중에서 영화 속에서 침해되고 있는 지위가 있나요? 어떤 법적 지위가 침해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보장할 방안을 생각해보자.



6

단원 정리

II. 국제결혼 이주민과 인권

●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 사회권적 기본권을 제외하고 이주노동자(외국인)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함.
-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 고용법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함.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가능 여부가 논의 중임.
- 이주노동자도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음.

●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 지위

- 국제결혼 이주민은 귀화절차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국제결혼 이주민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법 개정노력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민의 결혼단계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 이주민 관련법 현황

- 200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처벌이 가능해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0년 8월 실시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으로 인해, 국제결혼 희망 남성들의 사전 소양교육이 제도화됨

● 다문화 사회와 우리의 인권의식

-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경외시한 채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및 차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음.
-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법 규범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 보장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

Ⅲ. 이주노동자와 인권

차 례

1. 학습목표
2. 이주노동자 증가의 배경
3.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
4. 이주노동자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5.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및 사례
6.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7. 탐구활동
8. 단원정리



1

학습 목표

- 1)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2) 다양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3)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도적, 의식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낯선 환경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빈곤한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이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한국 사회의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보호받을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들의 인권 역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한다.

2

이주노동자 증가의 배경

10여 년 전만 해도 다양한 피부색과 외모를 가진, 다양한 옷차림을 한 외국인을 길

거리에서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길에서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화교들이 집중 거주하는 일부 지역이나 이태원 같은 특정 지역에만 외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나 외국 서점, 슈퍼마켓 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등포, 구로, 안산 등 공단이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한 데에는 화교,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 입국한 이주민들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10여 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왜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국인들이 일부 업종에 취업하기를 기피하면서 나타난 노동력 공백을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공백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는 산업화의 발전과 삶의 기대 향상이 야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화의 발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 한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하고 있던 농민 집단 중 일부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면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이 상당수 해결된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서울 등의 대도시로 이주·정착하여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한 사회 내의 인구는 일정하므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방식은 일정 기간이 되면 한계에 이르기 마련이며, 한국 사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고,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기대 수준도 향상되었다. 이에 노동자, 특히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사람들의 삶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직업, 소위 3D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국 등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항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생산직, 특히 영세·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 내에서의 인구 이동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노동력이 유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갔다. 우선 대기업은 점차 노동력 집약 산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현지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 사회의 발전상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이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인력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고, 외국인들이 국내 노동인력시장을 일부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이주자들은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력난 부족 문제로 고민하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내국인만으로는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 인력을 국내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직난을 겪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 2000년 연수취업제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67호)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방문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나 합법적인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미등록 이주자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 발전, 고학력자의 증가, 삶의 기대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변화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출산율의 저하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령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역시 한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여, 향후 더욱 많은 이주노동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다른 원인이 된다. 2001년 UN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을 바탕으로 추산해보았을 때, 이민자의 유입 없이 한국이 최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없고 현재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1995년에 5.6%였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50년에 24.7%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총 640만 명, 매해 평균 21만 3천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어야 최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내국인 노동력이 일부 직종에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건비가 낮다는 점은 영세 소규모 기업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교류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가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재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실업자,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고, 특히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을 강력 찬성한다.

그런데 한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부족한 인원은 상반기에 20.6만 명으로, 부족율이 47.8%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생산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생산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7년 외국인을 고용한 32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93.2%가 향후에도 이주노동자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은 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할까?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업들이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그들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보다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고용시장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업종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주노동자 말고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가구 만드는 일은 기술적인데 일을 가르쳐서 쓸 만하면 잡아가버려.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오지도 않잖아. 합법(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애들은 금방 가는데 우리보고 어찌라는 건지 원!” ㄷ가구 사장 ㅇ아무개(50)씨는 불만부터 내뿜었다. 지난해 단속으로 ㅇ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 중 3명이 잡혀갔다. 전체 직원 6명의 절반이다. ㅇ씨는 “그 뒤 한동안 공장을 놀리다가 얼마 전이야 겨우 직원을 구해 다시 공장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렵사리 새로 데려온 직원 3명도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난해 단속으로 공장 돌릴 이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영세 사업장 40여 곳은 아예 문을 닫았다. 육실용 슬리퍼를 생산하는 ㅇ업체 대표는 “이번에 또 단속을 맞으면 우린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불법인 건 알지만 이곳에 들어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란 말이나”고 토로했다.

(한겨레신문 2009-3-11)

3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마다 체류외국인(외국계주민¹³⁾)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아래 <표1>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6월 30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표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단위: 명, %)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체류자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인구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인구대비(%)	1.55%	1.53%	1.86%	2.16%	2.34%	2.3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⁴⁾)

13) 행정안전부에서 의미하는 외국계주민에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관광·통과 등의 이유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자.

<표2>는 2009년에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에서 집계한 자료이다. 취업자격을 갖추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5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단순 기능 인력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기능 인력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 즉 저숙련 단순 노동자를 중심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이혜경(1998)이 유럽, 미주, 아시아권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을 정리한 스텔커(Stalker)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1987년 독일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85%가 단순노동자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 전체 근로자 중 30%가 육체노동자였으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70%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2> 취업외국인 현황

구분 \ 체류현황	총계	전문 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51,858	40,698	511,160
합법체류	503,829	38,497	465,332
불법체류	45,683	2,180	43,50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현재 단순 기능인력으로 분류하는 집단에는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에 따르면, 단순 기능인력은 2005년 173,549명, 2006년 231,773명, 2007년 442,677명, 2008년 511,249명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511,16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교수나 특정 활동 종사자로 구성되는 전문 인력은 2005년 24,785명, 2006년 29,011명, 2007년 33,502명, 2008년 37,304명, 2009년 40,69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증가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200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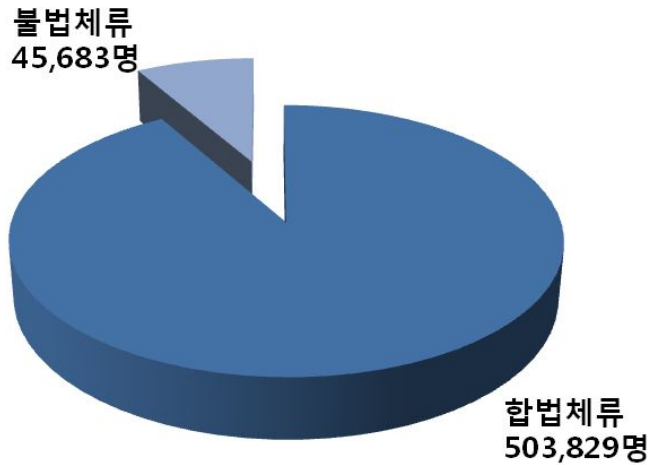


되면서 단순노무인력은 신규인력 도입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는 취업자격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과 상반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경기침체와 강화된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이유로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고 생각한다. 아래 그림은 2010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다. 2009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총 551,858명이었는데, 이 중 합법체류자로 분류한 외국인은 503,829명으로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 이주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중 8%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어떤 국가 출신이며, 우리나라의 어느 지

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을까? 법무부(2010¹⁵)에서 밝힌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자.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47.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미국 11.7%, 베트남 7.9%, 필리핀 3.9%, 태국 3.3%, 일본 3.2%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체류외국인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관광·통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류자 등도 포함되므로, 이주노동자의 출신 국적 분포가 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자료 중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의 국적 분포는 중국 58.9%, 동남아시아 25.1%, 남부아시아 5.7%, 중앙아시아 2.6%, 몽골 2.3%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체류 외국인 현황과 다소 다른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북미나 유럽 출신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특히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¹⁶)에 따르면, 경기 36.4%, 서울 28.4%, 인천 5.7% 등 외국인근로자의 7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 경기 안산, 서울 구로, 경기 수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주노동자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자유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 하는데,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권리이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위한 기본권에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키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간에 인적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이전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

15) 법무부(2010).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 명 첫 돌파". 법무부 2010년 7월 7일 보도자료.

16)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외국계주민 113만 9천명,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 행정안전부 6월 11일 보도자료.



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실제로 잘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적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인 외국인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국제법이나 관습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의 기본권, 즉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행복추구권, 대부분의 자유권, 평등권, 경제적 기본권, 일부의 청구권을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간주하여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 제35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보건권, 제 36조 3항), 혹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고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갖는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가 갖는 권리는 아래 <표3>와 같이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보통 자유권은 私人간의 자유권과 공권력에 의해 자유권이 침해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며, 평등권은 국적·인종·성별·종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권은 국민 자격을 갖추어야 보장받는 권리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한다.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권은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유입국에서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3> 이주노동자 인권의 세 가지 영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생명권, 고문의 금지, 노예 제도의 금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력 등에 의해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임산부·어린이 보호, 의식주 생활을 누릴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과학·예술 활동의 권리 등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및 사례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전 제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들을 고용할 수 없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노동 송출국 출신의 외국인 중 한국어 시험 및 신체검사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 대 정부가 MOU를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내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해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저숙련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주로 선진국 출신인데,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욕설 및 조롱, 폭행, 구금 및 감금,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산업재해 피해 등 직업장과 관련된 인권 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일상생활에서 편견과 인종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 침해 사례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처우나 인권이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직장이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래에서는 크게 직장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해 경험하는 인권 침해 문제,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들에 의해 침해당하는 인권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차별적인 근로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욕설, 조롱, 폭행, 산업재해 피해와 보상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역시 근로자임을 판시한 바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시키거나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으며,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장시간 일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직장 동료나 고용주에게 조롱이나 욕설, 폭행 등을 당하기도 하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성희롱을 경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왜냐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에서 발견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소규모, 단순·고위험 노동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유해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언어문제로 인하여 작업안전과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작업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문제를 야기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공식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결과를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고용주는 치료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이주노동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해고하기도 한다.

● “우리도 한국인처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세요!”

한 단체에서 OO 지역의 공단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322명을 상대로 이들이 어떠한 조건의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놀랍게도 57.3%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최저 임금은 시급 4,110원인데,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3,900원이었으며, 한 달 임금총액은 127만 원 정도로 나타나 내국인 제조업 노동자의 58.8%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시급은 각각 3,871원과 3,640원



이었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국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평균 189시간인 데 반해, 이들의 노동시간은 한 달 평균 297시간, 하루 평균 11.5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시간 노동 기준 1시간인 휴식시간은 되레 짧아 하루에 30분(29%), 60분(25%), 40분(22%)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108시간이나 더 일하면서 덜 쉬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작업 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다른 조사 결과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17%나 되었다. 또한 67%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52%는 일을 하다 다친 적이 있으며, 47.4%는 작업 중에 다쳤지만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응답했다.

OO 신문, 2010-08-24

● 임금체불과 관련된 차별 경험에 대한 이주노동자 720명의 응답

질문	비율
한국인 노동자는 제때 임금을 받고 나를 비롯한 외국인은 임금 늦게 받는다	39.2
한국인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지만 나를 비롯한 외국인은 임금 받지 못했다	40.6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모두 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	20.2
계	100

(국가인권위원회, 2002, p. 186)

● 이란 출신 남성 노동자의 이야기

“건설 일용으로 일할 때 한국인이 7~8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때 나는 5만원 받았어요. 내가 일을 잘하니까 돈을 적게 받는 것이 억울해서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싫으면 일 하지 말고 가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 2002, p. 184에서 재인용)

● 위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의 근로 실태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 고용주,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2) 공권력 단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TV에서 미등록 이주자와 관련된 뉴스를 접한다.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미등록 이주자를 찾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등록 이주자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잠재적인 요인이므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등록 이주자는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들은 정부의 단속 정책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우리나라에 미등록 이주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자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부터 문제이며,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 및 과잉 진압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참작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가?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따르지만, 우선적으로는 자국의 법체계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에 입국하는 순간,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을 내국인으로 간주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주노동자는 국내의 노동력 부족, 특히 저숙련 단순 노동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한국에 체류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에 한국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위법·불법 행위를 저질러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를 단속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들을 적발하여 추방하는 것은 국민국가가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제18조 ① 외국인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신분과 합당한 이유 등을 고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외국인을 미등록 이주자로 간주하여 확인절차 없이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하는 일도 있고, 몸수색, 심지어는 알몸수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자를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감시 카메라를 촬영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거나 폭력이 사용되는 점과 보호 시설 내의 처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미등록 노동자 남성의 이야기

인도네시아인 4명은 2001년 10월 초, OO역 근방에서 숨진 외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을 극구 부인했고, 그러자 경찰은 이들의 무릎을 꿇리고 구둑발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경찰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계속해서 구둑발로 머리를 짓이겼고, 그는 이마, 머리 등에 각각 7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살인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특별한 혐의 없이 경찰에 연행되어 폭행당했으며, 간단한 치료 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고, 출입국사무소는 수용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에 보호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후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 **검문·검색과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한 이주노동자 255명의 응답**

질문	응답	비율
검문검색 시 신분을 밝혔나?	예	49.1
	아니오	50.9
검문검색 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였습니까?	예	40.5
	아니오	59.5
검문검색 시 다른 장소로 끌고간 적 있습니까?	예	19.6
	아니오	80.4
검문검색 시 다른 장소로 끌고 갈 때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릴 기회 제공했습니까?	예	13.6
	아니오	86.4
검문검색 시 몸수색을 당한 경험	예	21.5
	아니오	78.5

(국가인원위원회(2002), pp. 171-172에서 재인용)

●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7849호) 제3조 ④** [...]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7조 ④**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에 제시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에서는 신분과 합당한 이유를 고지하고 검문·검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한국인에게 위의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주노동자 255명의 응답과 위에 제시된 규정들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검문·검색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3) 배타주의적 문화: 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저 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경제력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여 이주노동자의 이름 대신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걸을 때 이주노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옆자리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집계된 것도 아닌데,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하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선진국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생산직종에 종사하거나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을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AIDS 걸린 줄 알아요. 한국 TV에서 아프리카 [에] AIDS 많다고 해서 한국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괴해요. 한국 사람들[은] 까만 사람 싫어해요. 가난해서 한국[에] 왔다고 싫어해요. 한국 TV에 보면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AIDS [에 걸렸거나], 가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28세 남성 노동자)

“예를 들면, 우리들을 부를 때 강아지를 부르듯 손짓하며 입술로 혀를 차는 소리를 냈었어요. 000 사장은 앞에서 ‘너는 동물이야’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동물에 해당하는 animal 단어 발음이 영어와 불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역하지 않아도 알아들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매우 불쾌했어요. 같이 일하는 식당 아줌마는 OO가 다가오면 코를 막으면서 ‘냄새난다’고 했어요. 한 번은 바로 앞에서 컵을 집어던지며 냄새나니까 나가라고 했어요.”(39세 코트디부아르 남성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2002), pp. 181-182에서 재인용)

한국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백인은 부유하고, 문명인인 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인 가난하고, 열등하고, 문화적으로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망의 태도를 보이고,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진술에 약 90%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무시당하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일의 능력과 관계없이 후진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일은 잘하지만 후진국 출신이기 때문에, 후진국 출신이면서 일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후진국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견적인 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수도권 인문계 고등학생을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종, 민족, 출신국의 경제력과 같은 요인이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후진국 출신이면서 노동자인 집단에 대해 학생들은 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우해야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이유 없이 갖는 편견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차별 및 인권 침해는 소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6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개선 방안

앞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가 인



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 사람들의 인식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법과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내실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 공무원들이 근로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민원을 처리하여 작업장 내의 인권침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생산현장에서 단순 직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업종 간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업장간 이동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들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체류자격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근무처 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업장이 휴업·폐업하거나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이직을 금지하게 되어도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위반했을 때 고용주가 받는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휴일, 시간외 근로규정 등이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체를 강제할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가 및 실천가 양성 및 배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여러 인종·민족 출신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한국어나 법 제도를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문화권과 사회권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인권 보호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거나 이주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경험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혹은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하게 될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편견을 갖고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 출발점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 조항이나 규정을 지킴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내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 법률만 지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제54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의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외에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 3.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



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 검색 및 심사
3. [...]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한 무엇이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적인 태도와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다문화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 모두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나, 특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를 접하는 공무원은 물론 같은 일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문화, 종교, 관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이주노동자들이 직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와 문화에의 적응 및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역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적 자본이 교류되는 세계화 시대에 배타적인 ‘국민’ 개념 대신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이주노동자가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국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내국인들의 관점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 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장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함께 거주하며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역이 생기면서 주변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제적인 공생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폭행, 차별적 대우, 부정적 인식 등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고학력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이 수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한국 사회보다 먼저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던 서구의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 집단의 차별, 증오범죄의 증가, 이주민의 시위 등 이주민과 원래 거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한국 사회에의 기여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으로서 이들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한국 사회 시민들의 성숙한 인권 의식 고양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7

탐구활동

◎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이슬람교도: “한창 더운 여름에 밥을 먹지 않아 기운이 없어 일을 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주면 저녁에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인 고용주/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퇴근하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 라마단이란...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의미하는데, 이슬람력의 9월에 해당한다. 이슬람에서는 9월을 무함마드가 코란의 첫 번째 경구를 계시 받은 날로 여기기 때문에 신성한 달로 생각하며 이 기간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한다. 이는 신에 대한 순종을 표시하는 종교적인 행사이며, 또한 굶주린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의식이기도 하다. 이슬람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체의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술과 담배, 성생활도 중지한다.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 이외에도 기간 중 하루에 3번 또는 5번 성지 메카나 메디아를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나 금식하는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금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이프타르’라고 부른다. 단식 후에는 음식을 성대하게 먹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오히려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소비량이 증가한다.

- ◎ 이주노동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있는 날 교회를 가거나 새벽에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고,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기운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일하는 중간에 기도를 해야 하니 업무 중간에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는 종교의 자유나 문화 활동을 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고용주나 동료 노동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노동자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노동자가 라마단 기간에 동료 노동자나 고용주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7

단원 정리

III. 이주노동자와 인권

● 이주노동자 현황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계주민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약 45%)
-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단순 기능 인력이 90% 이상을 차지함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욕설, 조롱, 폭행, 산업재해 피해 등과 같은 차별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무
- 체류자격(합법/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됨
-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을 경험

●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물론 위반 시 벌칙조항의 명문화 등 법적·제도적 노력 필요
- 배타적인 국민 개념에서 시민으로의 보완 필요
-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IV.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차 례

1. 학습목표
2.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3.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 침해 실태
4.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법 현황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6. 탐구활동
7. 단원정리



1

학습 목표

- 1)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현황과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들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 2)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인권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인권 문제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고, 법적·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 인권 보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980년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의 이주에서 시작해, 90년대 초 한국정부의 '연변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사업을 거쳐, 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들의 이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 며느리들이 없으면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3%에 해당하는 4만3000여 건이 나왔다.¹⁷⁾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혼인 비중은 10.8%로 2004년 이후 계속 1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경우, 2008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혼인한 남성 6,500명 중에서 2,500명 즉 38.3%에 해당되는 남성이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①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③신

17) 동아일보 2010년 7월 12일자

18) 통계청 <2008 혼인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정책, ④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들 수 있다.¹⁹⁾



출처 : 통계청 나라지표

3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 침해 실태

2006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30%,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23.1%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되고 있다. 1993년 UN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19) 소라미(2009), <제7차 인권교육포럼 :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 -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학교 인권센터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발탁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위’로 정의된다.²⁰⁾ 1979년 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조약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c) 혼인 중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1)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 2003년 3월, 결혼생활 8년 동안 구타에 시달린 필리핀 국적의 알가나레이 비비(31세)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한겨레21 매거진 2003. 4. 30.
- 2005년 11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5년이 된 필리핀 여성(27세)은 평소 의치증 증세를 보이던 한국 남편으로부터 둔기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한국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폭행당했던 3살, 2살 된 딸 2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문화일보 2005. 11. 19.
- 2010년 7월, 코리안 드림을 안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꿨던 20살 베트남여성 탕티 황옥은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남편 장 모(47)씨는 부부싸움 끝에 A씨를 마구 때린 뒤 부엌에서 가져온

20) 변화순 외(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흥기로 살해했다. 장 씨는 경찰에 지수 한 뒤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탯티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장 씨는 지난 8년간 무려 57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았던 정신질환자였다.

국민일보 2010. 7. 22.

외국인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사례는 이주여성 단체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제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다수의 남성들이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사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일면에서는 남성들의 이런 심리상태를 '본전 찾기' 심리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코올 중독, 도박, 의처증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 간 갈등이 많아 한국 여성들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²¹⁾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자는 현행 국적법 제6조의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 2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귀화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 허가 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는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국내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비자)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거주비자(F-2)가 부여된다. 거주비자에 부여되는 제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체류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체류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초과 체류 상태가 되면 소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출입국으로부터 단속과 강제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결혼이주자가 가정 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결혼이주자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국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은 결혼이주자의 출입국행정을 처리할 때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자의 지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여도 결혼 이주자는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결혼 이주여성이

21) 여순호(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신이 처한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결혼이주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 확보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실태조사와 현장 단체의 상담을 통해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결혼 이주 후 유·무형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경찰신고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3~14%,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14%, 9.5%로 나타났다. 적어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10여 명 중 한 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원치 않는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약 30%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8% 정도로 폭력을 경험한 수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 여성 피해 사례와 그녀가 남긴 편지

2007년 7월 4일 결혼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19세)’는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 2007년 1월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건설일용근로자인 장모(46세)씨를 만나 결혼해서 5월 16일 한국으로 입국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결혼중개업자와 남편이 말했던 장밋빛 결혼생활이 아니었다. 27세 연상의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거주지는 월세 18만원의 지하 단칸방이었다. 남편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후안마이의 요청을 외면했고, 바깥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안마이에게 되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고, 그로 인해 후안마이는 사망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 이주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고인이 남긴 편지글을 인용하며 남편의 우발적인 아내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2년 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일보 2007. 8. 20.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프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

빠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려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중략)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건넬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중략) 당신은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당신이 좋으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을 많은 여자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호치민 시에서 일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나가야 했고,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봉급은 얼마 못 받았지요. 저는 노동이 필요한 일도 했었어요.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족을 기르는 일이든, 농작을 하는 일이든... 가족들은 노동일로 벼를 심고 베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만을 바랐을 뿐이에요.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 말고 당신을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라요. 당신이 잘 살고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저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하느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요...



위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제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집적되고 표출되면서, 국제결혼이 왜곡된 방식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인권의 절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²²⁾

2) 국제결혼 중개행태의 문제점

(1) 인권침해적·성차별적 광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국제 결혼할 당사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차별적·인종 차별적인 광고(예 : ‘베트남 슯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22) 소라미(2009), <제7차 인권교육포럼 :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 -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 내에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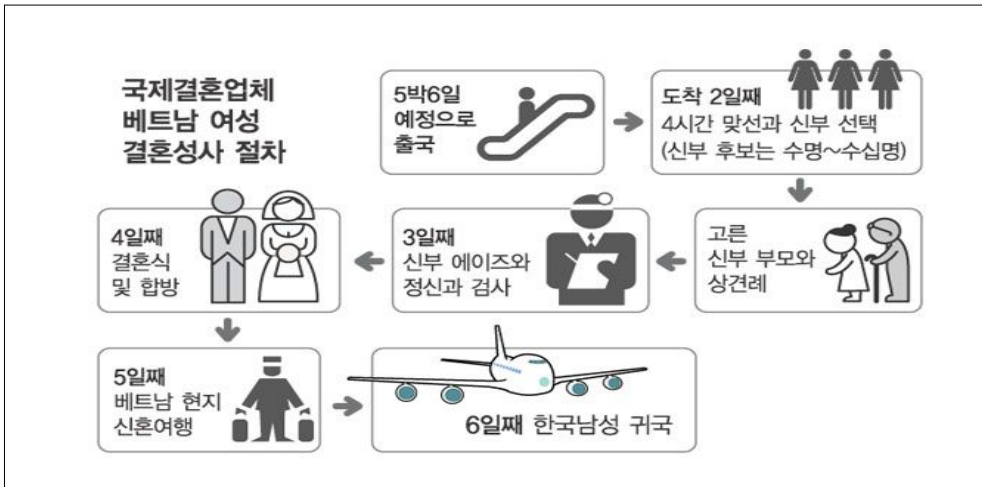


위와 같은 현수막은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매매혼적·성적 결합이라는, 현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

(2) 정보의 왜곡 및 은폐

국제결혼 자체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주의 한 형태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공간적으로 격리된 두 당사자를 매개해주는 매개자로서 '중개업자'의 출현과 개입 또한 필요악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국제결혼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하고, 부정확하고, 때때로 허위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최종 선택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을 야기하며, 불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결혼의 중개 시스템



출처 : 경향신문

(3) 미인대회식의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의 성혼

중개업자들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해야 하며, '일대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 10%시대 : '200대1'미인대회 뽑듯... 이튿날 현지 결혼

2005년 3월 당시 가정폭력으로 충남의 한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던 베트남 여성(23세)의 예는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하는 집단 맞선으로 결혼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호치민에서 버스로 남쪽으로 5시간 거리에 있는 '깡촌' 출신이다. 부모 형제 8명과 함께 농사를 짓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현지 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돼 '탈 베트남'을 위해 호치민에 올라왔다.

그녀는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하는 한국 남성과의 집단 맞선에 참석했다. 그녀는 운이 좋아 200명이 넘는 여성 중에서 1차로 압축된 10여 명에 들어가 다시 5명→2명

→1명 순으로 좁혀진 ‘미인 대회식 신부 선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허반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외국 며느리를 보기 위해 찾아온 시어머니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그 선택에 동의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호치민에 올라온 지 9일 만에 결혼이 확정됐다.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마친 후 남편은 출국했다. 그녀는 두 달 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행복하고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5. 3. 22.

한국적 국제결혼 행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지는 오래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 내 캄보디아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에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실태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제결혼이 동남아에서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반한기류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결혼 중개업자와 브로커들의 농간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³⁾

(4)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국제결혼 금지국’으로까지 지정된 한국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당분간 금지했다는 보도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내린 조치다. 지난해 9월 한 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모아놓고 한국인 남성 1명에게 신부를 고르도록 한 사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현지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5대 1의 ‘집단 맞선’은 중매가 아니라 팔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고 한다. 이 중개업자는 현지법에 따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캄보디아 정부의 ‘결혼 금지령’은 그 사흘 뒤 나온 조치다. 입장을 바꿔 우리 딸들이 이런 수모를 겪었다면 누구라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는가. 한국의 ‘묻지마 결혼’ 중개가 중국과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 곳곳에서 추문을 일으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보완책이 마련되기는커녕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으니 이런 국제적 망신도 없다.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인격모독과 폭력, 학대 등에 시달려 외교문제로 비화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집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딸처럼 잘 돌봐 달라”고 하고, 응우옌민찌엣 베트남 주석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에게 “베트남 여성들이 잘살

23) 경향신문 2010년 3월 22일자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할 정도까지 됐을까.



<국제결혼 이민 허가 인터뷰를 위해 한국 총영사관 앞에 줄을 선 베트남 여성들>

몇 달 전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전면 금지시켰다. 인신 매매적 행태와 신부 학대 등이 실마리가 됐다고 한다. 남편의 구타로 베트남 신부의 늑골이 18개나 부러진 채 숨진 사건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무등록 영세 국제결혼 알선업체가 난립한 것도 한 원인이다. 경쟁이 심화하다 보니 불법이 횡행하고, 심지어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해 알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후략)

경향신문 2010. 3. 22.

현재의 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예측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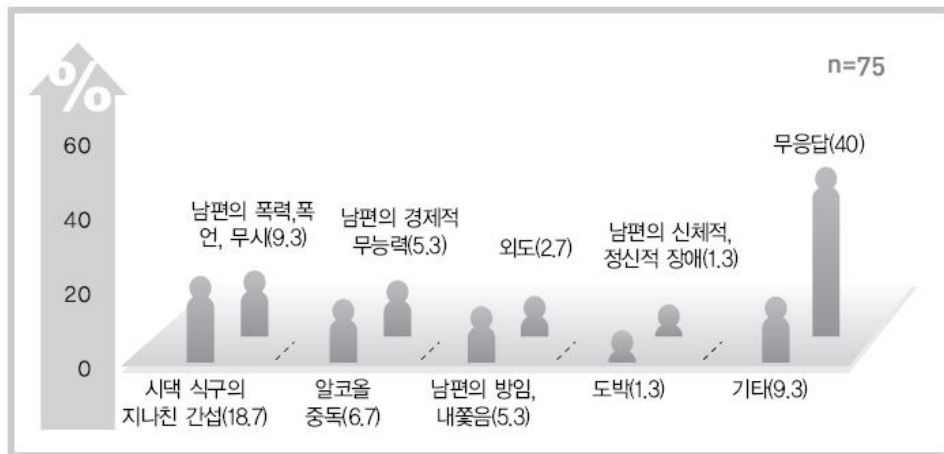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금뿐 아니라 추가로 200만원을 한국 중개업체에 변상해야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국제결혼 여성은 자신의 부모가 받은

약 25만원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되어왔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베트남의 농가에서는 물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약 25~30만원의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이다.

3)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 사회의 순혈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경제적인 사유 등의 편견으로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어 연수 기회가 필요한 만큼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언어 소통 부족으로 겪는 차별 속에 이주 여성들은 적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한국사회에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문화를 알 수도 없다.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으니, 남편도 대화를 하려들지 않는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속한 국내 적응과 노동 관련 고충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한국국제노동재단 등에서 통역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 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고충 상담 사례



출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결혼이라면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을 수가 없다. 게다가 단기간에 속성으로 혼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문제이다. 결혼 전뿐 아니라 후에도 한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주해온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주 여성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언어는 차별과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주 여성들의 부부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 등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는 언어적 요인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²⁴⁾

- 일본 출신 40대 이주여성 : “한국에 시집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문제였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커서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특징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상처가 된다. 문화적 차이와 생활 습관 등에서 오는 갈등도 힘들었다.”
- 베트남 출신 20대 이주여성 :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 게다가 결혼 직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이 심해짐에 따라 한국 음식은 입에 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베트남 음식 생각이 간절해 한 달 동안이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 중국 출신 30대 이주여성 : “조선족이므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한다는 문화에 익숙해지기 힘들었다. 또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과만 상의하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 필리핀 출신 30대 이주여성 :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도 어른들의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가야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필리핀과는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었다.”²⁵⁾

24) 여순호(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이형하(2010),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연구>, 이담북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한국 남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이주여성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사례가 현장에서 상담 접수되고 있다. 정신적 장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통역 서비스와 대량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개 구조 아래에서 은폐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정보의 은폐로 인한 피해는 부주의하게 결혼을 결심한 이주여성의 개인의 탓으로 치부될 뿐이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 법은 사후적으로 행정적인 규제 장치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결혼중개업체의 정보 은폐로 인한 피해 사례

-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 2006. 7. 16. 필리핀 마닐라 맞선
 - 2006. 7. 18. 필리핀 현지 결혼식 진행
 - 2006. 8. 27. 필리핀 여성 한국 입국, 혼인동거 시작
 - 2006. 9. 중순 경 한국남성의 사촌을 통해 지적장애 사실 확인
 - 2007. 3. 협의이혼
- 필리핀 여성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혼인결정 및 혼인생활 유지에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인이 조기에 파탄 났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증거자료 : 현지 맞선 당시 통역 맡은 필리핀 여성의 녹취 증언
- 중개업자
 - 전면 부인 : "필리핀 여성에게 현지 맞선 당시 남성의 장애사실 고지했다"
 - 증거 자료 : 한국 본사 사장의 증언, 현지 사장의 진술서("Nora was fully informed about the physical condition.")



그러나 과연 혼인 파탄 이후에 부가되는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치유의 의미가 있을지, 그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결혼중개 행위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기재하여야 할 신상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의무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부가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입법적 미비 지점이다.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이주여성은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처한 이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간과되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구제하기에는 너무나 먼 법이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 문제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더욱 조장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어 법 시행 초기부터 그 실질적 효력이 미미하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대한민국(2007년 8월 17일)

“한국은 과도한 비용,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핵심 정보의 미제공, 그리고 신분증 및 여행증명서의 압수와 같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CERD para. 17; SR para. 65).”

● 200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논평 : 대한민국(2007년 8월 10일)

“한국은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그 배우자의 착취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하여야 한다(CEDAW para. 22).”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합법인지 여부를 기준에 두고 정착 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배제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마땅함에도 배제되고 있는 법 현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권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



출처 : 법제처

3)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07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현재 총 115개 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제3조),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자체의 책무로 부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층·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제6조), 나아가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도입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합법'체류 거주 외국인으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일관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해온 것과 상반되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외국인 표준 조례안과 이를 쫓고 있는 대다수 지역의 조례가 지원 대상을 ‘합법’체류자로만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소지를 내포한다.

4)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

2010년 8월,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실시되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된다.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선을 보러 출국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 서비스와 이주여성쉼터 등 자활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다국어로 운영되는 결혼이민자 지원 홈페이지 ‘다누리’에 지원 언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²⁶⁾

2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국제결혼 사전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남성들



출처 : 경남다문화가정지원센터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²⁷⁾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지의 표시·설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의 반려처분 또는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제5조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인종차별·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를 현행법 위반으로 일정 정도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당해 법률의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규정에 국제결혼 모집광고가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자, 2007년 11월 행정자치위원장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제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를 포함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7) 박지영(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출처 : 오마이뉴스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외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2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들의 제도적 장치들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국제결혼이 가정폭력이나 기타의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은 2006년 1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될 때,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반권리와 보호를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이 성행하고 있는 점과 인터넷 등



을 통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선정적인 광고 전략에 의하여 과거 가정폭력 등의 폭력 전과를 가진 남성들이 국제결혼시장으로 쉽게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입법의 배경이 되었다. 이 법에 의해,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미성년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결혼 중개업자는 여성의 자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정보, 폭력에 관한 범죄기록, 성적 범죄기록 등을 제공하고 가정 폭력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만5천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만은 우리보다 국제결혼이 더 빨리 진행된 경우로, 대만의 국제결혼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훈련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 대만은 2004년부터 본격적인 결혼이주자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언어교육이다. 결혼이주자들은 대만 국적 취득 전이라도 거류 자격만 있으면 어떤 교육기관에서라도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이주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의 문호를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등에 머물고 있는 반면, 대만에서는 거류 자격만 있으면 매년 실시되는 500~600개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샹티 위원회 제도는 이민자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 이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NGO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샹티 위원회와 같이 소수민족 여성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쉼터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뉴질랜드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비영주권 여성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Women Against Violence)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일대일 개인접촉이나 결혼알선 업체 등을 통해 입국하는 말레이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경우 이민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될까봐 심리적인 상실감과 극도의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파혼을 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재정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한 일부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들이 뜻을 모아 샹티 위원회(Shakti Community Council Inc)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기관이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샹티 위원회에서는 24시간 무료전화 가정폭력 여성 구호, 사회복지 상담 법률적 도움, 통역, 생활 필수 교육, 가정폭력 중재, 의료 등 일반적 후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쉼터에서는 안전한 비밀보장을 통해 자립 프로그램 지원 치료, 상담, 법률적 도움, 의료, 수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교육과 영어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샤틀리 위원회 제도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를 느끼면서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운동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체계와 사회 제반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치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1) 법적·제도적 정비

(1) 안정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²⁸⁾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한국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귀화신청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자녀를 가진 이주 여성은 그 결혼 상태와 무관하게 거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R para. 62). 한국은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이들의 법적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CERD para. 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으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28) 여순호(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소라미(2009), <제7차 인권교육포럼 :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 -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학교 인권센터



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98년 국적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케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은 이후 국적 심사 과정의 실질화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조기에 평등하고 평화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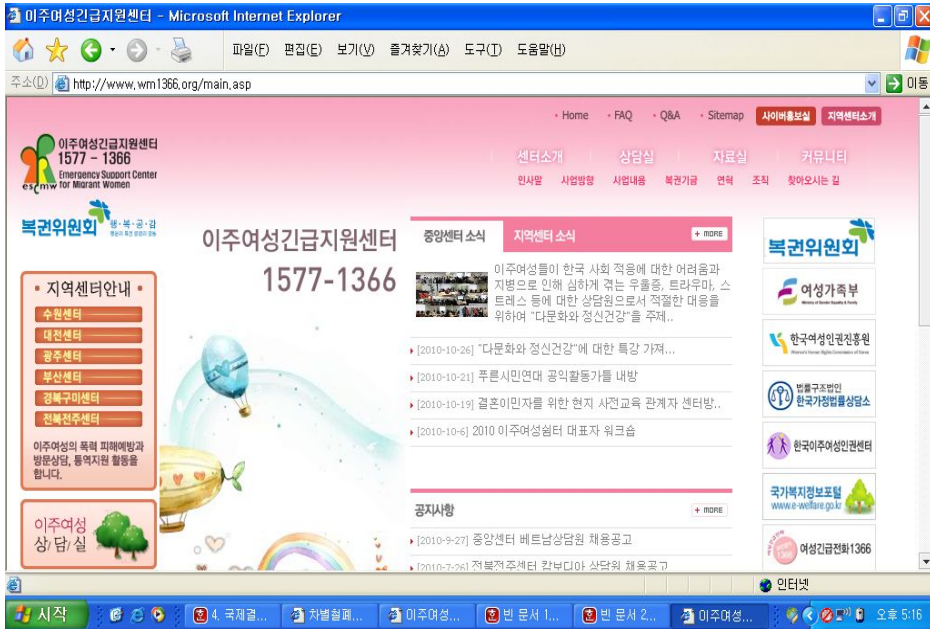
● 2007년 11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은 통계는 총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무료 법률구조사업 중 가정폭력 관련 처리건수는 3,668건으로 이 중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1.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정보의 부재 및 통역 서비스 불충분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사건 담당자들의 인식 및 관련 법률정보의 미약함 등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³¹⁾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현재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내국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력이 가능하다고는 하

30) 소라미(2009), <제7차 인권교육포럼 :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 -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학교 인권센터

31) 여순호(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만, 내국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기금 등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현재 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경기 24개소, 서울 20개소를 비롯해 전국에 17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교육, 부부·가족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보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요리와 취미,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여성 쉼터와 여성긴급전화의 일환인 결혼이민여성 1366센터도 운영 중이다.³²⁾ 또한,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도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 안내 등이 지원된다.

32) 이삼식 외(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통역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어 앞으로 베트남, 몽골,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권까지 통역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언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원이나 통역 인력이 센터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³³⁾

(3) 사회복지대책³⁴⁾

단계별	내용	정책수단 및 전달체계
입국전 결혼준비기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한국생활 정보제공·상담 한국인 배우자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이민관/콜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 및 임신·출산지원 종합정보제공 및 통·번역서비스 위기개입, 가족통합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송 및 디지털대학교 정보매거진/통·번역시스템 이주여성1366센터 및 쉼터
정착 및 자녀양육기	아동양육지원 취업역량강화 · 영농기술교육 · 취업교육 ·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보육시설
역량강화기	취업연계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 육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정책모니터링단/자조모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의 근거 틀을 만들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입국 전 결혼 준비기’부터 ‘가족관계형성기’, ‘정착 및 자녀양육기’, ‘역량 강화기’까지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체계화된 서비스 이외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33)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집문당

34) 여순호(2008),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필요하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율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가정의 해체를 맞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사별 후 또는 경제위기를 맞은 가족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양육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또는 24시간 자녀보육시설 등도 필요하다 하겠다.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민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다문화 강사, 통역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 활동가 등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희망 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이력서 작성, 면접 방법 등 취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³⁵⁾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의 존중과 인권 의식 성장을 돕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양성과 타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기존 거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과 기존 거주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협력 하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전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을 기획함에 있어 다문화 관련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향식 프로그램 기획에서 벗어나는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3) 실천적 지침

- 주변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성차별적·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 관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어머니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다문화수업의 강사인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35)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08),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6

탐구활동

● 다음 글은 201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 <중복(中伏)>의 일부이다.

처음 덕구는 베트남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아무리 조상 대대로 화전을 부쳐 먹고 살았다고 하나 늘 벼들 유 씨 양반이라고 자부했는데,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손자들의 피부색도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을 박가네의 베트남 며느리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 물론 요즘 한국 처녀는 시골로 시집 올 처녀가 없는 게 사실 아닌가. 덕구에게 더 시급한 게 일손이었지만, 아들은 죽어도 농사를 안 짓는다고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트럭을 몰았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니 농사일 도우는 것은 고사하고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모자라는 일손에 돈을 주고 남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베트남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어른 잘 모신다고 해 그렇게 결정했다. 다만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돈 좀 드는 게 마음에 걸렸으나, 일손이 하나 느는 게 어디냐. 눈 딱 감고 결정했던 것이다.

요즘 와서 덕구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 박가네 베트남 며느리가 도망을 간 것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다 며느리 조심하라고 입을 모은다. 26세 밖에 안 먹은 청상과부를 친정에 보내면 도망간다고 귀땀을 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나라도 친정에 가면 안 오겠다는 것이다. 덕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또 시내 공업단지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다. 박가네 며느리도 시내를 자주 들락거리다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 농과 눈이 맞아 아이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올해부터 면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고 모여 다니면서 말도 많다. 듣기로는 외국여자들은 아무나하고 그렇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니 혹 청상과부 며느리인 난이 바람이라도 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난은 달게 자고 있는 석이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 보며 건성으로 파리를 쫓았다. 문득 석이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책상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서야 석이 아빠 얼굴이 생각난다. 난은 한국에 처음 와서 무뚝뚝한 석이 아빠도 무서웠지만, 시아버지는 더 무서웠다. 석이 아빠와 대화를 해본 기억이 전혀 없다. 요즘이면 그런대로 몇 마디 말이라도 해 보겠지만, 처음 6개월 동안은 아니오, 예, 없어요, 좋아요, 이외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석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집에 왔다. 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은 석이가 뺏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 석이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상황 짐작으로 눈치를 챘다. 이장이 손짓 발짓과 사진을 찾아 보여 줬 알았다.

하노이 호텔에서 맞선을 볼 때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난은 처음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석이 아빠가 맘에 들지 않았다. 난은 명랑한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결혼업체에서는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렇다고 꼬셨다. 남자가 트럭운전수이고 29세면 젊었다. 대부분 40대이고 50대도 있었다. 사실 매월 30만원이면 동생들 대학공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고, 도시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혼했던 것이다. 난의 고향 하롱은 농촌이다. 이모작을 하는 논농사라도 식구들 입에 풀질을 겨우 할 뿐이고, 모두들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다. 고향 마을에서는 화셋거리였다. 난이 한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마을 처녀가 있는 집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베트남에서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으로 시집가면 모두 신데렐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성공한 나라, 부자 나라라고 모두 가고 싶어 한다. 한국으로 시집가면 온 집안이 잘 살게 된다고 난리를 쳤다. 한국에 시집가는 것은 곧 일류 직장이었다.

난과 한글 강사가 범도리에 들어서자, 넓은 깃털 밭, 띄약벌 아래 모자도 쓰지 않고 환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환은 난을 보자마자 눈물을 펄펄 쏟았다. 얼굴은 피멍이 들었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남편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인상을 쓰고 툭하면 '널 데리고 온다고 돈이 1천500만원 들었다' 소리를 쳐, 환은 난이 시키는 대로 밥을 안 먹고 아프다며 누워 있었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이다. 난은 자기가 괜한 말을 해서 환이 맞았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충격적인 것은 시동생이 자꾸 환을 집적거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환의 남편이 모른 척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강사는 흥분해 대신 경찰서에 고소해주겠다고 열을 올렸지만, 환은 남편과 시동생을 고소하면 한국 국적을 받기 전에 쫓겨 간다고 극구 만류했다.

올해부터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고 농촌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의 남편은 시에서 주는 다문화가정 결혼 장려금 500만원을 받았다. 환의 남편은 나이가 쉼돌이고 환은 이제 스물둘이다. 환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고 한국 국적을 받으면 서울로 도망갈 것이라며 이를 갈았다. 환은 매일 사는 게 지옥 같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눈물을 흘렸다.

- 위 글에 나타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7

단원 정리

IV.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 국내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연 11% 정도
- 그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비중은 70% 이상

●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 침해 실태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 왜곡과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식의 국제결혼 중개행태로 인한 인권 침해
-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법 현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0년 8월 실시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으로 인해, 국제결혼 희망 남성들의 사전 소양교육이 제도화됨
- 200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인종차별적·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처벌이 가능해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 미국, 대만, 뉴질랜드 등 외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V.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과 인권

차 례

1. 학습목표
2.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실태
4.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
5.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방안
6. 탐구활동
7. 단원정리



1

학습 목표

- 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현황 및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들을 둘러싼 인권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 2)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인권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인권 문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고, 법적·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 보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1) 다문화 가정의 의미

다문화 가정이란 민족, 인종,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주민 가정을 뜻한다. 다문화 가정의 범주는 다양하지만 크게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논란 속에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가정에 포함시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체제와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다른 다문화 가정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은 1990년대 말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혼혈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은 다문화 가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 국적 취득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³⁶⁾, 자녀 교육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주 노동자 가정은 1980년대 후반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 이주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저출산에

36) 여성 결혼이주자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 경과자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과실로 2년 이내에 파경에 이르거나, 배우자가 체류기간 연장이나 국적 취득에 관해 적극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국적 취득이 어려워 배우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희숙(2010), '한국 다문화가정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이해』(최충욱, 모경환 외) p. 260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 노동자 가정에서는 문화적 차별과 편견 외에도 임금 체불과 노동 환경, 의료와 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속도에 비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나 제도적인 지원,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등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권리를 보장받거나 요구하는 기본적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이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권리나 지위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이나 차별, 문화적 차이 등은 모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정의 유형

유형	의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형성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주 노동자 가정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한국)로 이주하여 근로하고 있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 후 낳은 아이 • 본국에서 태어난 후 이주 노동자 부모와 국내로 입국한 아이

(자료 : 정하성(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p.18 참고)

2)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현황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유아기와 성년기를 어디에서 보냈느냐에 따라 각각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한국에 오기 전 자국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낸 사람들로 자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2세대는 한국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로 이주 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속한다. 또한 그 중간 단계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유아기를 보낸 뒤 한국에 와서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들도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은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실제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 구체적인 집계가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있으며 이들의 인권 문제는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 4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2007년 이후 3년 사이에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학업 중단율도 증가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난민 출신 가정인 경우에는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³⁷⁾ 일반 가정의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업 중단의 세부적인 이유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함께 미취학 아동이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이주 노동자 가정 학생수	계
2007년	13,445	1,209	14,654
2008년	18,778	1,398	20,176
2009년	24,745	1,270	26,015
2010년	30,040	1,748	31,78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학업 중단율

	중도 탈락자 수	학업 중단율	이주노동자 가정 학생 학업 중단율
2007년	90 명	0.6%	1.2%
2008년	221 명	1.1%	5.3%
2009년	223 명	0.9%	5.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³⁸⁾

37) 헤럴드 경제 2010년 9월 30일자 “ 다문화 가정 학생 3년 새 배 이상 ↑.. 학업 중단도 매년 증가 ”

38) 헤럴드 경제 2010년 9월 30일자 “ 다문화 가정 학생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증가세 ”에서 참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 아동의 생활】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녀 나니아(7세, 가명)는 하루 종일 가구 공장의 컨테이너에서 지낸다. 나니아 가족에게는 공장이 일터이자 살림집이고 공부방이다. 아빠가 불법체류자여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돈이 없어 학원에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니아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3년 전 한국에 왔다. 아빠가 한국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아빠와 떨어지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아닌 한국을 택했다. 코리안 드림을 위해 불법체류를 선택한 나니아 아빠의 가장 큰 걱정은

딸의 공부이다.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자녀들을 고국으로 보내놓고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니아의 아빠 역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고민이다.

(사진 : 2009.9.25일자 한겨레21)

(기사 출처 : 2009년 12월 2일자 오마이뉴스 “나니아, 소원을 말해봐!”)

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 국내법상의 지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 의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내법은 크게 ① 아동복지법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제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 규정이 없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학교 측에서 외국인 등록증 같이 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어렵게 입학한다고 해도 학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학교 전산망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등 여



전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내법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고,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0년 교과부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대개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으나, 중학교는 학칙에 따라 입학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 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중학교 입학·전학,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국내법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 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 제1호(정의 규정) “다문화가족”이란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아동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① 국가와 지자체의 차별 없는 보육·교육 실시 ②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대책 마련과 시·도 교육감의 학과 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③ 국가와 지자체의 취학전 교육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한

	국어 교육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 1항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국내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해당학교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내용을 확인하여 입학이나 전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법상의 지위

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으로는 ‘국제인권규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UN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조항	쟁점이 되는 권리	내용
2조	평등권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6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7조, 8조	국적권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하며,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9조	부모와 살 권리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4조, 25조	건강권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6조	사회권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조	교육권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을 장려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30조	문화권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부모 중의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

진 경우 그 자녀, 즉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이주 노동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인권 침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교육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미등록 상태라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이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의 지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법적 지위

구 분	법적 지위
한국 국적 취득자 (국제결혼가정 아동·청소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동·청소년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며”,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음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동·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인정



3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10)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9.5%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하여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17.2%)의 4배가 넘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향상(57%), 노동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16.6%), 관련국가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대외 이미지 향상(11.7%),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으며,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 대한 거부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게다가 응답자의 76.3%가 한국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차별적이라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머리로서는 다문화를 수용한다 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³⁹⁾ 이렇게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출신국가나, 경제적 부(富), 인종 등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소위 선진국 출신에게는 관대한 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1) 법적·제도적 측면의 한계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차별이나 편견, 언어와 문화 차이, 정체성의 혼란,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 이중으로 취약한 지점에 놓여 있다. 아동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소수자(minority)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주 노동자의 거주권과 노동권’쪽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의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39) 동아닷컴 2010.10.16일 기사 “ [달라도 다함께] 당신의 다문화 인식은... ”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문화나 언어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0년 조선일보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5점,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점수를 매겨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⁴⁰⁾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물로부터의 보호(3점)나 아동 매매 방지(3.3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0.9점)이나 교육받을 권리(1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1점) 등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가 나왔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영유아기 때부터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 기초교육의 결핍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학령기에 이르면 강제출국으로 인한 불안이나 미흡한 교육권 보장,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개인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어려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남의 신분을 차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문화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발달 단계별 권리문제

발달 단계	권리문제
영유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에 누락되지만 증가가 예상되는 미등록 이주 영유아 ②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 ③ 초기 영유아기 의료, 건강상의 문제 ④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의 문제 ⑤ 기초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학교 갈 준비’가 부족함
학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관성 없는 정부 대책으로 혼란스러운 아동과 부모 ②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교육권의 문제 ③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 개인정보 ④ 일상생활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와 혼자서 적응하는 아동

40) 조선일보 2010년 5월 18일자 “[더 나은 미래]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 조사”

* 설문참여 기관 :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 무지개 청소년 센터, 다문화 어울림 학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 ⑥ 기초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들 ⑦ 다문화 이해 지원 부재로 힘들어하는 아동 ⑧ 체류 불안정으로 인해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는 아동들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분증 차용을 조장하는 사회 ②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 ③ 부모의 강제출국에도 혼자 남길 원하는 청소년 ④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하길 강요당하는 청소년과 불필요한 신분노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터뷰 자료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하길 강요당하고, 불필요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청소년	<p>“보충수업이라기보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놀토때 사람 불러가지고 박물관 데리고 가고, 단소 배우고, 근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안 나오면 막 뭐하겠다고 좀 협박적이시니까. 그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안 나간다고 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돈이 다 지원이 돼요. 저희는 그냥 버스비만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밥값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노는 토요일에 아침 일찍 학교 나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노는 토요일인데?”</p>
신분증 차용을 조장하는 사회	<p>“(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묻자) 그냥 한 가지 그런 게 있다면 등본. 아르바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등본이랑 신분확인 증명서거든요. 저는 지금 알바 하는데서 몽골사람인지 모르고요. 친구 이름으로 들어갔거든요. 친구 주민번호, 통장 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p>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교육권	<p>“지금은 좀 한국말 아니까 좀 괜찮지만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학교 다니는 한국말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학교에 사진(몽골사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생략) … 국사나 사회 같은 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번역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나라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해서 녹음해서 들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p>

<p>다문화 이해 지원 부채로 힘들어하는 아동</p>	<p>“...그런데 선생님들이 차별 없다고 하면서 나를 대할 때랑 한국 아이를 대할 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 ... 한 선생님이 너네 몽골에서는 한 물로 5번 씻는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게 시골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 다 얼굴 한번 씻고 코 풀고 거기다 치카치카 하고 거기다 몸도 씻고 거기다 발도 씻는다며 그러면서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열 받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 하나고 ... (중간생략)... 그 선생님은 기분 안 나쁘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전 기분이 나빴거든요.”</p>
---	--

(출처 : 장혜림·김성천(2009)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과 권리, 제13권 제2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제
<p>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가 돼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적으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숫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중도에 그만두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 출생신고도, 학생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오직 학교 전산망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아이들. 또한 이들은 학교 안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행정 체계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은 교통카드 발급은 물론 학교 도서관과 홈페이지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들도 법적으로는 한국인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만, 단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출처 : 문화저널21 2010년 5월 5일자 “슬픈 어린이날 은 그만...이주아동권리법안 마련되나? 이주 아동들, 교육권과 의료권 보장받지 못해 ”</p>

2)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의식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피부색이 이상하다’,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서 어떻다’는 등의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

고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거나,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이 약화된다는 등,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성인들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어린 아동이나 한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청소년들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한국에 온지 13년이 되었다는 박아스라르(다문화교육 인권강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놀린대요. ‘초코파이’라고. 그때 정말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파키스탄에 가자고 그랬어요. 거기선 차별 안 받을 테니까...”

(사진 : 동아일보 2007년 8월 20일자)

(기사 출처 : 오마이뉴스 2008년 2월 21일자. “아빠, 친구들이 ‘초코파이’라고 놀려요.”)

청소년 희망재단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로 2008년 서울·경기지역 23개 초·중학교 학생 1,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41.4%에 불과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친구로 지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2.9%가 긍정적인 답을 했으며, 9.3%는 ‘친구로 지낼 수 없다’, 37.2%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초·중학생의 인식

다문화 가정 학생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	42.4	38.2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	34.1	32.9
가치관·생활방식 차이 때문	34.1	30.3
외모·피부색이 다르기 때문	18.8	30.3
친구들의 무시·놀림 때문	14.1	19.7
창피하기 때문	12.9	18.4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	7.1	13.2
부모님이 싫어하시기 때문	4.7	3.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희망재단, 2008)⁴¹⁾

그 외에도 문화적 차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만약 자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자국 문화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되는 문화권은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권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에 규정되었고,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자기 문화를 박탈당하거나 동화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문화적·집단적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 언어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동화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다문화 교육의 대상 및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41) 청소년희망재단이 보건복지가족부 의뢰로 2008년 8~12월 서울·경기지역 23개 초·중학교 학생 1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처: 국민일보 2009. 1.23 초·중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인” 41%뿐)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여고생의 사랑이라니!



2009년에 제작된 <반두비>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와 여고생의 로맨스를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에 출연한 마붐알엄씨는 영화 개봉 전부터 수많은 협박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여고생의 사랑이라는 영화의 설정을 불쾌하게 여긴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에게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주 노동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이 영화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백인이었다라고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프레시안, 2009년 7월 28일 “버스모독 인도 교수- 살해협박 <반두비> 주인공”)

● 가난한 나라에서 온 피부도 검고 더러운 아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녀 사양(13)은 “가난한 나라에 온 피부도 검고 더러운 아이”라며 태권도장에서 따돌림을 당해 결국 다니던 태권도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러한 인종차별의 바탕에는 순수혈통주의와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이 내재해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으나, 이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를 소수 이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우리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2009년 9월 7일 경향신문. “동남아인에 비겁한 우월의식”)

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주관 부처가 되면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며,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학습 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 운영, 교사 연수 강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어 교육, 이주노동자 축제, 다문화 캠프 등을 진행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민간단체에서도 방문교육 서비스나 상담, 자녀 양육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별 정책

부처	법제도 및 정책	주요 내용
국무총리실	『외국인 정책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익을 우선하는 통제중심의 정책기조에서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표준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함(2006년 10월 31일)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재한 외국인의 인권옹호와 사회적응 지원함
노동부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도입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아동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지정 등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법』	이주 아동 학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 없음	이주노동자의 문화사업 지원(문화축제), 한국어 강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대안학교 운영

(자료: 정상우(2008)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제34호 p.317)

보건복지부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주 기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시	전(全)단계
정책 과제	결혼중개 및 결혼 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결혼 이주민 조기적응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	결혼 이주민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해체 다문화 가족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 지원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해설자료(2008.10.3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중심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짐 ① 교사용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 배포	*한국어, 문화이해교육을 주로 실시 ① 한국어 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② 이주 노동자 종합 축제, 문화가이드북 발

② 시범학교 운영 ③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보급 ④ 한국어반,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간, 이주노동자 다문화 청소년 캠프 ③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④ 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	---

(한국개발연구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사업 분류	세부사업
교육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 교육-국적별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한국어강사(도우미)양성,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등 가족통합교육(결혼이민여성, 배우자, 시부모 대상 프로그램, 부부, 부모 자녀 대상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상담지원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관계 증진 상담
자녀양육 지원	산전·후 도우미, 아동양육지원, 공부방 운영, 심리·정서 치료 자녀 일시 돌봄 서비스, 엄마나라 문화언어 배우기
역량강화 지원	정보화 교육, 직업(취업)교육, 다문화원어민, 강사양성, 통·번역사 양성
문화정서지원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매칭(멘토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육성 문화교육, 문화체험, 문화 행사 참가
홍보 네트워크 형성	출신국 문화의 지역사회 홍보 지역 내 다문화 축제, 캠페인, 각 관련단체 다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출처 : 강세일(2010) '다문화 청소년' <http://soyangmal.blog.me/100114186105>)

2) 현행 지원 정책의 한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 가정과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어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



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 통계상에서 사라진 아동·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교 중심의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모순이 있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다른 학생들의 분리가 더욱 조장된다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 수업 대신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을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시민 단체에서 펼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거나 천편일률적인 조례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각종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등을 설립·운영 하는 데에는 물적, 인적 자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커질 위험이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중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결혼가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조사 결과,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95%가 전국 농가평균 소득보다 낮았으며, 50%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⁴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농어촌의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42) 제주의 소리, 2010년 7월 8일자 “ 농촌 총각 문제 심각...결혼하더라도 35%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50%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한계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千篇일률적으로 제정되어 '관박이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내용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정 조례에만 편중되는 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다문화 정책의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광주대 사회 복지학과 옥경희 연구팀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로 하여금) 모국 문화를 버리고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이 인권을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문화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존중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건강한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시집식구를 포함한 친척들이며, 그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책과 사업이 개발·적용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옥경희 교수는 "다문화가족의 유형과 성격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방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며 "나아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문화 정책에 치중하고,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2010년 2월 23일자 “ 다문화 지원조례 ‘편식’ ...인권 증진 조례 무관심)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취약하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OO양(여,13세)은 초등학교 입학 후 방과 후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지만, 그마저도 유적지 방문 일정 등으로 수업 시간 대부분이 꾸러져 있어, 여전히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서울 시내에서 20여 개교, 그 것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엄마의 나라 체험’이라는 기초하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평일 일반 수업 대신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요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다른 아동들과 분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현숙 이주민여성상담소장은 “이벤트성 사업 같은 느낌”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해 아이들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 노컷뉴스 2009년 5월 5일자 “다문화가정 어린이, 영어는 배워도 한국어 배울 곳 없어”)

1) 제도(법/정책) 측면

• 다문화 정책 및 법적 보호 대상의 확대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갖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배제되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0년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또한 현재 합법적인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중 다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제외한다면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그 취지에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제결혼 가정의 배우자가 남편과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아도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대책

교육 결손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취업, 자기 계발, 자존감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학교 입학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인성 교육 강화,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한국어반 운영,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 지원,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립과 지원, 교사·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연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외에 일반적인 가정의 학생들도 다문화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정책 등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명심해야 한다.

• 체계적, 통합적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

현재 다양한 부서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통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다를 것이므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나 학원의 수가 적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상호 교류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조정하고, 정보와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의식적 측면

사람들의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편견, 오해 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과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강화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 교육이 주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성과 차이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아래 ‘레인보우 합창단’의 사례나 이주 여성이 직접 강사가 되어 자국의 요리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인종과 국적, 문화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더 풍부한 목소리를 창조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주 여성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거부감 없이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동화’가 아니라 ‘공존’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일곱 빛깔 무지개 합창단이 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조금 자란 후에 한국에 온 아이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게 되었고, 김치를 즐겨 먹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부색과 눈동자의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

감이 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2009년 '레인보우 합창단'이 탄생했다. 합창단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들은 모두 다른 색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음악을 통해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꿈을 키워가게 된 것이다.(사진 : 뉴시스, 2010년 8월 22일)

여러분, 중국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어봤나요?



“여러분, 중국 음식 중에서 무엇을 먹어봤나요?”

“ 자장면!” “짜뽕!” “ 탕수육!”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자국(自國)의 음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구로구에서 2010년 11월까지 운영하는 '이주 여성과 함께 떠나는 지구마을 요리나라'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것이다. 이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이 자국의 요리를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으며 고향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한 경향이 있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반면, 이 프로그램은 결혼 이주민들이 직접강의를 하여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기사 출처 : 동아일보 2010년 9월 14일자 “ [다문화에 사는 사람들] 고국 요리 만들며 다문화 가르쳐요 ”)



3) 실천적 측면(행동적 차원)

제도나 의식 차원에서의 변화 외에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머리로는 ‘우리랑 다르지만 존중해야 한다.’라는 관용의식이나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이며,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인권의식이 자리 잡혀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이주민을 대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실천적 측면에서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단순히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2007년 광주 동부교육청에서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교육의 실제’라는 장학 자료에 교사들이 지켜야 할 10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및 참고 사이트, 추천 도서, 관련 단체 사이트까지 자세하게 실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이 지켜야 할 10대 가이드라인에는 ①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것, ②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습득할 것, ③ 다양한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것, ④ 학생들의 편견을 바로잡을 것, ⑤ 교과서나 학습 자료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할 것, ⑥ 다문화 자녀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할 것, ⑦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것, ⑧ 협동학습의 장을 마련할 것, ⑨ 학급, 학교 행사에서 배제시키지 말 것, ⑩ 다문화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개념과 내용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문화교육 10대 교사 가이드라인

1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라.
2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습득하라.
3	다양한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라.
4	학생들의 편견을 바로잡아라.
5	교과서나 학습 자료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라.

6	다문화 자녀들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라.
7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라.
8	협동학습의 장을 마련하라.
9	학급, 학교 행사에서 배제시키지 말라.
10	다문화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개념과 내용 등을 활용하라.

(출처:뉴시스, 2007년 12월 21일 “ 다문화교육 10대 교사 가이드라인 ‘눈길’ ”)

위와 같은 형태의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비단 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배포한다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스스로가 행동해야할 방향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수록 더욱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래의 ‘이렇게 바꿔봅시다’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은 매뉴얼이나, 관련 기관 등을 안내하는 자료 등을 상세하게 제작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욕설하지 않기	“야! 이 XX 야”	“OO 씨, OO야” 라고 이름 부르기
인종차별적 발언 하지 않기	“초코파이 같 ” “너는 까매서 ...”	다양한 피부색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다른 문화에 대해 비방 하지 않기	“너희 나라는 가난하니까...” “너희 나라에서는 ...한대며?”	성급하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함께 활동하기	“너는 이런 거 못 할 테니까 빠져!”	“너는 이런 것을 잘 하는구나,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기.
의견 존중하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긴 우리나라야.”	다른 의견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고 경청하기.



따돌리지 않기	“저 애는 우리랑 다르니까 같이 놀지마.”	함께 어울리며 언어 습득이나 학교 생활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기.
부모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	“너희 엄마 외국인이라며? 그 나라는 ... 라지?”	부모님의 국적이나 외모 등을 가지고 비하하거나 놀림감으로 삼지 않기.



6

탐구활동

- 다음은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실에 대한 전문가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평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 A : "여러 아동이 있는 앞에서 교사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들만 모아 가르치며 차별한다."
- B :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모 탓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아동에게 학교가 획일적 교재로 주입식 교육을 한다."
- C :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이 생활관습이나 음식문화, 놀이체험 등에 치중할 뿐이지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고민은 없다. 현재 다문화 교육에는 다수자의 개방적 인식과 태도 변화에는 소홀하다"
- D :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생업에 바쁜 한국인 아버지 아래서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배울 수 없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른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 청소년들은 공교육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대안 시설들에만 손을 뻗고 있다"
- E : "다문화 청소년을 돕는 정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그들을 향한 한국 청소년들의 시선과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기존 교육제도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V.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과 인권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업 중단 학생의 수가 많음
-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와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주 노동자의 자녀보다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의 법적 지위가 취약함.
-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권이나 건강권 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실태

- 법적·제도적 보호 영역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 배제
- 영유아기 때부터 건강, 기초 교육 등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강제출국, 학교 부적응, 개인 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저개발국가,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며,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 운영, 교사 연수 강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이주노동자 축제, 다문화 캠프 등을 진행
-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민간단체에서도 방문교육 서비스나 상담, 자녀 양육 등에서 지원을 강화
-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음
- 이주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동화 정책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방안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 및 법적 보호의 대상 확대, 교육권과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
-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인권 의식 향상 및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를 통해 동화가 아니라 공존의 가능성 모색
-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관용과 인권존중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

VI.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차 례

1. 학습목표
2. 고정관념과 편견의 개념
3.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
4. 차별의 개념
5. 인종차별과 그 역사
6.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 편견과 차별의식 자기 점검
7. 탐구활동
8. 단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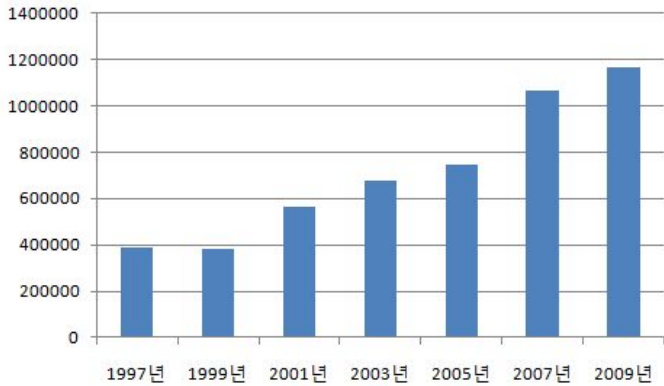


1

학습 목표

- 1)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2) 인종차별의 사례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 3) 자신의 다문화의식 점검을 통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갖는다.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어디에 가든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진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약 120만명에 달하는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수

이러한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경에 전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단일 문화에 기초한 단일 민족 국가에 머무를 수 없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오랫동안 다문화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에서도 불과 10년 전에 인종 폭동이 발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민족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며, 유지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장기적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인식 점검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편견은 어떠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를 말하며, 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칭한다. 즉,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편견의 인지적은 근원이 바로 고정관념(stereotype)이며, 편견이 행동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세계를 파악할 때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주화이다. 사람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투, 외모, 종교, 인종, 국적, 성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분류하고, 같은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범주에 속한 특성을 그 구성원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 시킬 때, 고정관념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고정관념은 한 집단의 실제 차이와 상관없이, 단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관념은 인간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다양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백인은 지성적이고, 흑인은 게으르다거나, 독일인은 근면하고 검소하고, 영국인은 신사리든가 등이 있다. 혹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거나,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거나, 서울 사람은 각쟁이라는 등의 고정관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인종·종족 간의 갈등은 이러한 편견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도 르완다와 발칸반도에서는 종족 말살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근거 없는 편견으로부터 정당화되기도 한다.

르완다 내전과 인종 학살

1994년 르완다 내전 중에 후투족에 의하여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이 학살을 당했다.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00여 일간 최소 50만 명이 살해당했으며,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현 르완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4,0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르완다 내전으로 학살된 사람들의 유골

르완다는 원래 농경민족인 후투족이 주로 살고 있었으나, 15세기경 유

목민족인 투치족이 남하하여 왕국을 세우고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 간의 비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가 르완다를 식민통치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벨기에는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전 인구의 14%에 불과한 투치족이 85%의 후투족을 지배하는 차별화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배 부족인 투치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벨기에는 정책을 바꾸어 이번에는 후투족을 지원하며, 의도적으로 분쟁을 부추겼다. 1961년 후투족이 중심이 되어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투치족과 후투족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국 1994년 4월 6일 후투족 출신의 르완다 대통령이 테러 공격에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후투족 정권은 투치족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시작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편견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며, 일종의 태도 및 신념과 함께 작용한다. 이는 고정관념과 함께 사회적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어떻게 편견이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통해 그를 인식한다. 이 때 그러한 인식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가 어떠한 범주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을 알며,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로부터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으나, 정서적 측면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950년 아도르노(Adorno) 등은 반유태인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성격유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성격 유형이 형성되는 이유는 발달과정에서 지나친 억압과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집단 중심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

나의 권위주의 경향성

※ 다음 문항에 대한 찬성-반대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문항	찬성-----반대
1. 파렴치한, 불량배, 걸인들을 무슨 수를 써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2.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사람들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⑤ ④ ③ ② ①
4. 사람들은 팔자에 따라 살게 마련이다.	⑤ ④ ③ ② ①



5.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6. 여자가 술 마시고 담배피우는 것은 꼴사납다.	⑤	④	③	②	①
7. 사람의 가치는 얼마만 한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	⑤	④	③	②	①
8.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9.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	⑤	④	③	②	①
10.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볼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민경환, 1989 연구에서 일부 발췌함)

권위주의적 성격이론 외에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설명하는 감정적 측면의 설명 방식이 있으며, 이는 사회정체감 이론이다. 사회정체감이론에서는 소수 집단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해 자기 집단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서 집단적인 정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편견으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게 된다.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외에도 사회적 측면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설명할 수 있다. 두 집단이 하나의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서로에 대하여 적개심이 발생하고, 이는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낳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20세기 초 미국은 철도건설 등의 노력에 종사할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이들 집단과 백인 간에는 서로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었고, 따라서 두 집단 간에 경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간에 현실적인 갈등은 없었으며,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부지런하고, 온순하며, 준법정신이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끝나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귀향하여 구직난이 닥치게 되자, 동양인에 대한 평가는 '뻔뻔하고, 교활하며, 우둔한' 것으로 바뀌었다(Aronson, 1988). 또 다른 경우에는 학습과 사회화를 통한 고정관념 및 편견의 획득이 있다.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가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경우, 혹은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에서 고정관념 및 편견을 내재화하게 된다. 부모 이외에도 TV 등의 방송매체도 사회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매체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편견

인종적 소수자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종적 편견을 형성하는 사회적 규범은 뉴스텍스트와 그 프레임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긍정적이고 발전적 이미지보다는, 낙후되고 더러운 장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매체의 문제는 다문화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발견된다. 미국과 영국의 뉴스미디어는 인종적 소수집단의 범죄나 일탈행위 등 부정적 사건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들의 주변화에 기여한다.

외국인 노동자 잇단 성범죄, 등굣길 여학생 강제추행

OO 지역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OO 경찰서는 지난 O일 학교 급식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이 학교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혼자 등교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15일과 21일에도 인근 중학교에서 등굣길 여학생 한명씩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생을 성추행한 네팔 국적의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O일 한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D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C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서고 이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했으나, D양이 문이 열린 틈을 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OO일보. 2010. 10. 25)



4

차별의 개념

편견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며, 우리 사회에는 각종 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차별은 '관계', 즉 구체적 맥락 속에서 포진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사회화된 인간이라면 자신의 다양한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겪게 되는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유형

차별 유형	특징
성별에 의한 차별	여성 혹은 남성 등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기혼이나 미혼 등 법률적인 혼인여부, 결혼 후 별거, 이혼, 사별, 사실혼 관계(동거), 동성에 커플관계, 미래의 혼인 가능성 등 혼인과 관련된 모든 상태로 인한 불이익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	임신에서부터 출산 후 회복기간, 자녀 양육과 모유수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등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태로 인한 불이익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대가족, 핵가족, 한부모가족, 이성애가족, 동성애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돌봄의 책임 등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키, 몸무게, 외모, 체형, 인상, 모반이나 흉터 등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불이익

종교에 의한 차별	종교가 있거나 없음 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종류가 다른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대상이 남성, 여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인 것으로 인한 불이익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	주의, 주장, 진보, 보수, 지지 정당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사, 견해 등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장애에 의한 차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하여 상당기간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	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그 원인 및 병의 진행 결과와 치료 과정 등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나이에 의한 차별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전과자, 귀화인,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평가를 받는 지위를 이유로 인한 불이익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이유로 인한 불이익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	태어난 곳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	태어나거나 성장한 나라 또는 민족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피부 색깔이 다름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편견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단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암묵적’ 합의만 있을 뿐이지, 무엇을 차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합의도 뚜렷하지 않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어떤 이들에게는 단번에 차별적 상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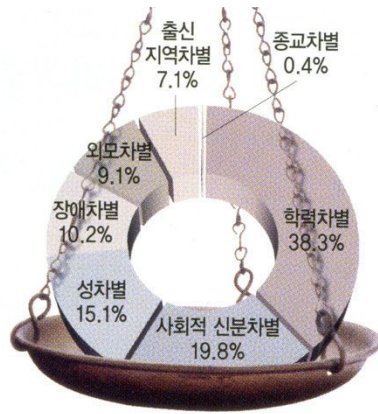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 설사 차별로 인식된다하더라도, 매우 가벼운 차별로만 이해된다. 대개의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은 육체적·가시적인 폭력, 경제적 불이익, 정치참여의 배제와 같이, 피해사실이 분명하고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가해 역시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비인간적인 범죄자나 규칙 위반자 정도로 이해된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차별 피해자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차별의 경험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주변의 차별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별의 ‘쓴맛’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평등사회를 살고 있다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각종 차별에 좌절하곤 한다. ‘얼짱’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수백만 원씩 들여 기꺼이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인물 차별’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네티즌들은 어떤 차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까.

리서치 전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 가장 만연한 차별은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3%가 ‘학력차별’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19.8%는 사회적 신분차별, 15.1%는 성차별, 10.2%는 장애차별, 9.1%는 외모차별, 7.1%는 출신지역차별을 지적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차별이 자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의 차별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OO일보, 2004. 7.13.)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안 권고 이후, 논란만 지속되었다가 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차별 사유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첩되거나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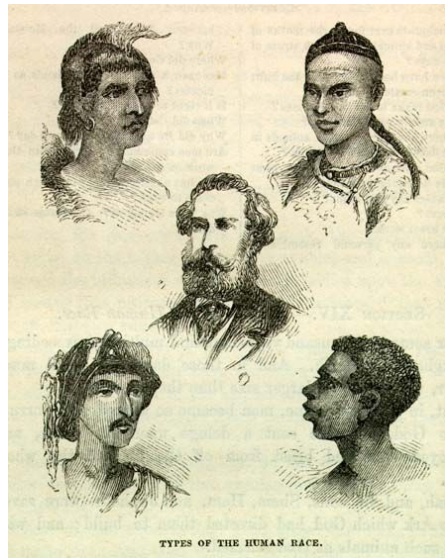
별 사유별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그 자체로도 충분히 큰 의미를 갖지만, 장애인이자 비혼/이주/여성/성소수자이기도 한 경우의 차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적이다. 게다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을 거치면서 ‘성적 지향’과 같은 차별 사유가 특히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차별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반차별운동이 인식해야 할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고 있다. 즉,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차별을 오히려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이해할 수 있는 반차별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5 인종차별과 그 역사

1) 인종의 개념

인종(race)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체나 용모의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며, 19세기에 인종을 보통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세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신체나 골격, 용모의 특징은 인간 집단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 의해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호르몬 활동이나 혈액 성분 등 여러 다른 기준들이 더 추가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수십 개의 인종으로 나누기도 하나 정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 인종이라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구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종(種)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안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통의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고 성적 교섭을 통해 후손을 생



여러 인종 유형



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른 종 사이에서는 후손이 만들어질 수 없으며 가까운 종 사이에서 그것이 혹시 가능하다 해도 그 후손이 생식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과 당나귀 사이의 잡종인 노새가 생식력이 없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종으로 불리는 다른 인간 집단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백인과 흑인, 황인과 흑인, 황인과 백인 사이에서 얼마든지 생식 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종은 종이 아니며 과학적인 면에서는 아무 쓸 데 없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양 사람들이 인종을 생물학에서의 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어떤 인종에 속하는 사람은 그 정신적, 신체적 특징들을 유전에 의해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지능, 또 도덕성 같은 것도 인종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때 그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정하고 있는 것은 백인종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우월성은 유전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것이므로 결코 인간이나 환경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에서 인종은 과학적으로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이렇게 불분명하며 인간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인종 개념 위에서 있는 이데올로기를 인종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인종주의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다음 몇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해 있다. 첫째, 인간은 공통의 신체적 특질을 가진 다른 인간집단인 인종으로 나뉘는데 그들 간의 차이는 동물의 다른 종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같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특질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유전에 의해 후대에 전달된다. 교육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셋째,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위는 대체로 그가 속한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의존한다. 넷째, 인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우열이 있다. 이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적, 도덕적 특질의 우열로 나타난다. 다섯째, 위의 전제의 의해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 된다.

인종적 집단 사이에 이렇게 우열을 가정하는 것은 자원이나 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한 인종이 이런 것의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인종적 집단을 한 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축출하고 심지어는 모두 죽이는 것까지도 정당화한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념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저질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지난 500년간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며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념이 인종주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을 거의 멸종시키고,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 2차 대전 때에는 독일 사람들이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는데 그 바탕에 있는 것도 역시 인종주의이다. 그러나 인종주의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비교적 약화된 것 같이 보였으나, 최근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유대인 학살과 식민지 해방으로 인해 2차 대전 후에는 UN을 중심으로 인종적 차

별을 금지하는 국제적 운동이 벌어졌고 법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는 달리 속으로는 황인종이나 흑인종을 깔보고 경멸한다. 그것은 이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 이후로 불평등하게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백인종과 다른 인종 사이에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UN의 인종차별금지 포스터



유대인 학살



수 있다.

전세계 주요 인종차별 범죄단체 현황

러시아 · 북유럽의 스킨헤드



• '스킨(Skin)' 주먹
주먹에 'SKIN'의 알파벳을 새기는 것이 최근 전 세계 스킨헤드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 해머스킨즈
1988년 미국 텍사스에서 결성된 백인우월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영국 극우주의 운동



• 스톰프런트(Stomfront)
영국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사용하고 시작했다. '스톰프런트'는 역사상 최초의 인종 혐오 웹사이트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 교수형 올가미
미국 흑인을 겨냥한 상징 문양.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 켈트 십자가
오단의 십자가로 불린다. 신나치주의자와 백인우월주의자 사이에 가장 대중적인 상징이다.

독일의 신나치즘



• 나치스 돌격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 탄압을 위해 조직한 나치스 돌격대의 공식문양을 변형했다.

전세계 주요 인종차별 범죄단체 현황

인종차별과 영화

외계인들은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얼굴을 내밀었을까?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우주선과 외계인들의 모습보다 지난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떠오른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분리, 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카스어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이다. 16% 백인이 84%의 흑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시킨 반인륜적인 폭압의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영화의 외계인은 거짓(허구)이지만, 담긴 은유는 진실이다.

28년 동안 외계인 격리 지역(디스트릭트9)에서 살아가는 외계인들은 지구 정복이라는 우월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먼 이방인이다. 남아프리카를 찾아온 백인들은 다이아몬드를 찾아 깃발을 꽂은 외계인들이었지만, 흑인들은 외계인화 시켜 세상



을 지배했다. 영화 속 28년의 역사보다 더 뿌리 깊다. 화장실도 따로, 좌석도 따로, 식당도 따로, 이러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지배 권력층이었다.

백인이 키우는 개가 흑인이 기른 개에게 공격당하자, 백인이 흑인을 총으로 쏘 죽인 사건도 일어난 곳이 바로 남아공화국이다. 물론 백인은 무죄로 풀려났다. 허구 같은 실화다. 영화 속 외계인들은 남아공 흑인들을 집단분리 시켰던 요하네스버그의 소웨토지역처럼 인간들에게 격리 수용된다. 외계인들은 과거 남아공의 흑인들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영화 '디스트릭트9'은 외계인을 통해 본 인종 차별정책의 지난 풍경이자 흔적이다.

3)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극단적 인종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혐오 범죄가 있다. 혐오 범죄는 편견을 가지고 살인과 방화, 또는 문화파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이나 불특정한 상대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혐오 범죄는 그 출발이 편견과 차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보다 그 심각성이 크다.

차별과 관련된 유형별 사건 현황(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조정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 진행
건수	6,228	5,638	17	461	3	133	3,842	60	1,093	29	590
		100	0.3	8.2	0.1	2.4	68.1	1.1	19.4	0.5	
성적 지향	22	21	0	7	0	0	9	1	3	1	1
인종/국적/민족	197	183	0	9	0	2	118	7	45	2	14
장애	1,598	1,323	4	76	0	34	802	5	397	5	266
종교	72	64	0	6	0	1	45	0	12	0	8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통계자료 재구성(2001.11.26~2009.6.30)



미국의 혐오범죄 현황(단위: 건)

구분	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인종 민족	35,812	4,877	4,984	4,858	5,014	4,870	4,744	6,465
종교	10,060	1,400	1,462	1,227	1,374	1,343	1,426	1,828
장애	381	79	79	53	57	33	45	35
성적 지향	8,550	1,265	1,195	1,017	1,197	1,239	1,244	1,393

<읽을거리> 혐오범죄와 한국 사회

인종이나 성적지향, 젠더, 장애 등에 대한 혐오가 동기가 되어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 간간히 해외뉴스란을 장식하던 ‘혐오범죄’ 혹은 ‘증오범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다.

#1.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싫다
-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 한 남성의 인터뷰

#2. 한 사내의 손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아래위로 갖춰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후세인이 돌아보자 그가 외쳤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 ××야!” 그의 손가락이 연방 후세인을 향했다. 후세인은 놀란 눈으로 그저 그를 바라봤다.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야.”
- OO일보. 2009. 08. 14. “냄새나는 한국의 인종차별”

#3. 자신의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연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 박 씨는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만나온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 이런 것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 OO일보. 2010. 05. 28. ““내 여친이 트랜스젠더?” 연인 목 졸라 살해 ”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대체가능성이 있어, 한 집단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성이 더 높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러한 혐오범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단계는 아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정보부족과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혐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나, 차츰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혐오범죄방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경우,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해 연방 차원의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인종관계법은 일종의 '괴롭힘'으로 혐오행위를 규정하며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존의 '인종차별법'의 보호범위를 확장해 '인종혐오법'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그 개인 또는 그룹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하여 UN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6년 유엔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27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3부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 1항에서의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2조는 당사국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들에 의한 차별대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껏 차별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s)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조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규탄하고, 4조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5조~7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목록을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양심·종



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노동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참여권, 공중시설·장소에의 접근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11조는 국가간 청원(inter-state communications)을, 14조는 개인 혹은 그룹 청원(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s)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시행을 위하여 취한 여러 조치들을 작성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당사국과 유엔총회에 보내기도 한다. 또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협약위반사실을 청원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심리하며, 만일 당사국이 개인청원을 인정했을 경우 이 사안도 다루게 된다. 1993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과 종족갈등이 늘어감에 따라 협약 위반을 방지하고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조치(early-warning measures)와 긴급절차(urgent procedures)인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5)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해결방안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민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을 한국인이 받아들여야 한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좁은 반도에 살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던 한국인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물론 서구 식민지 세력을 통해 기독교문화의 전달을 받았고 타문화에 대한 접촉을 하게 되었지만, 동남아나 서아시아의 문화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접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편견과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앞으로 오는 세기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들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인종차별사례들을 널리 알려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4년 1월 경실련 강당에서 산재노동자들이 농성한 것이 결실을 맺어 미등록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1995년 1월 네팔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에는 많은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저변에 내재한 차별문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

다. 일 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백인과 기타 유색인종의 차별을 불러오는 '살색'이란 명칭을 시정하도록 권고를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상징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이름 대신에 국명을 부르는 한국인들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이름 부르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인종차별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공연, 음식바자회 등을 통해 한국인에게 자국문화를 알려 문화적 편견을 없애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별을 가져오는 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차별의 근본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 편법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자로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내지 노동허가제의 법을 만드는 입법투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이것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입법화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5대 차별의 하나인 인종차별 해결의 중요한 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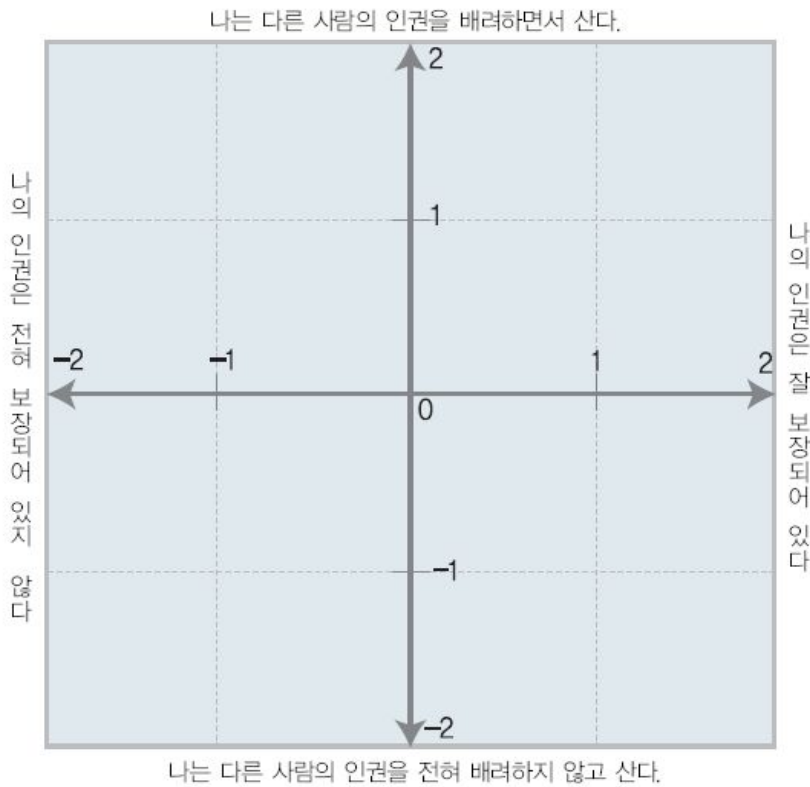


6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 편견과 차별의식 자기 점검

나와 다른 외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의식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다음 그림에서 자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표시해보고, 자신의 인권의식을 점검해보도록 한다.



7

탐구 활동

- 다음에 제시된 '다문화지수' 측정 문항에 체크해보고, 신문기사 내용과 비교해봅시다.

번호	문항내용	매우 동의한다	조금 동의한다	보통이다	조금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결혼이주여성은 학력이 낮을 것이다.					
2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쉽게 이혼할 것이다.					
3	외국인 가정의 이웃으로 사는 것은 불편할 것이다.					
4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5	이주자인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 계획이 있다.					
6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뒤쳐진 아시아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해야 한다.					
7	나는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다					
8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양육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					
9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편견이 심한 편이다					
10	나는 외국인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					

한국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다문화지수 46.3점

한국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다문화점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46.3점이 나와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줬다.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3.97점, '우리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뒤쳐진 아시아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해야 한다'란 응답은 4.03점 등으로 비교적 열려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줬지만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평균 3.6점으로 높았다.

특히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편견이 심한 편이다'는 응답이 3.84점으로 높아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다', '결혼이주여성은 학력이 낮을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양육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 '이주여성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에 응답자 중에 10대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주자 인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계획이 있다'는 질문에 50%의 '그렇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에서도 10대가 38.5%로 가장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O일보, 2009.12.31.)

VI.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사회 만들기

● 고정관념과 편견의 개념

- 편견 : 어떠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를 말하며, 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칭
- 고정관념 : 한 집단의 실제 차이와 상관없이, 단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

●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

-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은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설명 가능

● 차별의 개념

- 고정관념과 편견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함
-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차별의 다양한 범주를 설명하고 있음

● 인종차별과 그 역사

- 학문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 최근 극단적 인종주의로 인한 혐오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음
- 학문적으로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만들기

- 자신의 다문화지수 및 인권의식 점검을 통하여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

VII. 다문화사회의 대민행정

차 례

1. 강의소개
2. 1차시 강의안
3. 2차시 강의안
4. 단원정리



1 강의 소개

가. 학습목표

-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이주민의 출입국, 단속, 보호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친화적 대민 서비스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나. 활동개요

- 대상 :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경찰 및 다문화 관련 일반 행정직 공무원
- 장소 : 강의실
- 소요시간 : 80분, 2차시
- 준비물 : 컴퓨터, 빔프로젝터, 학습자 활동자료
- 진행인원 : 교수자 1명

다. 학습개요: 주요내용과 개념

-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 이주민 관련 국내법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등이 있다.
- 이주민의 출입국, 단속, 보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인권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기(human rights oriented thinking)', 인권 침해 사전 예방, 인권 감수성 강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

라. 기대효과

-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과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법의 미비점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다.
- 다양한 실제 이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 지도시 유의사항

- 동영상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적합한 코덱이 컴퓨터에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 이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강의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바. 강의활동 개요

차시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1차시 (80분)	도입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 결혼 피해자 중국인 헌법소원 승소 사례 소개 · 현재 국내 이주민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 생각해보기 	10분
	전개	이주민 현황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철폐 관련 기준 · 이주민 취업 관련 기준 · 이주민의 결혼, 가족구성 관련 기준 이주민 관련 국내법 현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재한외국인차우기분법의 문제점 · 출입국 관리법의 문제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의 문제점 	60분
	정리	주요 학습 내용 정리	10분
2차시 (80분)	도입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 단속 과정과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보고 이주자 인권 침해에 대해 생각해보기 	10분
	전개	이주자 입국, 출국, 단속, 보호 관련 업무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법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살펴보기 행정 과정에서의 문화적 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 살펴보기 · 역할극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기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살펴보기 ·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한 방향 살펴보기 	60분
	정리	주요 학습 내용 정리	10분



2

1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0분	<p>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범근, 안정환의 사례를 통해 한국인도 외국에서는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위장 결혼의 피해자였던 중국 여성은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 신세가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현재 국내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의 문제가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 제시된 사례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행정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다. 	강의식	PPT
전개	30분	<p>이주민 현황을 살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주민 현황 이주민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에 65.1%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2만 명 이상 이주민 다수 거주 지역은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경기 안산, 수원, 화성, 성남 등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 노동자는 전체 이주민의 83.6%이며, 57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 전 맺는 근로 계약이 입국 후 바뀌는 경우는 무려 60%라고 한다. 바뀐 내용으로는 월급, 노동시간, 휴식 및 휴일, 숙소사와 식사제공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역할극을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현황에 대해 이해한다. · 역할극을 통해 입국 후 근로 계약이 바뀌는 경우 근로자가 느끼는 기분과, 근로자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강의식 역할극	PPT 학습자 활동자료 ①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입국 후 근로 계약이 바뀌는 경우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보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현황 <p>결혼이민자는 전체 이주민의 11.4%에 달하며 12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25.1%, 가족과 친척의 소개인 경우가 23.3%였다.</p>			
	15분	<p>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철폐 관련 기준으로써 세계 인권 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살펴본다. 세계 인권 선언의 경우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동영상을 감상한다. · 이주민 취업 관련 기준으로써 ILO협약과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대해 살펴본다. · 이주민의 결혼, 가족구성 관련 기준으로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대해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살펴본다. 활동자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p>동영상 감상 강의식</p>	<p>PPT 동영상 학습자 활동자료 ②</p>
	15분	<p>이주민 관련 국내법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본다. ·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으로써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이직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감상한 후 범조항을 확인한다. 또한 이주민에게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사회통합이수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관련한 국내법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p>강의식</p>	<p>PPT 교수자 지도자료 ②</p>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램은 한국어 400시간과 한국문화의 이해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동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63조 제2항의 내용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며 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짐을 설명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문화가족에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언급하지 않아 이주민가족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한다. ·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국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한다. 			
정리	10분	<p>주요 학습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 정리 본 수업에서는 이주민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전과 바뀌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 기준과 국내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차이와 차별에 관한 포스터를 보여준다. '차이'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수업을 마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을 상기시켜보고 차이와 차별에 대해 생각해본다. 	강의식	포스터

나. 학습자 활동자료

1차시 학습자 활동자료① 근로 계약이 바뀌는 경우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기

근로 계약이 바뀐다면?



각자 역할을 맡아 다음 상황을 재연해 봅시다.

상황 - 지금 막 입국하여 새 일터를 찾은 이주 노동자 A씨. 사장이 계약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사장 : A씨,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반가워요. 그런데 전에 말한 계약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수정해야겠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싸인만 하면 되요.

A : 뭐가 바뀐 겁니까? 월급은 그대로 인가요?

사장 : 아. 월급? 그거 내가 환율을 잘못 계산해서 말이야. 10만 원 정도 착오가 있었더라고. 미안해. 조금 줄었어.

A : 아. 그렇습니까? 안되는데.. 원래대로는 안 되나요?

사장 : 뭐?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 공장 문 닫아야해. 미안하지만 우리 그냥 계약합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계약 못해요.

A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 6일 근무에, 하루 9시간 일하는 거 맞나요?

사장 : 뭐.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공장 사정에 따라 하루 1시간 초과 근무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요즘 한창 바빠서 그냥 항상 10시간 근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A : 네???

1. 입국 후 바뀐 계약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2. A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3. A는 계약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1차시 학습자 활동자료②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의 종류

학습자 활동자료 ②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과 국내법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기준

1

2



이주민 취업에 관한 국제 기준

1

2



이주민의 취업, 가족구성에 관한 국제 기준

1

2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종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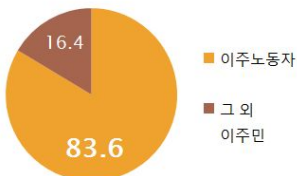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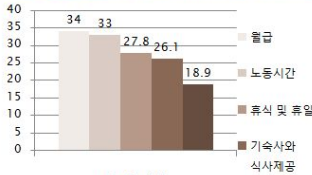
 <p>7. 다문화 사회의 대민 행정 1차시</p>	<p>차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입 2 이주민 현황 3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4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현황 5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p>도입</p>  <p>“나를 축구를 함께하는 동료가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p>	<p>도입</p>  <p>“유럽에서 될 때 팀 동료가 마늘냄새가 난다며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다”</p>
<p>도입</p> <p>위장결혼의 피해자? 불법체류자?</p> <p>2007년 10월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한 중국인 왕메이화(38.여, 가명) 입국하자마자 남편 김씨는 “항게 살 수 없다”며 왕씨를 다짜고짜 인국 마사지 업소로 보낸 왕씨는 바로 “위장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것-!</p> 	<p>도입</p> <p>위장결혼의 피해자? 불법체류자?</p> <p>피해자인 왕씨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검찰에서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것!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왕씨가 위장결혼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체류인장신증을 받아주지 않음</p> <p>결국 왕씨는 방매안 증명에 나가 일하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2008년 11월 중국인교회는 왕씨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p> <p>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의 위소를 결정함 (2010년 10월 22일 연합뉴스)</p>
<p>이주민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 수도권에 65.1% 거주 2만명 이상 이주민 다수 거주 지역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경기 안산, 수원, 화성, 성남 <2009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p>이주민 현황</p> <p>이주 노동자 현황</p>  <p>이주 노동자 : 575,657명</p>



이주민 현황

이주 노동자 현황

입국 전 맺는 근로 계약이 입국 후 바뀐 경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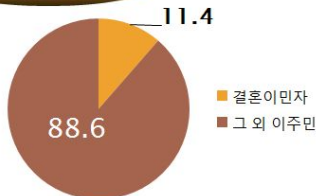
바뀐 내용 <2009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조사>

근로 계약이 바뀐다면?

역할극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해 봅시다.

이주민 현황

결혼이민자의 현황



결혼이민자 : 125,673명

이주민 현황

결혼이민자의 현황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 25.1%

가족과 친척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 23.3%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건복지부)>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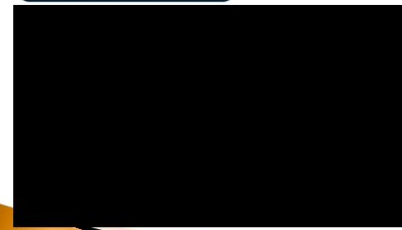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기준

세계 인권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세계 인권 선언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세계 인권 선언

제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에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 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이주민 취업에
관련 국제 기준

ILO 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14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ILO 협약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 대우에 관한 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비준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협약

15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협약 전문 中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불법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온당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야 함을 확신하고...”

16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이주민의 결혼,
가족구성 관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17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1 (다)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8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제11조 1.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19

이주민 관련 국내법 현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20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21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이주민도 노동3권이 있을까?
사실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만을 외국인노동자에 포함시킴

- 1심 :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가 아님
- 2심 :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3심 : ? 진행 중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이수제프로그램〉
한국어(400시간)와 한국문화의 이해(30시간)
의무적으로 이수
(동화정책?)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 가능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주민으로만 구성되면 다문화가족 아님)

이주민가족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부정됨

국제결혼한 이주민은 1년후 체류연장 허가
2년을 살고 나서 국적신청 통해 귀화허가

이주민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차이를 차별할 순 없어요



영민 문화재단 영민아트



② PPT 23쪽 관련 사례 살펴보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

<사례>

이주노동자 91명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후, 2005.4.24. 노동부장관에게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노동청장(피고)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는 보완요구 중 조합원 명부의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나머지 사항을 모두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 제출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으며,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였으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6.2.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1심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노동부가 상고하여 이 사건은 2009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생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정정훈(2009)>

③ 동영상 자료

- 세계 인권 선언의 역사적 배경 (55초, 세계 인권 선언의 역사, 인권운동사랑방)
- 이주민 이직제한에 관한 뉴스 동영상 (39초, YTN)



3

2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0분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단속 과정과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단속 과정과 관련된 뉴스 동영상을 보고 행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본다. 	강의식	동영상
전개	5분	이주자 입국, 출국, 단속, 보호 관련 업무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살펴본다.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항과,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생각해본다. 	강의식	PPT
	25분	행정 과정에서의 문화적 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자 폭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뉴스 동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미등록 이주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주민의 사례를 뉴스 동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장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행정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다. 역할극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체험해보고 서로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한다. 또, 극중에 등장하는 단속반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고 서로 의 	동영상 감상 강의식 역할극 문답식	PPT 동영상 학습자 활동자료 ①, ②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목사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이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본다. 단속에 나온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도망가는 이주노동자에게 전기충을 발사한 일도 있었으며, 쫓기다 큰 냇가에 뛰어 들었는데 지키고 서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숨어 있었던 사례도 발생하였음을 설명한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산업을 함께 일군 산업 역군임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을 통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극 중, 단속 반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고 각자 소감을 말해보도록 한다. ·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다. 앞서 역할극에서 등장했던 단속반원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 결혼 이주민 여성의 경우, 자녀의 여권 발급에도 제한을 가하는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뉴스 동영상을 통해 살펴본다. · 결혼 이주민의 국적 취득 어려움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살펴본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민은 2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한다. 최종 귀화까지 걸리는 약 4년 동안 '외국인' 체류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추방될 수도 있으 	<p>건을 말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므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임을 설명한다.</p>			
	30분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문항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살펴본다. ·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한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적용 가능한 인권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최대 5개의 항목을 구성하며, 선정한 이유도 기재하도록 한다. 다 작성한 후에 발표를 해보게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문항에 대해 스스로 답해 보고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한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자신의 위치에서 적용 가능한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을 만들어 본다. 최대 5개의 항목을 구성하며, 선정한 이유도 작성한다. 활동지에 기록한 후에 발표해 보고 다른 학습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한다. 	<p>활동 강의식 활동</p>	<p>PPT 학습자 활동자료 ③, ④</p>
정리	10분	<p>주요 학습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 정리 <p>본 수업에서는 출입국, 단속, 보호 등의 과정과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았으며,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강의식	

나. 학습자 활동자료

2차시 학습자 활동자료① 장장원 목사 인터뷰 - PPT 8 쪽 관련



평소에 오산역 주변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 여성들로 붐빈다. 지금은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산역 등지를 순찰하는 경관 몇 명이 전부였다. 이주노동자 센터는 더욱 한가했다. 요즘은 자주 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들, 결혼 이주여성들 그리고 끼니 때 마다 식사를 하러 오는 노숙인들을 제외하곤

방문객들이 별로 없었다.

"(지난 16일) 오산역과 평택역에서 버스 한 대를 꼭 채울 만큼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갔습니다. 한 25~30명 정도 될 겁니다. 정부 얘기로는 6월부터 8월까지 합동 단속 기간이에요. 정부가 말하기를 "G20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테러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동남아, 이슬람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8월까지인데 아직까지도 단속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산역 등지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이니 이주노동자들은 소문나서 역전에 가지도 못하죠. 공장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야간 잔업 하면서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도 공장에서 자고, 가끔 쉬는 날 시장에라도 나오면 시장에서 단속해서 잡아가지도 합니다. 지난 번 단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사례가 있었어요. **단속에 나온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도망가는 이주노동자에게 전기총을 발사한 일도 있었어요.**

다른 사례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쫓기다 큰 냇가에 뛰어 들었는데 지키고 서있으니까 나가지도 못 하고,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밤늦게 우리 센터에 연락해서 우리가 가서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산업을 함께 일군 산업 역군입니다. (중략)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0.10.18 오마이뉴스>



2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② 역할극 대본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역할극)

각자 역할을 맡아 다음의 상황을 재연해 봅시다.

상황 -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하 노동자로 표시함)를 단속하고 있다.

역할 - 단속반원, 노동자

단속반원 : 야, 이리와봐!

노동자 : 아...아.....누구...세요?

단속반원 : 내가 누군지 몰라?

노동자 : 신분증 없어요?

단속반원 :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

노동자 : 긴급보호서... 있어요?

단속반원 : 그런거 없어! 어서 차에 타!

노동자 : 네.. (차에 탄다)

(단속반원이 수갑을 채운다)

노동자 : 어, 이거 해야 해요?

단속반원 : 당연하지, 넌 범죄자야. 이런 거 원래 해야 해.

노동자 :

1. 위의 상황에서 단속 반원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2. 역할극을 해 본 소감을 말해봅시다.



나도 몰랐던 나의 편견?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봅시다.

질문	매우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역차별을 만들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자녀가 다른 인종의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5 소수 인종 출신도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혹은 소수 인종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자녀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녀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의 큰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소수 집단과 이민자 아동들이 전통적인 한국 가치를 배우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만일 내가 아이를 입양한다면 입양 아동의 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과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주민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주민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2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④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 만들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적용가능한 서비스 강령을 만들어 봅시다.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

소속 :

1)

이유 :

2)

이유 :

3)

이유 :

4)



이유 :

5)

이유 :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자료

 <p>7. 다문화 사회의 대민 행정 2차시</p>	<h3>차례</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입 ② 출입국, 단속, 보호 ③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④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
<h3>도입</h3> <p>불법체류 외국인 과잉 단속 논란!!</p>  <p>11(일) 7:18 MBC '과잉 단속' 심하다</p>	<h3>출입국, 단속, 보호</h3> <p>출입국사법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p> <p>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저열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6.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h3>출입국, 단속, 보호</h3> <p>출입국사법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p> <p>제11조(옹의자 긴급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 계구 및 보안장구들 사용할 수 있다. 3. ...긴급보호서를 옹의자에게 내보이고... 	<h3>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h3> <p>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p>  <p>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별반 해문지 폭행</p>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불법체류자로 추정, 구금가능?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오산이주노동자센터대표 잠정원 목사



단속에 나온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도망가는 이주노동자에게 전기충을 발사한 일도 있었어요.
꽃기다 큰 냇가에 뛰어들었는데 지치고 서있으니가 나가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숨어 있기도...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산업을 함께 일군 산업 역군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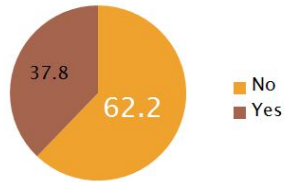
<2010.10.18 오마이뉴스>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역할극 해보기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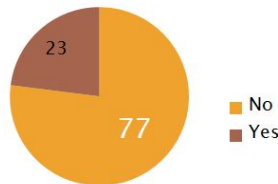
단속반원이 단속 전 신분증을 보여줬나요?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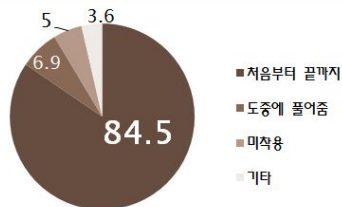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제시했나요?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단속 차량에서 수갑을 착용했나요?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내 자녀의 여권인데?...



행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결혼 이주민 국적 취득의 어려움

국적법 제 6조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귀화신청자격 요건)

최종 귀화 까지 걸리는 약 4년 동안 '외국인'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의 신분, 강제 추방될 위험..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p> <p>나도 몰랐던 나의 편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역차별을 만들어 낸다. 2.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직장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4. 내 자녀가 다른 인종의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괜찮다. 5. 소수 인종 출신도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혹은 소수 인종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다. 7. 내 자녀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녀도 좋다. 8.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의 큰 문제다. 9.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소수 집단과 이민자 아동들이 전통적인 학국 가치를 배우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여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만약 내가 이민을 입양한다면 입양 아동의 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장려해야 한다. 12.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과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다. 13. 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14. 이주민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15. 이주민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p> <p>이런 과정에서 생각해보기</p> <p>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 강령 만들기</p> <p>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p> 
 <p>Thank You!</p>	

② 동영상 자료

- 미등록 이주자 과잉단속 관련 뉴스 동영상 (1분 51초, MBC)
- 출입국사무소 미등록 이주자 폭행 관련 뉴스 동영상 (1분 45초, CBS)
- 미등록 이주자 추정 구금 관련 뉴스 동영상 (31초, YTN)
-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여권 발급 관련 뉴스 동영상 (1분 41초, SBS)



③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참고 조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계구 및 보안장구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 ①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합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임을 고지하고, 여권 등 미소지 사실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 ②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 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구 및 보안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내용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 100만 명의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주민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주민 중에서 이주 노동자는 8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전체 이주민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 기준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LO 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등이 있다. 이주민 관련 국내법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이주민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한다거나,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 3권의 제한 논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수가 동화정책이라는 논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 가능, 이주민 가족의 존재 불가능, 국제결혼 후 2년 후에 귀화신청 가능 문제, 결혼중개 시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것을 언급하지 않는 문제 등 국내법에서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주민들의 출입국, 단속, 보호의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의 폭행문제, 구금문제, 신분증 미제시, 긴급보호서 미제시, 수갑 사용, 결혼 이주 여성이 자신의 자녀 여권 발급을 혼자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기(human rights oriented thinking)이다. 인권 침해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인권 의식,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에서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 인권 선언, ILO 협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기(human
rights oriented thinking)

다. 탐구 문제

- 우리나라가 아직 채택하지 않은 이주자 인권 관련 국제 기준 중 가장 먼저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주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인권 친화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VIII. 다문화사회의 복지

차 례

1. 강의소개
2. 1차시 강의안
3. 2차시 강의안
4. 단원정리



1

강의 소개

가. 학습목표

- 생소한 환경에서 이주민들과 그들의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법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전략을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으로 다른 이주민들의 특별한 사회복지 욕구를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나. 활동개요

- 대상 : 사회사업계 공무원 및 종사자
- 장소 : 세미나실 및 강의실
- 소요시간 : 총 180분(1차시 90분, 2차시 90분)
- 준비물 : 컴퓨터, 빔프로젝터, 학습자 활동자료, 교수자 지도자료, 필기구
- 진행인원 : 교수자 1명

다. 학습개요: 주요내용과 개념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쟁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태도를 점검한다.
- 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특성 변화 추이와 이주민 관련 법·제도,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 이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복지 실천의 전제가 되는 이주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이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개입방법 등 전문적 실천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인권의식 및 문화적 다원주의 등 전문가로서의 태도 및 소명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다.

마. 지도시 유의사항

- 이주민들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점검하며,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사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주류문화에 기초해서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이주민들의 동기와 의도, 행동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사정이나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바. 강의활동 개요

차시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1차시 (90분)	도입	인사 나누기 동기 유발 및 활동 목표 제시 · ‘자전거여행’ 애니메이션 시청	15분
	전개	활동 1 : 새로운 나라 계획하기 ·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 작성하기	10분
		탐구 1 : 이주민의 사회권과 관련 쟁점 이해 · 결혼이주여성 A씨의 사례 · 헌법상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해석 ·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 원칙 ·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관련 제도 적용 여부	15분
		탐구 2 : 이주민의 사회권 침해 실태 · 이주민의 사회권 침해 실태 · 다문화가족의 사회권 보장 실태 · 이주민들의 사회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분
		활동 2 :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 다문화가족 복지의 개념 ·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토론	35분
			70분



		‘밀거나 맡겨나, 찬드라의 경우’ 영화 시청		
	정리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5분	
2차시 (90분)	도입	활동 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5분	
	전개	활동 1 : 몸으로 표현하는 이주민들의 복지만족도	10분	80분
		탐구 1 : 이주민 관련 정책 및 복지서비스 현황 · 이주민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	25분	
		탐구 2 : 이주민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 이해 · 이주노동자 복지서비스 욕구 ·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욕구 ·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욕구	15분	
		활동 2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시대 지역사회의 역할 · 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 이해 · 이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소감 나누기	5분	

2

1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나누기 · 동기 유발 -국가인원위원회가 제작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 제시 -이번 시간에는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는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 · 활동목표 및 활동 과정을 숙지한다. 	문답식 강의식	동영상 ① (인권위 제작 애니메이션 “자전거여행”)
전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나라 계획하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그 곳에 산 적이 없어 법도, 역사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 작성 활동을 통해 사회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활동식 토의식	PPT 학습자 활동자료 ①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사회권 관련 쟁점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을 만들어 봄으로써 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 A씨의 사례를 통해서 이주민들 역시 사회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은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빈곤 등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의 사회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권의 의미와 헌법상 이주민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입장을 파악한다. 	강의식	PPT 교수자 지도자료 ②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이며, 가정복지, 주거, 교육, 고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p> <p>-그렇다면 헌법상 이주민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주요 입장은 어떨까요?</p> <p>-헌법재판소는 최근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권을 '인간 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에 비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보험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없으며, 특히 연금보험에서 국적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조화될 수 없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p> <p>·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p> <p>-등록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현행 사회보장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이주민들에게 사회보험에 비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권을 차별할 수 없다는 학계의 입장을 이해한다.</p>	강의식	PPT 교수자 지도자료 ②
		<p>· 이주민의 사회권 침해 실태 사례</p> <p>-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을 얼마나 보듬어 안고 있을까요? 32살의 이란에서 온 미등록</p>	<p>·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를 숙지한다.</p> <p>· 사례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p> <p>-자료를 통해 이주민들의 사회권이 제</p>	자료탐구 및 토의식	PPT 교수자 지도자료 ③
10분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노동자와 29살의 가나에서 온 미등록노동자의 인터뷰 내용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다함께 읽어봅시다.</p> <p>-세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p> <p>· 다문화가족의 사회권 보장 실태</p> <p>-그렇다면 이 사례들이 비단 몇 명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사례일까요?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시다.</p> <p>-다문화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신청하고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져 44%가 신청하여 90%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p> <p>· 이주민들의 사회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p> <p>-그러나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 결정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p>	<p>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토의한다.</p> <p>· 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 관련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토의한다.</p> <p>-이러한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 실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p> <p>·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해 인식한다.</p>	탐구식	학습자 활동자료 ②
	35분	<p>· 다문화가족복지에 대한 개념</p> <p>-다문화가족복지는 이주민과 그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사회적 대책을 말합니다.</p> <p>·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p>	<p>· 다문화가족복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p>	강의식	교수자 지도자료 ④
				강의식	PPT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실천의 개념과 그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이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실천 현장에서 이주민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은 문화에 대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인식, 문화적으로 다양한 실천을 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조과정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다음 10가지 기준 중 몇 가지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영화인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를 감상하면서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10가지 기준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반성한다. · 영화를 통해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한다. 	토의식 영화감상	교수자 지도자료 ④ PPT 동영상 ② ("믿거나 말거나 찬 드라의 경 우")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정리 및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준비한다. 	강의식	

나. 학습자 활동자료

① 새로운 나라 계획하기 활동자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그 곳에 산적이 없어 법도, 역사도 없다. 이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 만들기

Blank lines for writing the rights list, each starting with a yellow arrow icon.



② 이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사회권 실태 파악을 위한 읽기 자료

<표 1>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의 신청 여부
(단위 : %, 명)

구분	신청여부		
	신청	미신청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25.1	74.9	100(818)
의료보호	44.2	55.8	100(805)

<표 2> 다문화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혜택 여부
(단위 : %, 명)

구분	신청자 중 혜택여부		
	혜택받음	혜택받지못함	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70.2	29.8	100(744)
의료보호	89.5	10.35	100(229)

-출처 :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75-476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자료

 <h2 style="text-align: center;">8. 다문화 사회의 복지</h2> <p style="text-align: center;">1차시</p>	 <h3 style="text-align: center;">“자전거여행” 애니메이션</h3>
<h3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나라 계획하기</h3>  <p>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그 곳에 산 적이 없어 법도, 역사도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새로운 나라 국민의 권리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p>	<h3 style="text-align: center;">결혼이주여성 A씨는...</h3> <p>한국인 남편과 사별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A씨.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직 국적 취득 전이고 자녀가 없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평등권 침해,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p>
<h3 style="text-align: center;">이주민의 사회권과 관련 쟁점</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권 2 헌법상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해석 3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 원칙 	<h3 style="text-align: center;">1. 사회권</h3> <p>“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이며, 가정복지, 주거, 교육, 고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p>
<h3 style="text-align: center;">2. 헌법상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해석</h3> <p>헌법재판소의 입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 사건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한다.”</p>	<h3 style="text-align: center;">2. 헌법상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해석</h3> <p>그러나 인권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기본적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한다면 자유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p> <p>→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는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이주노동자의 사회권’도 구체적으로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p>

3.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 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에 비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보험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없음.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관련 제도 적용 여부

구분	등특이주노동자	미등특이주노동자
국민연금	상호주의	X
국민건강보험	○	X
고용보험	임의가입의 경우에 한함	X
산업재해보상보험	○	△
국민기초생활보장	X (다만 제한적인 적용 있음)	X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	△	△

우리는 얼마나 이주인들을 보듬어 안고 있을까요?



삶의 마지노선에 선 그들 ①

“작은 사고가 많았는데 혼자 알아서 처리했어요. 한번은 손에 이물질이 들어가 혼자 에어로 빼내려고 상처부위에 에어(공기 압축기로 바람을 내는 것)를 갖다 댔는데 에어가 상처 사이로 들어가 손등과 팔까지 심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나중에 내 돈으로 병원에 다녔고 일주일간 월급 안 받고 쉬었어요.”
 -이란, 남성32세, 미등록 노동자

삶의 마지노선에 선 그들 ②

“예전에 손이 잘린 친구는 공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병원비도 잘 대주지 않아 치료도 제대로 못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상공장에서 일할 때 두통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또 무거운 것을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와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치료는 교회에 한 달에 한번씩 오는 의료 선교팀을 통해 받습니다.”
 -가나, 남성29세, 미등록노동자

어느 베트남여성이 수술을 받기까지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8년 전 지체장애 3급인 한국 남성과 결혼해 다섯 살 된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얼마 전엔 난소에 혹이 발견돼 빨리 수술하지 않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혹이 터지면 그만이지 무슨 수술을 하느냐?’고 했단다.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수술 서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으박질렀다고 했다. 물론 병원 측은 가족의 서명 없이 수술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있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신청요지] 한국 국적의 장애인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장애인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이 아예 불허되고 있다.

[판단]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한정되거나 또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결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실천

1. 문화에 대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인식
2. 문화적으로 다양한 실천을 위한 지식습득
3. 원조과정과 관련된 기술 개발
4. 귀납적 학습

나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

2001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10가지 기준

- 기준 1.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전문적 가치들이 다양한 이주민들의 욕구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치하는지 등을 인식하면서 전문직의 가치, 윤리, 기준들과 일치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기준 2. 자기인식 : 사회복지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문화 정체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첫 단계로서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

- 기준 3. 다문화자식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클라이언트들의 역사, 전통, 가치, 가족체계와 예술적 표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기준 4. 다문화기술 :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적 접근, 기술과 기법들을 활용해야 한다.

- 기준 5. 서비스 전달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하게 의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준 6. 능력고취와 옹호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며, 적절하다면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들과 함께 옹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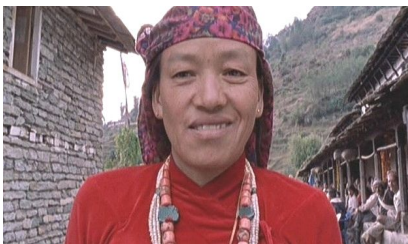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

- 기준 7. 다양한 노동인구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기관들에서 전문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정,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옹호해야 한다.
- 기준 8. 전문교육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에서 문화적 능력 향상을 원조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참여해야 한다.

- 기준 7. 다양한 노동인구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기관들에서 전문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정,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옹호해야 한다.
- 기준 8. 전문교육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에서 문화적 능력 향상을 원조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참여해야 한다.



영화-“밀거나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끝. 감사합니다.



② 이주민의 사회권과 관련 쟁점

1. 사회권이란?

사회권이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이 속한 사회의 자원을 배분받을 권리, 자신이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참여하고 헌신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권은 적절한 영양, 보건,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이며, 가정복지, 주거, 교육, 고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헌법상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제 6조 제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므로, 이주노동자나 귀화하기 전의 결혼이주여성은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사건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권을 '인간존엄유지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인권을 윤리철학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기본적 필요 또는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발전을 위한 기본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한다면 자유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는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장애인의 사회권', '여성과 아동의 사회권', '환경권' 등 구체적으로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한편 UN 및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국제법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관련된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민족에 따른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 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에 비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보험법의 체계와 조화될 수 없으며, 특히 연금보험에서 국적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조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의 경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pp. 171-173

③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국내법 규정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여 현행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국민연금	상호주의	X
국민건강보험	○	X
고용보험	입의가입의 경우에 한함	X
산업재해보상보험	○	△*
국민기초생활보장	X (다만 제한적인 적용 있음)	X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 6조에서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고, 제 5조 제 2호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도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우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게 되는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pp. 77-83



④ 다문화가족복지와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1. 다문화가족복지

다문화가족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실천은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McCrea(2006)는 다른 문화에서 온 누군가를 돕고자하는 전문가라면 그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정체성 경험,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Lum(2004)은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원조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사회복지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최현미(2008)는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이란 한 단위로서 가족의 전체성과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가족과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사회적 대책이다”라고 정의하였다.

2.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문화적 능력은 상이한 문화적 ·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언어, 문화,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능력은 무능과 유능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문화적 능력의 향상은 클라이언트와 관계에서 타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주의성, 융통성, 적응성과 같은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한 지식을 갖추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은 다음의 4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첫째, 문화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전문가적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특정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습득이다. 셋째, 원조과정(접촉, 문제규명, 사정, 개입, 종결)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다. 넷째,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 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한 발견적 정보의 연속체를 형성해 나가는 귀납적 학습이다.

- 출처 : 최현미 외(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pp. 31-33, 152

⑤ 동영상 자료

- 애니메이션-“자전거여행” (10분, 국가인권위원회)
- 영화-“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28분, 국가인권위원회)

3

2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 태	수업자 료
		교수자	학습자		
도 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 제시 -이번 시간에는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목표 및 활동과정을 숙지한다. 	강의식	
전 개	1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표현하는 이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지난 시간에 이주민의 사회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사회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 바닥에는 이주민의 사회권이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로부터 잘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로축으로 하고, 사회사업계 종사자인 우리가 이주민의 사회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를 세로축으로 하여 만들어진 네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개의 공간 중 우리 사회의 이주민이 속해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가서 서 보세요. -각 위치에 해당되는 한 사람을 골라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현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 -현재 이주민들의 사회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고,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자신이 이들의 사회권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당되는 위치에 선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표한다. 	강의식	교수자 지도자 료 ①
전	25	· 이주민 관련 복지정책 및	· 이주민 관련법과 제	자료탐구	PPT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 태	수업자 료
		교수자	학습자		
개	분	<p>서비스 현황</p> <p>-앞의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크게 6가지 분야별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p>-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해당 정부 부처별-법무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로 주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보호담당관제, 정착도우미제도, 정착금, 주택, 취업, 교육, 사회보장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p> <p>·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p> <p>-이처럼 이주민을 대상으로 각 정부부처별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는 한계 및 문제점이 존재합니다.</p> <p>-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이</p>	<p>도 및 이들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복지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p> <p>·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주민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표한다.</p>	<p>및 강의식</p> <p>자료탐구 및 토의식</p>	<p>교수자 지도자료③</p> <p>학습자 활동자료 ①</p>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 태	수업자 료
		교수자	학습자		
		<p>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주민 관련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p>			
	15 분	<p>· 이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 이해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이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로는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산재 및 의료보호,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교육, 임신, 출산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 자녀양육과 교육, 다양한 결혼 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및 지원, 경제적 보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 및 자활 욕구, 이를 강화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의 개선, 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 제공, 정착 전 실질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p>	<p>· 이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이해한다.</p>	강의식	PPT 교수자 지도자 료④
	30	<p>· 다문화시대 지역사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프로그램 개발의 원리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은 이주</p>	<p>· 다문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p> <p>·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를 숙지한다.</p>	강의식 강의식	PPT PPT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 태	수업자 료
		교수자	학습자		
	분	<p>민들의 복지 욕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현실적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p> <p>· 이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p> <p>-앞서 학습한 이주민들의 사회 복지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자료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한국어교육, 의료비 지원 순으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p> <p>-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용노무, 근로제조업에 종사하고 자산 규모 역시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 자료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복지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p>	프로젝트 활동	PPT 학습자 활동자 료④ 교수자 지도자 료⑤
정리	5분	<p>· 활동 내용 정리 · 소감 발표 진행</p>	<p>· 활동 결과 자신의 소감을 발표한다.</p>	문답식	

나. 학습자 활동자료

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교수자 멘트 :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다음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남성과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도

단위 : 명(%)

이용했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	20(6.6)	268(88.2)	16(5.3)	정신건강 상담	8(2.6)	280(92.1)	16(5.3)	
긴급복지 지원제도	5(1.6)	283(93.1)	16(5.3)	가정폭력 상담	6(2.0)	282(92.8)	16(5.3)	
건강보험	113(37.2)	175(57.6)	16(5.3)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12(3.9)	275(90.5)	17(5.6)	
의료급여	75(24.7)	212(69.7)	17(5.6)	한국어교육	162(53.3)	125(41.1)	17(5.6)	
고용보험	7(2.3)	281(92.4)	16(5.3)	한국문화교육(언어/풍습/음식 등)	76(25.0)	212(69.7)	16(5.3)	
산재보험	7(2.3)	280(92.1)	17(5.6)	국적취득관련 정보 제공 및 원조	27(8.9)	260(85.5)	17(5.6)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제공	9(3.0)	279(91.8)	16(5.3)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법률, 의료, 취업 등)	17(5.6)	271(89.1)	16(5.3)	
보육서비스	14(4.6)	274(90.1)	16(5.3)	기타	9(3.0)	279(91.8)	16(5.3)	
직업훈련 및 알선	12(3.9)	276(90.8)	16(5.3)	어떤 서비스도 이용한 적 없음	34(11.2)	254(83.6)	16(5.3)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단위 : 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기관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85 (28.0)	123 (40.5)	96 (31.6)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25 (8.2)	184 (60.5)	95 (31.3)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62 (20.4)	147 (48.4)	95 (31.3)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11 (3.6)	198 (65.1)	95 (31.3)	
나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	43 (14.1)	166 (54.6)	95 (31.3)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0 (3.3)	198 (65.1)	96 (31.6)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26 (8.6)	182 (59.9)	96 (31.6)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	6 (2.0)	201 (66.1)	97 (31.9)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85 (28.0)	128 (42.1)	91 (29.9)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18 (5.9)	195 (64.1)	91 (29.9)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계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79 (26.0)	134 (44.1)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서	16 (5.3)	196 (64.5)	92 (30.3)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72 (23.7)	141 (46.4)	91 (29.9)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 (4.3)	200 (65.8)	91 (29.9)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52 (17.1)	161 (53.0)	91 (29.9)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 (0.3)	212 (69.7)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20 (6.6)	192 (63.2)	92 (30.3)	기타	14 (4.6)	199 (65.5)	91 (29.9)

-출처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제2호, pp. 229-251

②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교수자 멘트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표 1> 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4.14	.9833	13	부모역할교육	3.56	1.2492
2	한국어교육	4.12	1.1004	15	여가활동참여기회제공(영화,음악회 등)	3.55	1.0912
3	건강보험혜택 및 의료비 지원	3.95	.9971	16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프로그램	3.54	1.1368
4	자녀교육지원(학습지도서비스)	3.89	1.1905	17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	1.1204
5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	3.86	1.0411	18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	1.1568
6	자녀양육지원(보육서비스)	3.81	1.2303	19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스	3.32	1.3352
7	직업훈련 및 알선	3.74	1.1572	20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31	1.2469
8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은행/시장/도서관 등)	3.67	1.1219	21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3.30	1.2750
9	법률관련 정보서비스	3.65	1.1570	21	경제적 지원(생계비 등)	3.30	1.3093
10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3.63	1.0762	23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	3.23	1.1252
11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0	1.0879	24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	3.18	1.0989
12	국적취득지원서비스	3.58	1.3078	25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서비스	2.77	1.3975
13	주택지원(영구임대주택 등)	3.56	1.3011	-	전 체	3.58	0.7409

<표 2> 00시의 관할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분포

계	전문기술직	행정사무직	자영상업	근로제조업	농수산업	일용노무	무직	기타
216명	•	•	13	30	•	136	9	28
100%	•	•	6	13	•	64	4	13

<표 3> 00시의 관할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산규모

(단위 : 만원)

계	200미만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2000	2000-4000	4000이상
216명	194	1	1	2	4	3	11	•
100%	90	0.4	0.4	0.9	1.9	1.4	5	•



【00시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① 프로그램 대상	
② 프로그램 대상 문제와 원인	
③ 유사 프로그램	
④ 프로그램 목적	
⑤ 프로그램	
⑥ 프로그램 예산	
⑦ 프로그램 효과 평가 방법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h2 style="text-align: center;">8. 다문화 사회의 복지</h2> <p style="text-align: center;">2차시</p>	<h2 style="text-align: center;">‘몸’으로 표현하는 이주민들의 복지 만족도</h2>
<p>이주민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2 이주노동자 대상 3 북한이탈주민 대상 	<h3 style="text-align: center;">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h3 style="text-align: center;">2. 이주노동자 대상</h3>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고용정책 인정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추진 • 산업안전 교육교체 개발, 보급, 교육지원 • 취업지원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문화적갈 등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문화기어등록보급 •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선호비 무단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범위 에서 임원 및 수술비 지원 </div> </div>	<h3 style="text-align: center;">3. 북한이탈주민 대상</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담당관제 • 정착도우미 제도 • 정착금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 • 주택, 취업, 교육, 사회보장 지원
<p>이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주노동자의 복지 서비스 욕구 2 여성결혼이민자의 복지 서비스 욕구 3 북한이탈주민 복지 서비스 욕구 	<h3 style="text-align: center;">1. 이주노동자 복지서비스 욕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 산재 및 의료보호 ✓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 ✓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2. 여성결혼이민자 복지서비스 욕구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 ✓임신, 출산과 의료서비스
- ✓자녀양육과 교육
- ✓다양한 결혼 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및 지원
- ✓경제적 보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욕구

- ✓취업 및 자활 욕구
- ✓자활을 강화하도록 지원 정책의 개선
- ✓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 제공
- ✓정착 전 실질적 교육 지원

다문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주민 친화적
인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민의식 상
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치단체 지원
행정체계 수립

자치단체에 다문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 담당
자를 배정

다문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주민 친화적
인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민의식 상
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치단체 지원
행정체계 수립

자치단체에 다문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 담당
자를 배정



다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주민들의
복지 욕구
의 특수성
이해



지역사회의
현실적 여
건 및 특수
성

지역사회
중심의 복
지 프로그
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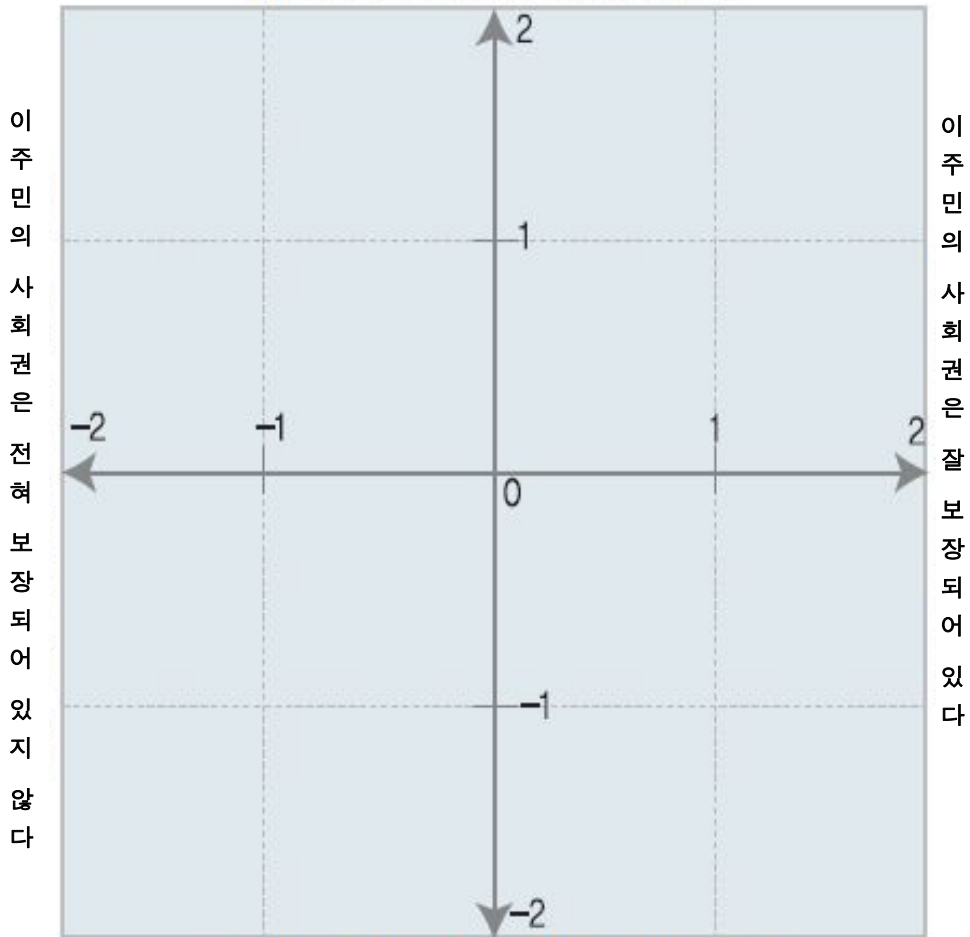


끝. 감사합니다.

② 몸으로 표현하는 이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진행요령 : 교실 앞부분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학습자들을 주위에 서게 한다. 다음 그림을 교실 바닥에 그린다. 이주민들이 사회권을 얼마나 향유하는지,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자신이 이주민들의 사회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위치에 서게 한다. 각 위치에 해당되는 한 사람을 골라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

나는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이주민의 사회권을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는 사회사업계 종사자로서 이주민의 사회권을 배려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5). 『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사람이 곧 하늘이다』



③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결혼이주여성 대상 복지정책 및 서비스

조치사항	주관부처
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법무부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④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법무부
⑤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
⑥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여성가족부
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
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5.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조치사항	주관부처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성가족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성가족부 법무부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 이주노동자 대상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해당부처	주요정책	세부내용
법무부	출입국 관리	미등록 이주자 단속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산업재해 등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교육(외국인 근로자 교육팀 구성 운영)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추진 ◦ 안전수칙 홍보책자 보급(영어 등 외국어) ◦ 산업안전 교육교재 개발·보급, 교육지원(산업안전공단) ◦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관련 법령,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산업안전보건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외국어 안내책자 제작보급)
문화관광부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 갈등 해소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문화가이드북 보급 ◦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무료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로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 및 수술비 지원(도립의료원 및 도 인증 무료진료사업시행 의료기관)



3. 북한이탈주민 대상 복지정책 및 서비스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에서 5년 동안 보호하는데, 신변보호담당관(경찰청), 취업보호담당관(지방노동사무소), 거주지보호담당관(각 지방자치단체)이 있다.
- 정착도우미제도 : 탈북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착·적응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관련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담당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정착도우미가 1세대 당 2명이 배정되어 1년간 전담하여 보호담당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서비스이다.

◦ 정착금

정착기본금	가족 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데, 1인일 경우 초기 지원금 300만원, 2년간 분할지원금 700만원과 주거지원금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 수가 7인 이상 대형가족일 경우에는 총 4,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착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 있는데 최고 1,54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을 통한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정착가산금	60세 이상 노인, 한부모 아동, 장애인,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 주택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립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해주고 있다.
- 취업지원 : 전국 46개소의 고용안정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가 개설되어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 교육지원 :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이는 북한 또는 제3구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할 경우 35세 미만인 경우 국립대학은 전액 면제,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1/2씩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회보장지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 정해진 대상자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전입 이후 5년 범위 내에서 조건부 수급권자 대상이 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에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진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최현미 외(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p. 98

④ 이주민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

1. 이주노동자 복지서비스 욕구

①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주거 환경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더라도 고용안정과 지속성, 공동체 형성으로 인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그만큼 고용안정과 지속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경기개발원, 2006).

② 산재 및 의료보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재 산업재해보상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상당히 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적용배제사업장(330㎡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농업이나 어업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산재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적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박해성, 2008).

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문제, 진료비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③ 자녀양육 및 교육권 보장

2003년 5월 이후 의무교육이 제공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경우에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 근로자 자녀들의 지역적 분포로 인한 학급 구성의 어려움,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수용기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국내 학부모의 거부감 등으로 학교 수용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거주밀집지역 외의 특별학급 등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나, 일대일 학습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경로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학교 설립보다는 외국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④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확보

일반적 시설 이용 등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접근에 대한 편리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 행정기관에 '다문화 지원 전담요원제'를 운영하여 의사소통, 불편 부당 문제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 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욕구

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꼽는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족 및 부부관계에서 빛어지는 어려



움과 고충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2. 임신, 출산과 의료 서비스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임신과정의 문제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거나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산후조리 등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주여성이 원할 경우에 병원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임신과 출산의 불안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양육과 교육

어린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의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은 낯설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한국어에 능숙하기 전까지는 자녀들의 복잡한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다.

4. 다양한 결혼형태에 따른 가족상담 및 지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형태는 초혼 외에도 이별과 사별한 경우에 재혼의 수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의 가정은 가족구조, 역할변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양육 문제 등이 초혼의 가족보다 복잡하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이전 배우자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나 역으로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가족 상담과 지원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경제적 보호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5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가족 형성 이후에는 지속적 생활고, 자녀양육의 어려움, 노년기 준비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기대하고 국제결혼을 결심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박지영, 2008).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다.

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같은 국적 출신의 이주여성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조인자이자 정보제공자이다. 국제결혼가족을 일구면서 거쳐 온 과정의 일련의 경험들은 결혼 초기의 국제결혼가족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가족과 이주여성에게 실질적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한국생활의 경험과 국제결혼과 관련한 상담을 모국의 동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신승연, 2007).

3.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욕구

1. 취업 및 자활 욕구

정부는 전국 50개소 고용안정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장구를 개설하여 취업 보호담당관이 전문적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별도로 2005년도 입국자부터 취업장려금을 신설하여 장기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이 높고, 단순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 업종 등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취업지원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 시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에 직업훈련원을 지정하기보다, 거주 지역 내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한 직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직장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가 없었는지 등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② **지활을 강화하도록 지원 정책의 개선**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의 정착금과 정착장려금 등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나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에만 정해진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③ **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관·민간 차원의 지원역할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특정 후원이나 종교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가 다양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원활동이 요구되지만 개인 신상이나 심리적 문제, 가족문제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적극적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관, 청소년상담소,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정착지원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정착 전 실질적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입국한 뒤 하나원에서 12주, 4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정서안정·건강증진, 우리 사회 이해 및 문화충격 해소, 진로지도·기초직업훈련, 초기 정착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원의 교육의 내용이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초기 적응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정신보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과 정보에 관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최현미 외(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pp.68-85.

⑤ **복지프로그램 계획서 예시자료**(학습자들이 복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막연해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다음 예시자료를 배부한다.)

【00시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① 프로그램 대상	00시 결혼이주여성가정								
② 프로그램 대상 문제와 원인	1)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 보호교육에 소홀 2) 경제적 문제 : 소득 부족이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기본적인 요인 3) 사회심리적인 문제 : 사회에서의 역할 혼동, 지역사회 기여 미흡 -사회적인 문제 : 가족성원간의 갈등, 정신적인 안정 상실-신경증적 반응, 정서적 불안 -심리적인 문제 : 가족성원간의 갈등, 정신적인 안정 상실-신경증적 반응, 정서적 불안								
③ 유사 프로그램	연 2회의 가족캠프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는 시행치 않고 있다.								
④ 프로그램 목적	◦ 목적 : 결혼이주여성가정의 자립지원을 통한 가족기능강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하위목표 1. 자녀보호교육과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 -하위목표 2. 취업, 부업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킨다.								
⑤ 프로그램	<table border="1"> <tr> <th>목표</th> <th>하위목표</th> <th>프로그램 내용</th> <th>수행방법</th> <th>수행인력</th> </tr> </table>	목표	하위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수행인력			
목표	하위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수행인력					
1. 자녀보호교육과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	1) 자녀보호교육과 학습의욕과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	학습지도교실 운영	-방과후 학습지도 독서, 숙제지도, -월-토 격일제	각 학년별 자원봉사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2) 집단상담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갈등 요인을 해소한다.	집단상담	가정, 학교(교우, 학습, 비행)생활에 대한 집단상담을 통해 건진성장을 통해 건진성장 -월1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상담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2. 취업, 부업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킨다.	1) 취업부업교육과 알선으로 경제적 안정추구와 빈곤을 해소한다.	취업알선 부업알선 직업훈련교육 실시	-일용노무에서 생산직, 상근 근로자로 취업알선 -홈패션, 제과제빵 교육 후 취업, 부업 알선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2) 자립지원을 통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생업자금융자 부업, 직업용 물품구입 지원	자영생업자금융자 총 5,000천원(2년 후 상환) -미싱, 조리도구 등 구입 지원	사회복지사					
⑥ 프로그램 예산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기자재와 집기구입비 등 30,000천원								
⑦ 프로그램 효과 평가 방법	목표 1	자녀보호교육과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							
	평가내용	학습지도교실	집단상담						
	평가방법과 측정도구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중 참여 아동수							
	목표 2	취업, 부업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킨다.							
	평가내용	부업, 취업알선							
	평가방법과 측정도구	월소득 100,000원 이상으로 소득증대 가정수 생업자금융자 용자 후 자영업 종사자 수							

가. 내용 요약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국제규약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당수가 사회보장 관련 사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민과 그 가족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사업계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의 담당자로서 상이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006년 4월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대책'을 계기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주민 관련 복지정책 및 서비스 대부분은 개별 이주민들의 욕구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은 여전히 빈곤, 의사소통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이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회사업 실천가,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적 민감성이 증진되고 이주민들의 권리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및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에 대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권, 문화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이주민관련 복지정책, 이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의 특수성



다. 탐구 문제

- 이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 방안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 이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이슈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 다문화가족복지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은 무엇인가?

IX. 다문화사회의 교실

차 례

1. 강의소개
2. 1차시 강의안
3. 2차시 강의안
4. 단원정리



1

강의 소개

가. 학습목표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학 현황과 학업 중단 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침해 실태에 대해 파악한다.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과 국내법을 살펴보고,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활동개요

- 대상 : 교육계 공무원 및 종사자
- 장소 : 강의실
- 소요시간 : 80분, 2차시
- 준비물 : 컴퓨터, 빔프로젝터, 학습자 활동자료, 교사 지도자료
- 진행인원 : 교수자 1명

다. 학습개요: 주요내용과 개념

-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입학 문제, 취학 전 교육지원 문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등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 기준과 헌법 등의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사례는 우리의 다문화 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며,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라. 기대효과

- 이주민 관련 국제 기준과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법의 미비점에 대해 판단

해 볼 수 있다.

- 다양한 실제 이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다.
- 실제 현장에서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 지도시 유의사항

- 동영상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적합한 코덱이 컴퓨터에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며, PPT에서 동영상을 실행할 때는 영상을 클릭한다.
-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강의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강의활동 개요

차시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1차시 (80분)	도입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 살색이 아닌 살구색이 올바른 명칭임을 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영상에 감상하며 차이와 차별에 대해 생각한다.	10분
	전개	다문화 가정의 유형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생수와 학업중단 사유 교육 현장의 어려움 ·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 교사의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 학습권 침해 실태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본다.	60분
	정리	주요 학습 내용 정리	10분
2차시 (80분)	도입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 길모퉁이 때문에 어려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포스터를 보고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 생각해본다.	10분
	전개	인권과 다문화 교육 · 인권과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 학습권의 국제 기준과 국내법을 살펴본다. 해의 다문화 교육 사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 · 내가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살펴보기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학교와 교사는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위한 학급 규칙 만들기	60분
	정리	주요 학습 내용 정리	10분



2

1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0분	<p>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색은 무슨 색깔인가요? 살색은 잘못된 표현이며, 살구색이 적합한 표현임을 설명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광고 동영상을 보여준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나레이션: 제 이름은 배기철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인데 자신들과 틀리다고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p> </div> <p>얼굴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교실에서 '살색'의 표현처럼 잘못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강의식	<p>PPT 동영상</p> <p>학습자 활동자료 ①</p>
전개	10분	<p>다문화 가정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부와 모 둘 중의 한 명은 한국인, 나머지 한 명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또는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유형을 파악한다. 	강의식	PPT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된 가정의 자녀이다.			
	10분	이주민 학생 수와 학업 중단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현상과,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학업중단사유를 살펴본다. ·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학생 수 추이와 학업중단사유를 살펴본다. ·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학생 수와 학업중단 사유, 중도탈락률을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로 학생 수와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본다. 	강의식	PPT 그래프
	25분	교육현장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과 관련된 두 가지 동영상을 감상한다. 하나는 무슬림학생이 급식시간에 겪는 일을 만화로 표현했으며, 또 하나는 이주민 자녀로써 놀림을 받는 모습을 표현한 만화이다. · 두 동영상에서 제시된 상황을 모둠별로 재현해보고 각자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가정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가족정체성, 심리적 불안, 자아정체성 고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결핍, 성취도 평가 관련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언어적 결핍으로 인한 학습 결손, 가정환경에 따른 어려움,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의 경우 신부노출에 대한 두려움, 교우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감상한 후, 모둠별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현해본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한 후, 활동지의 질문에 답한다. ·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겪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강의식 역할극	PPT 학습자 활동자 료 ② 교수자 지도자 료 ②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부디의 놀림, 학업성취 어려움, 탈북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의 어려움을 겪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학부모와 협력 교육의 어려움, 소통부족, 관계형성의 어려움, 전문적인 상담 교육 자원의 부족, 학습결손 지도의 한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생활지도 문제, 계기교육 및 역사, 도덕 교육의 어려움 등이 있다. 			
	15분	<p>학습권 침해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몽골에서 온 하기의 경우, 아버지가 입양을 거부하여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과,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한 내용을 설명한다. · 문화프로그램 진행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입학 문제, 학교 취학 전 교육지원 문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하기의 입장이 라면 어떤 기분일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 사례를 통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는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입학 문제, 학교 취학 전 교육지원 문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제시된 대책을 인지하고 그밖에 대책에 대해 제시해본다. 	강의식 문답식	PPT
정리	10분	<p>주요 학습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 정리 <p>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또한 왜 그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을 상기시켜본다. 	강의식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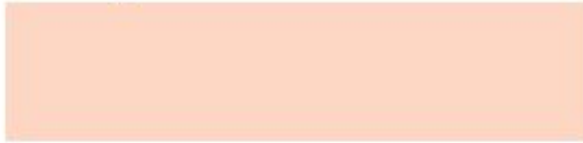
나. 학습자 활동자료

① 도입부분 관련자료

1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①



무슨 색깔인가요?



답 :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제 이름은 배기철입니다.
저는 ()입니다.
단지 ()이/가 다를 뿐인데
자신들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을/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② PPT 18, 19쪽 관련 상황극 대본 및 질문지 1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②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상황극)

과외포인트를 통해 살펴본 두 가지 사례 중 한 가지 경우를 선택하여 각자 모둠에서 재현해 봅시다.

동영상1

역할 - 디아나, 아주머니, 남학생, 디아나 친구

상황 - 학교 급식 시간에 메뉴가 카레인 것을 보고 디아나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디아나 : 어떡하지? 카레야.

디아나 : 아줌마, 전 카레 못 먹는데요.

아주머니 : 학교에서는 편식하면 못써요

디아나 : 전,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아주머니 : 무슬림? 그게 뭔데?

남학생 : 아줌만 무슬림도 몰라요? 이슬람이요.. 빈 라덴, 후세인, 그런 테러리스트들 말이에요!

애 꼭 빈 라덴처럼 생겼죠? 눈도 크고 까맣고...헤헤헤

디아나 친구 : 이슬람이면 다 테러리스트인줄 알아? 그럼 미국 사람이면 다 조지부시겠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디아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고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1. 각자 맡은 역할에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2. 만약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동영상2

역할 - 경준, 티안

상황 - 축구를 하다 수업 시간에 늦은 경준과 티안은 벌을 서고 있다. 벌을 서면서 경준은 티안을 계속 놀린다.

경준 : 야, 튀김! 너 오늘 수수깡 가져왔어?

야, 너 내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대답 안해!

이게.. 가난뱅이 나라에서 온 주제에 사람 무시하는 거냐?

시키맏고 빼빼 마른 놈이, 재수 없으니까 너희 나라로 가버려!

1. 각자 맡은 역할에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2. 경준의 말을 듣고 있는 티안의 기분을 어떠했을까요? 또, 경준의 말에서 편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자료

9. 다문화 사회의 교실
1차시

차례

1. 도입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3.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4. 교육 현장의 어려움
5. 학습권 침해 실태

도입

무슨 색깔인가요?

도입

제 이름은 배기철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를뿐인데
자신들과 틀리다고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

	다문화 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의 자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된 가정의 자녀

<2009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관한 통계 자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생수의 증가(단위: 명)

연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생수
2007	13445	1825
2008	18769	16275
2009	24745	22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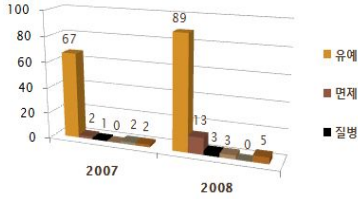
<2009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관한 통계 자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학생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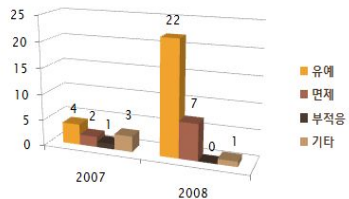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학생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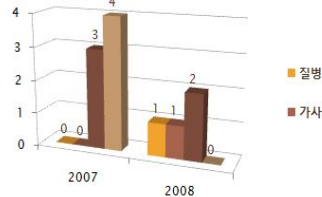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국제 결혼 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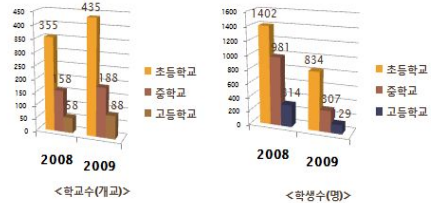
국제결혼가정 학생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학교수는 25% 증가, 학생수는 10% 가량 감소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초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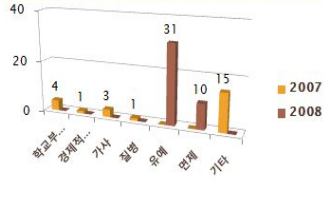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중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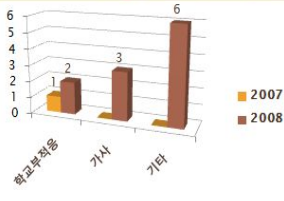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단위 : 명)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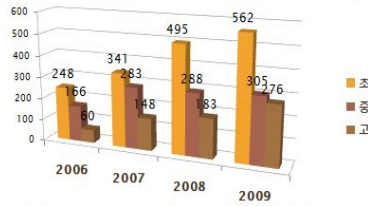
국제결혼 가정 학생과 달리
부모의 비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아
언어 문제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
훨씬 더 심하기에
학업 중단 비율 또한 높은 편

<2009 인권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학생수 & 학업중단 사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수(단위 : 명)



<2009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100만명 및 유망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15

학생수 & 학업 중단 사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중도탈락률

연도, 학년	학급	총			계
		초	중	고	
2007	계학생 수(명)	341	232	168	772
	중도탈락생(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2008	계학생 수(명)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명)	7	25	36	58
	중도탈락률(%)	1.4	8.5	14.4	5.3
2009	계학생 수(명)	562	305	276	1,343
	중도탈락생(명)	14	30	52	116
	중도탈락률(%)	2.5	16.4	18.8	10.1

<2009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100만명 및 유망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16

학생수 & 학업중단 사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중도탈락률이 높다.

↓
나이가 많을 수록
새로운 문화와 학교환경, 교육 체제 등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

<2009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100만명 및 유망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17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유기인문화원자료 자료>

18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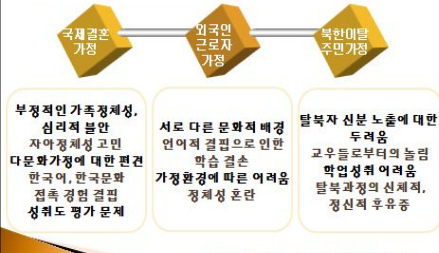


<유기인문화원자료 자료>

19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2009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100만명 및 유망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20

교육 현장의 어려움

교사의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

- 1 학부모와 협력 교육의 어려움, 소통 부족, 관계 형성 어려움
- 2 전문적인 상담 교육 지원의 부족
- 3 학습결손 지도의 한계
- 4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생활 지도 문제
- 5 계기교육 및 역사, 도덕 교육의 어려움

<2009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100만명 및 유망별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21

학습권 침해 실태 - 사례

하기는 2007년 10월 한국에 입국 어머니는 한국인과 재혼하여 한국에 거주, 2007년에서야 하기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옴.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법적인 혼인관계. 한국인 아버지가 하기를 입양해서 후견에 인정하는 것은 원치 않음. 하기는 C-3관공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한국에 온 후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정동한글문화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받은 정식학교가 아니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었다.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식학생이 된 후 재학증명서를 받아 비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함

<한국 고교인문학회 자료>

22



학습권 침해 실태 - 사례

“그동안 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어려워졌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평일 일반 수업 대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수학수업이 있어서 빠지면 안되는데 행사 때문에 빠지게 되서 아쉽다.”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다른 어린이들과 갈라놓는 느낌이다.”

<2009.5.5. 노원구, C형사범부 유치원 기가>

23

학습권 침해 실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입학 문제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볼 때 학교 입학 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국제 아동 권리 협약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학교에 입학 가능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입학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학교장에게 결정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된 지침 마련 필요!!**

<2009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 입학 및 취업률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24

학습권 침해 실태

학교 취학전 교육지원 문제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기초 형성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다문화 학생들이 **입학 전 단계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09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 입학 및 취업률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25

학습권 침해 실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결손은 많은 경우 언어적 어려움에서 비롯

이중언어교육 실시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더 익숙한 언어로 학습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09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 입학 및 취업률 교육 요구 분석, 교과부>

26



② PPT 23쪽 관련 사례 살펴보기 -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국제결혼 가정 학생의 어려움>

● 부정적인 가족정체성과 심리적 불안

-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가족정체성에서 비롯된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으로 이어져,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물론 학업 생활을 어렵게 한다.

●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

- 순수 한국의 혈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그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가 이들로 하여금 심리적 긴장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
-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급학교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고학년으로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교 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부모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문화적 억압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주는 불편함

- 피부색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과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은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 이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비인권적이고 불평등한 관행이 교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중국 애기 때문에 그 외모적으론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언어 쪽으론 문제가 없고 하니까 별로 잘,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필리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피부가 달라버리니까 애들이 침에 어 년 필리핀 사람이나?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이니까 너도 필리핀 가라(교사면담자료)

● 한국어와 한국문화 접촉 경험 결핍에 따른 학습결손

- 어머니의 한글 구사 능력과 취학 전 기초교육이 학습결손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결혼가정의 문화 자본 결핍이 자녀의 학습결손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결손은 누적적으로 심화된다.

● 성취도 평가가 주는 이중적 상실감

-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는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을 한글과 교과 학습 양쪽에서 모두 학습부진아로 낙인찍게 된다.



<이주노동자 가정 학생의 어려움>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 사이의 갈등

근데 이제 나중에 중간에 2학년짜리 중국애가 전학을 왔거든요. 이제 개는 워낙에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를 거 없이 생활해서 표가 잘 안 나는 아인데, 중국애가 왔다고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어, 중국 애들 싫어.' 이런 식. 몽골 아이들이 중국을 싫어해요. 뭐 나라 간의 그런 갈등이 아 아이들한테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늘 부딪히는 느낌...(교사 면담 자료)

● 언어적 결핍에서 비롯하는 학습 결손

아이들을, 제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애네들이 일 년 정도 됐는데, 제가 말하는 걸 계속 그게, 그게 뒤에요. 물어봐요, 계속 단어를 물어보는데 이제 설명할 때도, 그 설명이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이제 한국말이 개네는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쓰는 단어가 아주 뭐 저학년들이 쓰는 그런 단어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사 면담자료)

● 가정환경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정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다. 이 때문에 양측 부모 모두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의 시간 부족은 자녀에 대한 관심 소홀 및 자녀의 방치로 이어진다. 특히, 양부모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은 다른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과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이다.

● 정체성 혼란

- 외모가 비다문화가정 학생과 비슷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몽골 등에서 온 학생의 경우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겉모습이 비슷함에도 공유하는 문화나 역사, 가치관 측면에서 비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내가 조금은 다르다는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 큰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의 어려움>

● 탈북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애네는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탈북자란 거 속여야 된다. 이 마음이 이 심리부터 해야 돼요. 애네가 이 심리전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학부모 면담자료)

제발 우리 애가 새터민이라는 것을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요? 그러니까 놀림당하고..안된다고..(교사 면담자료)

● 교우들로부터의 놀림 및 왕따

그러니까 남자들이 야를 뭐 속어로 이렇게 뭐 북한놈, 또는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한번씩 얘기를 하고..북한 얘기니 뭐 오늘도 육이오 이렇게 나왔을 대 한번 뭐 북한놈 나쁜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에 대해서 약간 놀리는 식으로(교사면담자료)

●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어려움

중국체류 등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및 결손, 북한과 다른 한국의 교육과정, 한국식 용어 또는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소극적인 학습자세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

탈북과정에서 신체적인 상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학업 결손, 방어적인 태도 형성, 폭력적인 성향 표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내가 개 음악 가르칠 때 좀 가슴이 찼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음악을 듣고 거기에 떠오르는 거를 이제 간단히 적는 건데 개 글이 이제 강철이가 보고 싶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이름이잖아요 내 친구 강철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아 애 마음속에 그런 게 있구나 싶은 게..(교사면담자료)

● 불안정한 가정환경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 가정불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결여와 같은 가정환경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크다.

<2009 다문화가정 학생 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3

2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0분	학습목표 및 활동 과정 제시 · 걸모습 때문에 어려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보여준다. 다름과 같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포스터를 보여준다.	· 동영상과 포스터를 보고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 생각해본다.	강의식	PPT 동영상
전개	5분	인권과 다문화 교육 · 인권의 개념을 설명한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말한다. 특히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강조한다. ·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회계층의 다양성이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 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증가시켜 주며,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설명한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소수집단의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인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강의식	PPT
	15분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 학습권의 국제 기준을 살펴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 철폐조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본다. · 국내법에서 이주민 자녀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과 국내법 조항에 대해 이해한다. 조항을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숙지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지	강의식	PPT 동영상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을 살펴본다.	한다.		
	15분	<p>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문화 간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시민교육’ 과목은 초1~고3까지 공통 필수과목으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 독일의 다문화 교육(상호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p>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고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평등하게 상호 공존함을 강조한다. 특별학급 운영, 이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징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본다. <p>문화 다원주의 개념을 강조하며, 이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언어, 문화 습득 프로그램, 학교 밖 다문화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다문화교육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 안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정신적인 부분까지 돌보며, 학부모와의 연계를 돈독히 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또한 범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일반가정 자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하고 있었다. 학교 밖에서는 언어교육과 함께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 	강의식 문답식	PPT
	25분	<p>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에 대한 질문 문항에 스스로 답해 	활동	PPT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함을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질문 문항에 답해보도록 한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교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위한 학급 규칙을 만들어본다. · 모듈별로 최대 5개의 항목을 만들어 발표한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p>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상에 대해 이해한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교실을 위한 학급 규칙을 모듈별로 제작하고 모듈별로 발표해보도록 한다.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활동지에 적어본다. 	강의식 모둠활동	<p>학습자 활동자료 ①②</p> <p>교수자 지도자료 ③</p>
정리	10분	<p>주요 학습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 정리 <p>본 수업에서는 인권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의 근거가 되는 국제 기준과 국내법의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우수한 해외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을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편견 없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강의식	PPT

나. 학습자 활동자료

2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①



나도 몰랐던 나의 편견?

다음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봅시다.

질문	매우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역차별을 만들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자녀가 다른 인종의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5 소수 인종 출신도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혹은 소수 인종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자녀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녀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의 큰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소수 집단과 이민자 아동들이 전통적인 한국 가치를 배우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만일 내가 아이를 입양한다면 입양 아동의 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과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주민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주민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2차시 학습자 활동자료 ②



다문화 사회, 바람직한 교실을 위하여

1.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실 모습을 위한 학급 규칙을 만들어봅시다.

학급 규칙 만들기

학교 :

학년 :

1)

2)

3)

4)

5)

2.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교실 문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PPT 자료

	<h4>차례</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입 2. 인권과 다문화 교육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4. 인권친화적인 다문화교육 사례 5.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h4>도입</h4>	<h4>도입</h4> <p>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르다</p>
<h4>인권과 다문화 교육</h4> <h5>인권이란?</h5> <p>인권 (human rights)</p> <p>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p> <p>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p> <p>법의 관할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p> <p>-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p> <p>(위키백과)</p>	<h4>인권과 다문화 교육</h4> <h5>다문화 교육의 필요성</h5> <p>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회계급의 다양성이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 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증가시켜 준다고 본다.</p> <p>또한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p> <p><small><다문화교육진흥(Barak & 아카데믹프레스, 2008)></small></p>



인권과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사회계층의 다양성이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 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증가시켜 준다고 본다.
 또한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교육집행(Shirk & Yung,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제 기준

1 유엔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 (비차별)
 제9조 (친부와 함께 살 권리)
 제10조 (부모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
 제26조 (사회보장권)
 제28조 (교육권)
 제29조 (교육의 방법)
 제30조 (교육한 문화, 종교, 언어를 사용함 권리)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건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제 기준

2 세계 인권 선언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제 기준

3 인종차별 철폐조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가는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공공교육기관의 개방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건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내법

1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주아동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 권리는 체류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함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건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내법

2 교육기본법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권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주아동도 의무교육 대상임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건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내법

3 학생 인권 조례 살펴보기 -1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옹모 ...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내법

3 학생 인권 조례 살펴보기 -2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다문화가정 학생**, ...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요건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

국내법

3 학생 인권 조례 살펴보기-3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의 **직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한다.

15

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 프랑스

문화간 교육

독립된 교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본적인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원칙 아래 다양한 이름의 교육이 복수 교과목에 걸쳐 편제됨

'시민교육' 과목은 초등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까지 공통 필수과목으로 개설,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프랑스 시민 교육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권 보장

<2008년 인종 차별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가인문화연구소>

16

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 독일

상호문화교육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고 서로 다른 문화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평등하게 상호 공존

독일어가 제 1언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학급이 각 시마다 몇 개의 학교에 설치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기초 및 재교육 언어 과정으로 구성

<2008년 인종 차별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가인문화연구소>

17

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나요?

<2008년 인종 차별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가인문화연구소>

18

해외 다문화 교육 사례

해외 다문화교육의 공통점

1. 학교 안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정신적인 부분까지 돌봄**, 학부모와의 연계 등독히 하려는 노력
2. 학교 안 : **별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함 일반가정 자녀들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함
3. 학교 밖 : 언어교육과 함께 **직업교육** 실시

<2008년 인종 차별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가인문화연구소>

19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무엇보다도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20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나도 몰랐던 나의 편견?

1. 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역차별을 만들어낸다.
2.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직장에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4. 내 자녀가 다른 인종의 사람과 테이트를 해도 괜찮다.
5. 소수 인종 출신도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6.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혹은 소수 인종 관련 이슈들이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다.
7. 내 자녀가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녀도 좋다.
8.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의 큰 문제다.
9.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소수 집단과 이민자 아동들이 전통적인 학업 가치를 배우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만일 내가 아이를 양양한다면 양양 아동의 인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22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11.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장려해야 한다.
12.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과 이웃이 되어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다.
13. 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14. 이주민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15. 이주민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2009 고등인문단수성명조사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4. 감당할 만한 교육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6.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2009 고등인문단수성명조사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상

1. 인권적 교육 문화의 창출자로서의 교사
2. 아이들 인권 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호자로서의 교사
3. 교사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가로서의 교사
4. 인권 교육에 관한 사회와 가정, 학교의 중계자로서의 교사

<2009 고등인문단수성명조사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1. 학급 규칙 만들기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며...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다문화, 인권: 새로운 만남 열어서>



② 동영상 자료

- 이주민으로 겪었던 편견에 대한 인터뷰 뉴스 동영상 (16초, CGN)

③ PPT 24쪽 관련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아동의 '권리'이다.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감당할 만한 교육

- 모든 교육이 선한 것은 아니다. 아동의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불모로 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한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아동이 신체적·정서적·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이 감당할 만한 교육이란 아동에게 적합하며 아동의 권리 실현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과 질을 가져야 한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아동은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6.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아동의 모든 권리는 상호불가분하고 상호 연관된다. 아동의 각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보완·통합되는 것이다.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아동 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교육의 물질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에 초점을 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요구된다.

10. 권리구제에 대한 보장

- 아동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2009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④ PPT 24쪽 관련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상

1. 인권적 교육 문화의 창출자로서의 교사

-교사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며, 문화의 창조자이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과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대두되는 인권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 행동에서 비인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적 문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이들 인권 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호자로서의 교사

- 교사는 먼저 어린이 인권 보호의 적극적인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학대문제를 교사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에게 어린이의 권리와 인권적 자녀 양육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교사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가로서의 교사

- 교사 스스로가 겪는 인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4. 인권 교육에 관한 사회와 가정, 학교의 중계자로서의 교사

- 인권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잃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 단체 및 국가 인권위 등의 각 인권 교육 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2009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가. 내용 요약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별로 학생 수와 학업중단 사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권의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은 크게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 기준과 헌법 등의 국내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의 다문화교육 사례는 우리에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유지, 학부모와의 연계, 범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학교 밖에서 언어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도 실시할 것 등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교실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바탕위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 핵심개념 및 용어

인권, 다문화교육,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업중단사유, 학습권,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헌법, 교육기본법

다. 탐구 문제

-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방안을 각 교과별로 제시해보자.
- 실제수업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포함된 교실에서 수업할 때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할 지 생각해보자.

X. 이주노동자와 인권

차 례

1. 강의소개
2. 1차시 강의안
3. 2차시 강의안
4. 단원정리



1

강의 소개

가. 학습목표

- 인권 개념을 이해한다.
- 이주노동자의 국제법·국내법상 권리를 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안다.
- 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다.
-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 친인권경영이 직무만족도, 노동생산성, 기업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됨을 이해한다.
- 종사(혹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나. 활동개요

- 대상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주
- 장소 : 강의실
- 소요시간 : 75분(1차시), 75분(2차시)
- 준비물 : 컴퓨터, 학습자 읽기자료, 교사지도자료
- 진행인원 : 교수 자 1명

다. 학습개요: 주요내용과 개념

- 인권
-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
-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 국내법상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현황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주의 현실적인 어려움
- 이주노동자 고용을 통한 기업의 합리성 증대 방안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및 기업이미지 증대 방안

라. 기대효과

- 인권 개념 및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이주노동자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인권 경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생산성을 높인다.

마. 지도 시 유의사항

-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동영상 자료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한다.



바. 강의활동 개요

차시	단계	주요활동내용	시간
1차시 (75분)	도입	인사나누기 활동 목표 및 동기 유발('고용허가제'뉴스 시청 2분 30초)	5분
	전개	활동 1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봅시다.	10분
		탐구 1: '고용허가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이주노동자 도입축소'로 인한 문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주노동자 고용시 어려움 - 사업장 이탈, 숙련된 이주 노동자 확보 어려움 -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10분
		탐구 2: '이주노동자의 어려움' - 임금체불, 여권과 신분증 압류, 폭언, 폭행 - 스물다섯 두 아이 엄마 '조안의 희망'	10분
		탐구 3 : 인권	1분
		탐구 4 :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 - 국제법상 지위 - 헌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개별적 노동 인권	4분
		활동 2 :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경영 방안 생각해보기	5분
		탐구 5 : 언어문화 차이 해결방안, 음식문화 차이 해결방안 - 모 중소기업 고용주의 멋진 생각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들 (동영상 '고향 보내주기'(3분), '집수리'(3분))	15분
		탐구 7 : 인권 경영 - 인권경영으로 얻어지는 효과 , 인권경영과 기업 성과, 근로조건과 경영성과	10분
	활동 3 : 인권위 동영상 감상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50초) - 영상물 시청에 대한 간단한 소감 나누기	3분	
정리	주요 학습 내용 정리 소감 나누기	2분	

2차시 (75분)	도입	인사나누기 활동 목표 및 동기 유발(‘사람들이 왔다’ 동영상 시청 6분)	10분
	전개	활동 1 : 내가 만일 독일의 이주노동자였다면 - 타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생각해 보기	10분
		탐구 1 : 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 - 사할린, 일본의 이주 노동자들 -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한 이주노동자들 - 독일로 떠난 간호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주노동자들	5분
		탐구 2 : 이주노동자의 유입 - 우리나라로 온 이주노동자들과 앞으로 이들의 유입 증가	5분
		탐구 3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 동영상3분 , ‘인종차별’ 7분) - 나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점검하기	15분
		탐구 4 : 외국의 이주노동자 문제 - 프랑스 이주노동자 폭력사태 -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 정책	5분
		탐구 5 : 잠수왕 무하마드 영화 감상 (17분) -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함께 이야기하기	20분
	정리	주요학습 내용 정리 - 소감 나누기	5분



2

1차시 강의안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 ‘고용허가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봅시다. - 불법의 온상이 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인다는 이유로 강제 단속과 추방, 무단 공장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 숙련노동력 확보를 이유로 정부 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 	강의 식	동영상 ① PPT 1, 2, 3
전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 현장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토의 식, 강의 식	PPT 4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이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고 이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시하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 경영 시 생산성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촉성’ 정책은 이주노동자 고용주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당장 대안이 없다’고 인력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국인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노동자의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강의 식	교수 자 지도 자료 ①, ②,③ PPT 5,6,7, 8,9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수자	학습자		
		<p>용안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터리 조립 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A공장 공장주는 '이주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은 120만 원 정도이지만 잔업이나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주 노동자를 줄인다는 소리는 우리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 라고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이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으로 버티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p> <p>- 모 신문사에서 공장주를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어느 섬유 공장의 경우 내국인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 하고 있으며, 어느 이주 노동자는 한국의 임금수준이 본국 보다 높고,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다며 고용주를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p> <p>- 또한 이주 노동자 고용 시 어려움으로는 사업장이탈,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p>			
	10분	<p>·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되지만, 고향을 떠나 언어,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혼자 힘들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한국 생활은 어떨까요? 이는 사람 하나 없는 다국에서 겪는 이들의 어려움은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p> <p>-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어려움은 직장에서 차별대우(35.2%) 욕설이나 모욕(33.6%) 임금체불(32.0%) 대표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가 실릴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 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는 기분 나쁜 경험이지만,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목돈 마련의 기대가 무산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들의 꿈이 무산 되고 맙니다. 2007년 설문조사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52.2%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합법체류</p>	·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강의 식문 답식	교수 자 지도 자료 ④,⑤ PPT 10,11, 12,13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수자	학습자		
		<p>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은 정신적이라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고통은 신체의 자유, 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산업재해를 겪은 조안의 사례를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조안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아들이 장애를 겪고 있어 치료비를 벌기위해 한국에 왔지만 휴대전화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의 꿈은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 까지 지켜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결국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산업 재해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주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처우를 받지 못해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p> <p>· 우리나라가 2009년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로 지적당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언어적·신체적 폭력, 임금체불이 그 원인 이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장벽이 없어지고,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p>			
	5분	<p>· 인권</p> <p>-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말합니다.</p> <p>-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명시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국제법상 지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p>- 산업재해 발생 시 내·외국인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고, 직업훈련, 고용계약에 대해 차별을 철폐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 국내법에 의해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동 3권을 보장받으며, 사생활을 보장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강제 노동을 강요받지 않습니다.</p>	<p>·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본다.</p>	강의식, 문답식	교수자 지도 자료 ⑥,⑦ PPT 14,15, 16,17
	5분	<p>-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나 차별에 대한 국제 사회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면서 이주</p>	<p>·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p>	강의식, 문답	PPT 18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수자	학습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인권 경영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식	
	15분	<p>·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경영 방침이나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말해 봅시다. - 구체적으로 언어문화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주민 센터를 연계하여 언어 교육을 할 수 있고, 작업장 내에서 한국인 직장동료와 함께 한국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있어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호칭 사용을 제대로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 음식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기후나 전통문화,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로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미얀마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 모 중소기업 고용주의 경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회사 전화로 고향 집에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례를 영상자료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례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고향에 보내주는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이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p>· 이주노동자의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말한다.</p> <p>· 이주노동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다.</p>	강의식, 문답식	동영상 ②, ③ PPT 19,20, 21,22
	10분	<p>· 인권 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사례를 든 이유는 인권경영에 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 인권경영이란 인간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문제 발생 시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나이키'와 삼성전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하청 공장에서 아동을 고용, 강제 노동을 시킨 이유로 기업의 	· 인권 경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본	강의식, 문답식	PPT 23,24, 25,26, 27,28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수자	학습자		
		<p>이미지가 실추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져 결국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백혈병 산업재해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국제사회 및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경영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직무 만족을 높여 기업 경영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최근 연구 이주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 급식시설이나 숙소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 재해 발생 시 인권을 존중하고,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면 경영성과도 좋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p>결국 인권 경영은 통해 기업가와 노동자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다.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동영상'30'초 시청) -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국 땅에 왔습니다. 피부색, 언어, 음식 어느 하나 익숙한 것이 없고, 고향이 그립고, 생활이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함께 시청 후 짧게 소감을 나눈다. 	강의식, 문답식	동영상 ④ PPT 29,30

나. 학습자 활동자료

① 인권경영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기업경영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권경영은 기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넘어 이제는 인권까지 경영의 한 요소로 넣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의 하청공장에서 아동을 고용,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기업이 눈감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 세계적인 질타를 받게 되었다. 결국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생산성은 낮아지고, 소비자가 나이키의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게 되어 소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어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백혈병 산업재해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및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건의 명확한 규명과 보상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06. 06.25 아시아투데이

신문 인용)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이주노동자 도입 축소' 정책

● “공장 문 닫으란 소린가? 3D업종 버팀목 쓰러진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축소' 대책에 중소기업들이 고용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대부분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당장 대안이 없다”며 인력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아시아 투데이 2009.03.25 인용)

②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 (2004년 8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이주노동자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이동 회수를 3회로 제한하고, 3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③ 이주 노동자의 고용주의 이주 노동자 활용에 따른 예로 사항

● 이주노동자 활용에 따른 예로 사항

이주노동자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체의 경우 가장 큰 예로사항으로 '고용허가를 받기 위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필요한 이주 노동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남의 이주 노동자 및 제도에 대한 인식분석'(2009년))

● 이주노동자는 언어문제(57%)가 일상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 생각

이주노동자는 언어문제(57%)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가 이러한 불편함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 한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

건강문제 대해서 노동자의 40.6%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고용주는 22.2%만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72.2%의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식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주 노동자는 21.7%만이 음식문제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종교나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금기시 하는 음식(예; 이슬람교 돼지고기, 힌두교 쇠고기)이 문화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고용주는 의복이나 주거, 숙소문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의복(7.9%)주거 숙소(22.9%)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내 이주 노동자 차별 해소방안 연구」 (2004. 6)



④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1>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전체 이주노동자 (N=125)	합법체류 이주노동자 (N=79)	미등록 이주노동자 (N=46)
7개중 하나 이상의 고통스러웠던 경험	92.0	87.3	100.0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35.2	39.2	28.3
욕설이나 모욕	33.6	36.7	28.3
임금체불	32.0	20.3	52.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대우	15.2	15.2	15.2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의 공포	10.4	2.5	23.9
폭행	7.2	6.3	8.7
성폭행	2.4	2.5	2.2

자료: 한건수·설동훈 「이주노동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어성정책 연구원, 2007,p.57

▶ 2007년 국내에서 일하는 저 숙련 생산직 이주노동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조사한 것임.

⑤ 25살 필리핀 이주 노동자 조안의 작은 소원

2010년 6월 9일, 감기 기운이 돌아 병원을 찾은 조안 줄리오(25.필리핀)는 의사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급성백혈병. 한국으로 올 당시 필리핀에서 두 번, 입국한 뒤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조안에게는 장애 아동인 아들이 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데 백혈병에 걸린 것이다.

“한국은 돈을 벌수 있는 곳이다. 나도 아프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꼭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싶다.” 조안은 인터뷰 내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반복했다. 출산 당시 양수가 터졌는데 병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아들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조안은 한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몇 년 만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인천 계산동의 자수 회사였다.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월급을 보낼 생각으로 즐겁게 일을 했다.

그러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사장은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지만,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고열이나 큰 병원을 찾아간 결과 급성 백혈병이었다.

조안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라고 말을 흐리며 ‘둘 째 아들이 아플 때는 내 생명을 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고 작게 읊조렸다.

<오마이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 재인용

⑥ 인권

● 인권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인 인권은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 인권은 보통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한다. 인권에 대한 정의에는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는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의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이해와 개념정의를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⑦ 이주노동자의 국제법 · 국내법상 법적지위

● 국제법상 지위

ILO 제 19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 산업재해 발생 시 내.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제 87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

제 111호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대한 협약

- 직업훈련, 고용, 특정 직업에의 접근,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

제 143호 :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협약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과함.

● 국내법상 지위

(1) 개별적 노동인권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비인격적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강제 노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 4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조정 근로 시간을 알려야함.

※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과 차별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최저제한을 규정한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내국인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역시 내국인 기준으로 환산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과정과 비인격적 처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적 발언을 했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2) 집단적 노동인권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이 부정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 가입 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3) 사회보장과 노동인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무상으로 이주노동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⑧ 교수자 PPT

<p style="text-align: center;">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p>	<p>함께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노동자 고용 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경영 방침을 세울 수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경영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p>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 문제</p> 	<p>이주 노동자 고용주인 어려움은 이야기 해봅시다.</p> 
<p>고용허가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260 1062 452 1275">  <p>사업장내에서 인권침해 발생</p> <p>미등록이주노동자</p> </div> <div data-bbox="466 1062 672 1275">  <p>생산성, 품질</p> </div> </div>	<p>정부의 '이주 노동자 도입속소'</p> 
<p>'돈보다 급한 것은 인력'</p>  <p>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했다면 고용주를 처벌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p> <p>선진국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에서 인력이 없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다. 이 경우 이주노동자 예외 적용이 아닌 수급률과 고용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 지원이 있다. 다만 많은 임금을 받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서 기술이까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가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p> <p>섬유공장</p>	<p>이주 노동자 고용 시 어려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713 1391 891 1603">  <p>사업장 이탈</p> </div> <div data-bbox="905 1391 1083 1603">  <p>숙련된 이주 노동자 확보 어려움</p> </div> </div>



이주노동자 고용 시 어려움



문화적 차이



인사소통의 어려움

9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지적당한 유일한 나라! 이들의 생존과 슬픔을 대한민국!!



10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현황



임금체불



여권과 신분증 압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현황

개새끼
쓰버놈이
저



폭언

폭행

12

'스물다섯 두 아이 엄마' 조안의 희망'



조안 (25, 필리핀)은 두 아이의 엄마이다. 막내인 아들은 장애인이다. 아들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2010년 5월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 했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고향으로 가지 못한다. 아픈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 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 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

13

인권이란?

人(사람인) + 權(권리권)
= 인간의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14

이주노동자의 국제보상 지위



국제노동기구

- 제 19호 :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차별없이 알고 동등하게 보상.
- 제 III호 : 직업훈련·고용 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차별 없게
- 제 143호 :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인연 증명.

15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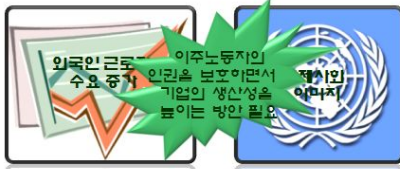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4. 12.29)"

- 생활필요 보장받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경제노동에 중요하지 아니할 권리

16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



17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인권경영 방안



18

언어 문화의 차이 해결방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직장 내 호칭사용

직장 내 언어생활

19

음식 문화차이

기후, 전통문화, 종교의 차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얀마

20

모 중소기업 고용주의 멋진 생각



인도, 파키스탄, 이란, 네팔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매일 우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회사 전화로 고용장에 국제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국제전화 서비스 상담사께 인용)

무료 국제 전화

21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들



22

인권경영이란?



인간중심

피해자

23

인권경영으로 얻어지는 효과



사회공헌

24



<p>인권경영과 기업의 생산성</p> <p>직무만족</p> <p>25</p>	<p>근로조건, 직무만족, 경영성과 모형</p> <p>26</p>
<p>근로조건 경영성과의 관계</p> <p>27</p>	<p>근로조건 경영성과의 관계</p> <p>28</p>
<p>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p> <p>29</p>	<p>마음으로 안아주세요</p> <p>30</p>

⑦ 동영상 자료

-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주, 이주노동자, 정부와의 갈등(2분 30초) - 동영상①
- 이주노동자 고향방문(3분) - 동영상②
- 이주노동자 집수리를 해주는 기업 (3분) - 동영상③
- 학습정리용 인권위원회 광고(20초) - 동영상④

가. 강의 진행과정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사람들이 왔다 동영상 시청(6분) · 영상시청 후 소감 이야기 - 동영상에서 손이 잘리거나 산업재해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 이었습니까?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었습니다. 30 여 년 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타국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독일어도 서툴렀던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가 어땠을까요? 보고 싶은 가족을 등 뒤로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했던 사람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광부들. 강제 추방의 위기에 있었던 간호사들. 그러나 이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독일 시민들이었습니다. 독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독일정부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 들였고, 독일에 끝까지 남아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동영상 시청한다. 	강의식	동영상 ① PPT 1,2,3
전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일 독일로 간 이주 노동자였다면. - 독일의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해보고 임금, 노동시간, 언어,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도록 한다. 	강의식 토의식	PPT 4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을까요?</p> <p>나.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12시간 이상 일하지는 않았을까요?</p> <p>다. 독일 말이 서툴다고 직장동료들이 무시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을까요?</p> <p>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여서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공장주가 산재보험에 들지 않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진 않았을까요?</p> <p>-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과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p>			
	5분	<p>· 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p> <p>-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력 유입국이나 예전에는 인력 송출국이었습니다. 흔히 한국인의 해외 이주 노동의 역사를 말할 때 1960년대 광부나 간호사들의 독일로의 이주를 가장먼저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이주로 부터 그 시초를 잡아야 합니다.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부터 우리의 해외이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와이의 띄약벌아래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했습니다. 10시간이 넘게 일했지만 남자는 65센트, 여자, 미성년자는 50센트였다고 합니다. 일자리에서 잘릴 것을 우려해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없었고, 말도 서툴러 의사표현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힘든 생활을 참다못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p> <p>- 그 이후 혼란한 조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만주, 사할린, 일본으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범정부적 지원으로 독일로 이주가 있었고,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 끊임없이 이주가 이루어 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일동포를 비롯하여 많은</p>	<p>- 한국인의 해외 이주 노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인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된 지금의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p>	강의식 문답식	<p>교수자 지도자 료 ①,② PPT 5,6,7,8,9, 10,11</p>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수가 이주하여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인력 송출국 이었던 한국으로 외국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함께 한국 입국이 수월해졌고, 3차 산업의 발달, 고학력화로 인한 3D업종의 인력난 심화, 세계화와 같은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사회적 변화 때문입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3D업종 기피로 인해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약 57 만 명이며, 그 중 단순 기능능력 인력이 53 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주 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 우리는 우리민족이 순수 혈통,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백인은 흑인보다는 더 우월하다거나 동남아시아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으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와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타 인종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차별로 나타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강의식 문답식	교수자 지도자료 ③ 동영상 ②,③ PPT 12,13,14, 15,16



단계	수업 호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p>국민들이 확고히 갖고 있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단일민족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증가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민족간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는 검은 피부를 경계하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자신을 움츠러들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 예시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영어를 사용하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나라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잘사는 나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제 3세계 사람들에게 잘 못된 우월감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면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 우리가 피부색, 인종, 국적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 차별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이주노동자 문제 - 2005년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 2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찍부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프랑스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주노동자 동화정책을 폈지만 계속되는 실업, 프랑스 국민내부에 있는 타 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대우가 축적되어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프랑스이주노동자 폭동이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주 노동자와의 사회적 통합을 잘도모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우수 정책 사례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나타난 프랑스의 이주노동자와의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식	교수자 지도자료 ④ PPT 17,18,

단계	수업 흐름 (분)	교수-학습 활동		수업형태	수업자료
		교수자	학습자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가 이주노동자와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직업연수를 고용주와 함께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와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5분	<p>· 잠수왕 무하마드(영화감상 17분) (잠수왕 무하마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p> <p>가. 무하마드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나. 한국 방송국에서 무하마드 고향에 찾아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 무하마드가 유해가스가 나오는 공장에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p> <p>- 영화내용을 이해하셨겠지만 무하마드는 본국에서 잠수 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는 잠수 왕 무하마드를 촬영하기 위해 무하마드의 고향을 찾아왔지만 어머니에게 돈을 벌기위해 무하마드는 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피부색이 검다고 무시당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신의 나라에서는 잠수 왕이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 받는 이주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각자 타고난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피부색,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p>	· 영화를 감상평을 말한다. 보고 함께	강의식 문답식	교수자 지도자료 ⑤ 동영상 ④ PPT 19,20
정리	5분	<p>· 주요 학습내용 정리</p> <p>· 소감 나누기</p>		강의식 문답식	PPT 21



나. 학습자 활동자료

① '잠수왕 무하마드' 감상

- 무하마드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나요?
- 한국 방송국에서는 왜 무하마드를 찾아 태국에 갔나요?
-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교수자 지도자료

① 한국인의 이주 노동의 역사

● 190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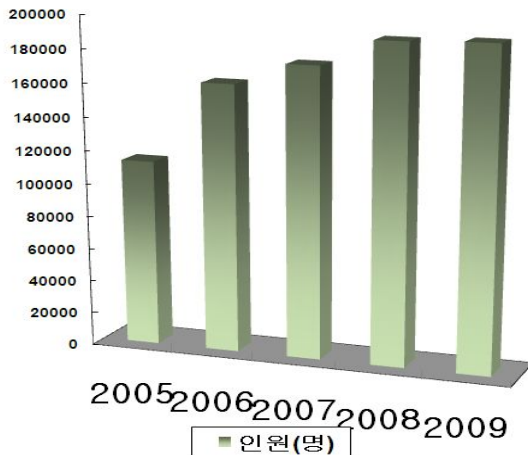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 발효 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대체 인력으로 선정되어 하와이에 이주하게 되자 하와이 농장에 일본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인의 하와이 노동 이민이 시작되었다.

한인 이민은 7,266명으로 그 중 남자가 6,048명 부녀자가 637명, 남녀아이들이 541명이 되었다. 이들에게 닥친 하와이 생활은 지상낙원에서 돈을 벌고 즐겁게 살수 있다는 선전 문구와는 달리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교차된 시간의 연속이었다. 하루 10시간 피약별(열대기후)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피며 받는 하루 임금은 남자 67센트 여자 미성년자들은 50센트를 받았다. 모진 학대 속에서 반항을 하면 일자리를 쫓겨 날판이니 반항도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다.

②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 이주노동자 체류현황



(2009. 03.31 법무부 통계)



③ 유엔 인종차별 철폐 안 “한국 ‘단일민족’ 개념 극복해야”

●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된 만큼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면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룹들의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순수 혈통, 혼혈 등의 용어에도 인종적 우월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인종 차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 했다. 현행 한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평등권을 다루며, 성별, 신분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갱신이 불가능한 3년 고용계약과 전업제한, 장시간 근로, 저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④ 이주 노동자에 대한 외국의 정책과, 이주노동자 문제

●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의 정책

1) 독일 : 독일인 노동자와 동인할 노동법과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차별 금지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2) 스웨덴 :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통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개입을 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 고령화가 일찍부터 진행 됐기 때문에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들은 이주노동자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고용허가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으며, 4년 이후에는 영주권을 주고 있다. ‘블레킹게 노동교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 각국의 이민자들은 직업 연수와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과정은 고용주와 참여자의 협의로 결정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어느 일방의, 특히 사용자의 이해뿐 아니라 이주민의 사정도 고려한다는 데서 유럽 특유의 관용정신을 읽을 수 있다.

● 이주노동자 문제

1) 프랑스 무슬람 이주노동자 2세 폭동 사태


2005년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 빈민가에서 수 십 여명의 이슬람 청년(이주노동자 2세)들이 자동차와 가게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슬람 청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변압기에 감전돼 죽은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다. 소요사태는 약 한 달간 계속되었으며 약 1만대의 차와 가게가 불탔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타 인종에 대한 배타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⑤ 영화 '잠수왕 무하마드'

태국에서 온 무하마드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경찰만 봐도 줄행랑을 치며 단속을 피해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유독성 가스공장에서 일하는 무하마드는 방독면을 쓰지 않고 일해서 작업반장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다. 사실 그는 고국인 태국에서는 잠수왕으로 명성을 날리던 인기스타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⑥ 교수자 PPT

<p>이주 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살아 가야 할 이웃입니다.</p>	<p>함께할 내용</p> <p>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를 통해 이주 노동자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p> <p>이주 노동자에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2</p>
<p>사람들이 왔다.</p> <p>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가면서도 이주 노동자</p>  <p style="text-align: right;">3</p>	<p>내가 만일 독일의 이주 노동자였다면..</p>  <p style="text-align: right;">4</p>
<p>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p>  <p>시할린 강제 이주 노동자</p>  <p>일본 미스비씨 탄광촌 이주노동자</p> <p style="text-align: right;">5</p>	<p>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p>  <p>이민선을 떠나 보내는 제물포</p>  <p>미인이 사랑수수 밭 일하는 노동자들</p> <p style="text-align: right;">6</p>
<p>한국인의 해외이주 노동의 역사</p>  <p>독일로 떠나는 간호인</p>  <p>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p> <p style="text-align: right;">7</p>	<p>우리나라로 온 이주노동자</p>  <p>서울올림픽으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p> <p>한국 경제 성장</p> <p>3D업종 인력난 심화</p> <p style="text-align: right;">8</p>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



3D업종 기피

9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입국한 이주노동자 수



10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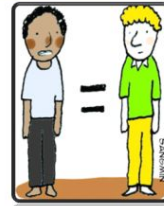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

11

혹시 우리는?!



단일민족



인종차별

12

혹시 우리는 ?!



13

한국 '단일 민족' 개념 극복해야...



UN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난 한국 사회는 다민족국가임.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면 다른 민족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4

혹시 우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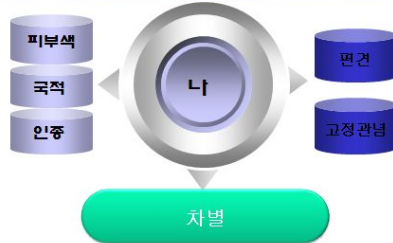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는 검은 피부를 경계하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자신을 움츠러 들게 했다고 고백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에이즈 환자인 줄 안다."

국제 대학원에 다니는 브라질인 학생은 볼 가리아 출신, 미국인 친구 방문 손님으로 불리지만 동유럽 출신은 그렇지 않다. 자신 보다 못하는 나라에서 으면 배운게 없다고 생각한다.

15

혹시 우리는 ?!



16



<h3>외국의 이주노동자 문제</h3>  <p>지속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원안!</p> <p>2005년 프랑스 이주노동자 2세들이 일어난 폭력시위, 인텔 건 계속되었으며, 많은 자랑과 인명피해가 있었음.</p> <p>프랑스 이주노동자 폭력시위</p> <p style="text-align: right;">17</p>	<h3>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정책</h3>  <p>독일</p> <p>'자본 금지의 원칙'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적용 받음)</p>  <p>스웨덴</p> <p>국가가 이민자의 통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 (이주노동자 소외 극복에 일시적 관심, 고용주인 이주노동자의 권익에 의해 직접 연수들 받음)</p> <p style="text-align: right;">18</p>
<h3>'잠수왕 무하마드'</h3>  <p style="text-align: right;">19</p>	<h3>함께 생각해봅시다.</h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1. 무하마드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2.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왜 무하마드를 찾아 갔나요? 3. 영화에서 팔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p>
<h3>모두 존중 받아야 할 같은 사람입니다.</h3>  <p style="text-align: right;">21</p>	

⑦ 동영상 자료

- 동기 유발 동영상 '사람들이 왔다' (6분) - 동영상①
-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 (3분) - 동영상②
- 인종차별 (7분) - 동영상③
- '잠수왕 무하마드' 영화 감상(17분) - 동영상④

가. 내용 요약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송출국가였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세계 각국으로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의 노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지로 삶의 기회를 찾아 이주하였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나라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맞이하는 국가가 되었다.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은 사회 전반의 인권 친화적 문화 발달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현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결책이며,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료들이다. 이주노동자를 진정한 기업의 '동료'로 받아들여 기업의 인적관리, 경영의 성과 향상까지 연결시킨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핵심개념 및 용어

인권, 이주노동자의 국제법·국내법상 지위, 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경영

다. 탐구 문제

- 내가 만약 독일로 간 이주노동자였다면 ?
- 내가 타민족 및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 인권경영이 이주노동자의 직무만족도 및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인권경영이 기업의 이미지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ISBN 978-89-6114-225-0 93370